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도시환 · 박진우 · 서현주 · 장세윤 · 진창수 · 최운도 · 하종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최근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세력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발이 이어지고,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와 역사인식 관련 발언 등 일본의 역사인식 퇴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2013년 4월 30일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가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근래의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다각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위 학술대회의 한일 현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의 발표·토론 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함으로써 정부·국회 등 유관 기관 및 언론·국민·학계 등에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 한일관계 인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일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근래 일본 일각에서는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본에는 양심적인 학자·시민·시민단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를 견제하면서, 양심적인 세력은 물론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학계·교육계·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학계의 탄탄한 연구와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투철한 역사교육이 절실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현안 과제 해결과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동북아 공동역사 교과서'를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발간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3국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신중치 못한 언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역사 교과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한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귀중한 원고를 제공해주신 박진우·진창수·하종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의 도시환·서현주·장세운·최운도 연구위원과 출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3년 11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책머리에	10		
•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small>진창수</small>			
I.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22		
II.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27		
III.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34		
IV.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38		
•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small>하종문</small>			
I. 머리말	51		
II.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52		
III. 부전결의	54		
IV.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56		
V. 역사전쟁의 본격화	59		
VI.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62		
VII. 역사전쟁의 국제화	66		
VIII. 맺음말	70		
•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small>박진우</small>			
I. 머리말	77		
II. 한국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관계	80		
III. 한일 간 야스쿠니 문제 발생의 배경	84		
IV. 한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문제점	89		
V. 맺음말	98		
		•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small>서현주</small>	
		I. 머리말	103
		II. 교과서 분석의 제 요인	105
		1.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107
		2.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110
		III.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추이	116
		1. 중학교 역사교과서	116
		2.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21
		IV. 맺음말 -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130
		•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small>도시환</small>	
		I. 머리말	145
		II. 아베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	149
		1.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	149
		2.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의 부정	152
		3.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와 문제점	156
		III.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59
		1.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	159
		2. 2010년 ICC로마규정 ‘침략범죄’	164
		3. ‘침략의 정의’가 갖는 국제법적 의미	166
		IV.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역사적 정의	167
		1. 아베의 ‘식민지책임’에 대한 인식	167
		2. ‘식민지책임’ 문제의 제기와 연혁	168
		3.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검토	172
		V. 맺음말	183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최운도

I. 현행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198
II.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의 변천과 입장 대립	200
1. 헌법해석의 변천과정	200
2. 2007년 안보법제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204
3.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찬반 대립	207
III. 자민당의 제도적 기획	212
1. 해석개헌을 통한 방법	213
2. 입법조치를 통한 방법	217
3. 명문개헌의 방법	219
IV.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문제점	222
V. 맺음말	225

V. 몇 가지 역사갈등 해소,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방안	247
1.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 및 쟁점 분야	247
2. 몇 가지 검토 방안	248
3.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검토	251
4.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문제점과 일본 NGO의 활동사례	256
VI. 맺음말 - 결론에 대신하여	259

찾아보기 280

●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장세윤

몇 가지 시론을 곁하여

I. 머리말	233
II.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필요성	235
III. '화해'의 정의	241
IV. 한일 양국 역사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 - '왜구'와 '조선총독부' 용어의 검토	244
1. 왜구에 대한 정의	244
2.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 사전(관찬)의 사례	2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일본 아베(安倍) 정권의 역사인식 퇴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아베 정권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 4월 30일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위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일 현안 관련 전문가의 발표·토론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정부·국회 등 유관 기관 및 국민·언론 등에게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이라는 동북아역사재단 본연의 임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각 필자들의 핵심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진창수는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일본 이미지는 '역사퇴행적인 국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의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노골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발언', 3·11(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기념식에 중국과 한국만 불참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문제를 지적한 것' 등으로 일본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오해하는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었다.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문제(또는 반대로 한국 문제)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생각에서인지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말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이 두렵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타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일 양국 정부는 상대방이 계기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정인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하종문은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에서 2013년 4~5월 아베 2기 내각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뒤이어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수정을 놓고 예상보다 일찍 본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1기 내각 때와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명의 반복이었다. 이에 대해 하종문은 아베 신조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은 2013년 5월 15일 참의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발언을 덧붙였다. "여기서(참의원에서) 논의하면 외교·정치 문제로 발전한다. 행정부의 장으로서 역사인식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4월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시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 봐야 한다. 즉 한일(혹은 한중일) 공동역사연구의 추진 쪽을 타진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비껴가려는 셈이다.

그 결과 무엇보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과 아베 신조 수상의 역사인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독립적이라는 아이러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4월 19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와 같다고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2013년 4~5월의 ‘역사전쟁’은 무라야마 담화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 큰 분기점을 이뤄냈다고 본다. 바로 국제 공조하에서 아베 정권의 일보 후퇴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고바야시(小林)가 통탄해 마지않듯이 미국의 힘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제된 분노’, ‘보편 가치에 입각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의 재음미다. 그것이야말로 무라야마 담화 공방전을 치러낸 우리가 거머쥔 최대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하중문은 이런 교훈은 그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가 평화헌법의 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역사전쟁은 일본의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과 보편성을 갖추고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아베 신조와 같은 보수 우파는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미국의 ‘강압’을 구실로 일본 국민의 애국심, 내셔널리즘을 간질이는 책략을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보수 정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역사인식이 선거와 국정 행위를 발판 삼아 일본 국민 전체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중문은 침략전쟁 고발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무라야마 담화는 결코 승계 여부에 안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역사인식 후퇴,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평화헌법과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갈고 닦으며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우는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에서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와 한국 외교현안으로서의 문제발생 배경, 그리고 한국의 야스쿠니 비판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금후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현 단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적인 실증연구와 실천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운동으로서의 국제적인 연대를 병행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인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에서 국가(천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식민지 지배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신도(神道)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황민화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 동원체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종래와 같이 야스쿠니 문제를 ‘군국주의의 부활’이나 ‘전쟁미화’로 비난하거나 또는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을 마치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는 좁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반전’과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전체상 속에서 야스쿠니문제를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오늘날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 우익단체, 언론 등의 자민족 중심적인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경계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결코 한국 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노력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하겠지만, 특히 과거 가해자로서 군림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는 일본이 져야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서현주는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에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 후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노(河野)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일본군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에 미친 영향,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최근의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기술을 뒷받침하는 고노 담화의 유지 확대와 더불어,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교의 영향력 회복 혹은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현주는 이 점에서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문제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교과서 제도, 나아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온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시환은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에서 재집권시 과거사 반성 관련 사죄에 대한 부정을 공언해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재집권 이후 ‘8·15 종전기념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수정에서 나아가 ‘침략의 정의’ 조차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한 전전(戰前) 군국주의 부활을 향한 궤적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의 정의’에 대한 부정은 이미 계산된 발언이자 예고된 행보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 역시 동참하여 1974년 UN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침략의 정의’를 국제법규범과 국제공동체가 수용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2010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도 1974년 UN총회결의 ‘침략의 정의’를 기초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을 채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아베 신조 총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위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등의 ‘개인 배상’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0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적법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식민지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침략의 정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국의 침략전쟁에 귀결되는 모든 책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현재의 과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성찰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침략자로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기반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희생자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죄와 배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강제징용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관의 차원에서 심판받지 못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중국·북한·동남아시아 사회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면 동아시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운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에서 먼저 일본 정부가 택하

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과 그 해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은 개념 도입의 경위와 현재의 해석에 이르게 된 정치적 이유,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해석개헌과 입법조치, 그리고 명문개헌이 그것인데 각각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논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출된 ‘안보법 제 간담회’ 보고서의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안보 논리로 보자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우경화의 방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게 우리의 우려를 잘 이해시키고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장세윤은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에서 현재처럼 경색된 한일관계 분위기에서 정말 ‘역사갈등의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을 표시한다.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악화되고 험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 시민단체, 한국 국민과 학계, 교육계, 언론 등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일본 정부와 일본 일각의 극우세력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화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각계 및 일본 국민들의 상대방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역사갈등을 해소하는 상황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계 및 교육계의

착실한 연구와 성과의 국제적 확산·홍보, 폭넓은 교류, 투철한 역사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역사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 등의 여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공동역사 교과서(혹은 교재)의 실현, 가칭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래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는 학자, 시민, 시민단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망동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언론 및 교육계 등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색관계를 해소하고 추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사 화해를 위해 가칭 ‘동북아(한·중·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또는 ‘한일역사(교재) 공동연구위원회’의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처럼 산적한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 I.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 II.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 III.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 IV.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 이미지는 ‘역사퇴행적인 국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의 이웃 국가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노골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발언’, 3·11(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2주기 기념식에 중국과 한국만 불참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문제를 지적인 것’ 등으로 일본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오해하는 상황은 역사상 흔히 있어 왔다.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문제(또는 반대로 한국 문제)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생각에서인지 피하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말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 여론이 두렵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타협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진창수(陳昌洙)

일본정치 전공,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대표논문으로는 『현대 일본정치 시스템의 이해』(공저, 2002, 형설출판사), 『일본의 이해』(공저, 2002, 태학사), 『근현대 일본정치사』(공저, 200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일본의 정치경제 : 연속과 단절』(2009, 한울아카데미),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 : 아시아주의로의 복귀』(2008, 『일본연구논총』 Vol. 27) 등이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상대방이 계기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정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베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I.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일본 보수세력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포함한 과거 제국주의 시대를 정당한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규정지어 왔다. 정부 각료의 침략전쟁 부인과 식민통치 긍정론 발언은 일본 보수세력이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보수세력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조심스럽게 표명하는 입장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결실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에 이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수상의 직접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유감 연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은 불명확하고 애매한 수사적 표현이 대부분이어서 진정으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을 변화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 보수세력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표명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 정도로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일본의 보수 본류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정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일본 보수세력의 역사에서 볼 때 큰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전환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1993년 자민당 붕괴 이후 정치변화는 역사문제 특히 식민지 반성 표명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했

다. 특히 1993년 8월 비자민 연립정권의 수상이 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발언은 새로운 분위기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당이 아닌 보수진영 내에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역사인식의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치의 세대교체와 맞물리면서 전후파 정치지도자들이 진일보한 역사인식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이외에도 전후파 정치가로서 연립정권 형성의 주역이 되었던 하타 쓰토무[羽田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등도 자민당 본류 노선을 뛰어넘는 진보적인 역사인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여당 3당(자민당, 사회당, 사きが게)은 ‘신정권은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 이를 위해 전후 50주년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기관을 국회와 정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사상 변화가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제기된 국회에서의 사죄, 반성의 결의는 1995년에 연립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이후 국회결의의 추진을 위한 여당 3당의 움직임은 자민당과 신진당의 보수 우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거듭하였지만, 1995년 6월 9일 중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본 국회의 결의는 비록 불충분하지만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반성한다”고 표명했다는 점에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게다가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이 1995년 8월 15일 특별담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의 보수세력 내에서는 전전(戰前)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견지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역사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과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보수 방류의 의원이 주축이 된 50주년 의원 연맹은 침략,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1995년 6월의 국회결의에 대해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자위와 아시아의 평화운동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선에 가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으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1996년 우익 성향을 가진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의 등장으로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은 후퇴되었다. 1996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고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일본 정치체제 내에서 보수세력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선거에서 자민당은 우익적인 선거공약(독도 영토문제 제기 등)을 통하여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다시 정권에 복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체제 내에 보수세력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제어해 왔던 사민당(구 사회당)과 사키가케가 1996년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일본 정치세력은 총보수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가 국기, 국가로 법제화되었으며,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설치되었다. 또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공식참배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이다. 냉전 종결 이후 일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국제 공헌이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켰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PKO)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실현되는가 하면 신가이드라인 책정을 통해 자위대의 작전 범위와 활동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2006년 제1기 아베 수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과의 차별성을 ‘강한 일본의 탄생’에 두었다. 그는 1955년 자민당의 탄생 이유를 “첫째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둘째 점령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일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진정한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실현되었지만, 후자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호언하는 아베 신조는 특히 이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 외조부의 꿈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권에서 이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 세대인 아베 신조가 전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옴으로써 일본의 전후 수상 중에서는 가장 우파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전후 정치사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정권이 자민당 체제의 해체를 주도한 정권이었다면,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전후 체제에 안녕을 고하는 정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아베 신조는 외교에서 ‘주장하는 외교’를 제창하며, 국내적으로는 평화헌법 개정과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면서 전후 정치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를 지지하는 일본 여론 또한 고이즈미 지지층보다 더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이어서 일본 내 소수였던 우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아베 신조는 평화헌법으로 규정되는 전후 일본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아베 정권에서는 고이즈미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보통국민의 흐름이 내셔널리즘적 국민 정서와 결합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강한 일본’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를 이용하여 전후

터부시 되었던 유사법제의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아베 정권은 전후 평화주의 정신을 담은 교전권 등을 금지하는 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도록 정부의 헌법해석을 고쳐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탈냉전 이후 일본 경제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지면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보통국가론의 세력이 정치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베 신조 시대에 보통국가론의 흐름이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파인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처럼 아시아 경시 외교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로 수백만의 아시아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그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회견에서도 “일본을 위해 싸운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생각은 유지할 것이다. 야스쿠니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는 외국에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 그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시아를 경시하면서 국내정치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책에 변화를 보였다.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달리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던 아시아 외교 회복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이 점에서 아베 신조에게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과는 달리 현실주의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한일, 중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부활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이처럼 이중적인 측면을 보인 이유는 현재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약속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겠지만, 반대로 보수진영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정권은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아베 신조는 보수 세력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정권이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야스쿠니에 참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지속하였다.

이후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고양되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에게 충분히 사죄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확산되었다.

II.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제2기 아베 정권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당분간은 국내정치와 경제문제에만 치중하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는 신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베가 동북아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이념적인 공약을 아예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월 1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는 “알맞은 시기에 21세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고 밝힘으로써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진술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갈 아베 담화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표명하였다.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싶다”며 발언을 삼갔지만, 그 내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침략 정의는 학제적·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 침략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이 날 아베 신조 총리의 토론회 발언은 당시 답변에 비해서는 일보 후퇴한 것이었으나, 침략 여부에 관한 질문을 교묘한 수사로 피해나갔다는 점에서 과거 침략 사실 등을 둘러싼 역사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짐작케 했다. 4월의 침략 발언을 비롯해 춘계 예대제(例大祭)에 많은 일본 정치가들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2월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실질적인 제2인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위안부 존재마저 부정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도쿄[東京]전범재판의 정당성 부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말대로 이것을 ‘승자의 판단에 따른 단죄’로 규정한다면, 이는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한 전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될 것이다.

이번 아베 신조의 발언은 아베 신조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고자 발언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그 후 아베 신조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마스크이 지적하듯이 의도되지 않은 형태로 자신의 속내가 나타난 것이었다.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본인이 집필한 책을 통해 살펴보면¹⁾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스쿠니 비판에 대한 견해다(아베, 71쪽). 그는 1977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회의 관습에 따른 의례가 목적이라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985년 후지나미 다카오[藤波孝

1) 安倍晋三(2013), 『新しい國へ』, 文春新書.

圭) 관방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전몰자의 추도를 목적으로 본전에서 일례를 취하는 방식으로 참배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분에 대해 존중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그 명복을 빌고 항구 평화를 기원하려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 야스쿠니에 합사된 A급전범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아베, 73~74쪽). 그에 의하면 A급전범은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라는 명목으로 전쟁이 끝난 후 만들어진 도쿄재판에서 재판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점에서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A급전범 중에는 이후 외무장관(시게미즈 마모루[重光葵])이 된 사람도 있는데, 국내법으로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정지되지 않고, 유족연금도 받고 있다. 따라서 A급전범을 범죄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상징적인 의미의 천황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아베, 107쪽). 그에 의하면 전후 일본사회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형성하게 된 것은 행정부의 장과는 달리 미동도 하지 않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아베, 161쪽)라고 강변하고 있다.

‘침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은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하는 점은 아베 신조의 발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²⁾ 5월 24일 역사 인식에 대한 발

2) 아베 수상은 정권 초기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는 등 자민당의 우익적인 공

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를 줬다는 반성이 전후 일본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³⁾ 이후 아베 내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계승을 우회적으로 밝힌 국회 답변서를 내놓았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츠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 “지난 답변서에서 밝힌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같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1차 내각은 지난 2007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답변서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고노 담화 계승을 인정한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나서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한일관계의 악화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못매를 맞고도 최근에는 아베 정권의 핵심 간부가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약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아베는 박근혜 정부에 제일 먼저 특사를 보내고,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부행사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을 배려’한다는 선전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아베가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우익적인 성향을 선전이라도 하듯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지지율의 상승이 아베에게 자신감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가 ‘외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을 보면 세계와 ‘고립된 일본’을 보는 것 같아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다.

- 3) 5월 24일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제 19회 아시아의 미래 국제교류회의 만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후 일본의 원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문구다.

고 주장하였다. 연이어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여론조차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아베의 망언은 일본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우경화의 중심에 수상이 있다. 일본 정치권은 탈냉전과 함께 이른바 양심세력인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자정 능력’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그 예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독도를 항의 방문’한 정치가들이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990년대였다면 그들은 일본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일 대립을 가져온 그들의 극우적 행동이 오히려 아베 정권에서 장관이나 정부의 중요보직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는 일본 정치권에서 정치가의 망언을 억제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수상까지 나서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유력의원인 수상, 관방장관, 외무장관은 국제관계를 생각하여 우익적인 발언과 행동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관례였다. 이번 아베의 망언은 자제를 시켜야 할 수상이나 부총리가 오히려 역사퇴행적인 발언과 행동을 함으로써 국제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미치는 악영향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 금기시되었던 암묵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우경화를 경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즉 우경화 행동이 오히려 애국주의로 치부되는 경향마저 나타난 것이다.

둘째, 일본 정치권에서 ‘친한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일본 보수세력은 우익적인 정치가일수록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친한파’가 많았다. 이들은 탈냉전 이전에는 부산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부산적기론(釜山赤旗論)’의 관점에서 한국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정치가로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을 들 수 있다. 이런 보수파의 전략적인 발상으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한국과의 전략적인 타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아베 신조, 아소 다로의 망언은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과의 전략적인 타협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한국을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가 작심하고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일 간의 경색국면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정권의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황당하기 그지없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특사를 보냈고,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주최하는 것을 연기하는 등 한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서였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작심이라도 한 듯이 망언을 쏟아내고 일본 정치권도 일제히 이를 옹호하는 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당시 아베 정권의 행동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과 집단적인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먼저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의 망언 이후 우익 신문인 『산케이[産経]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매스컴들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질타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코 망언이 지지표를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 보수세력의 망언을 허용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우익이 갖

고 있는 심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전후 체제는 천황제가 지속되면서 제국주의의 청산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양심세력이 없어지면서 전후 금기시 되었던 우익적인 사상이 여과없이 표출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일부 보수세력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아시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전전(戰前)의 일본 외교는 보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의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주의 사상과 철학은 통용되지 않았다. 즉 제국주의 당시 일본의 보수세력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익을 위해 아시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쳐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까지 이어져 일부 보수세력은 제국주의 전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의 ‘전후 체제의 탈각’에 대한 노력은 이러한 심리가 근저에 깔려있다. 게다가 일본 우익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배경에는 한국은 무엇을 해주어도 항상 불만이라는 인식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매듭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선거에서 악용한 정치인이 바로 아베 신조다. 아베 신조는 선거에서 한국과 중국에게 과거사에 대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과도한 요구’ 뿐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치권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 할수록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형성되었다.

III.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2012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선거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떠한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누구도 선불리 진단할 수 없다. 아베 신조가 전후 체제를 탈각하고자하는 우파의 독선과 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모습 중 어디를 택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65석, 공명당이 11석을 차지함으로써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정국운영에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의원은 지난해 12월 총선거에서 이미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명당과 비슷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양당시대의 문을 닫는 운명이 되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국은 자민당의 일강 지배체제가 되었다. 자민당이 강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의 자민당에 지지를 보냈다. 그렇다고 아베 신조가 개인적인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 아베에 대한 인기는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확연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인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리더십과 개인의 매력이 합쳐져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아베 신조의 지지 기반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우파의 갈망, 그리고 돈풀기로 지방의 불만을 봉인하는 복합적인 정치적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열된 야당과 3년간 선거가 없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베 신조의 독주'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는 우선 경제에 집중하면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난립하는 야당으로 인해 자민당 정권이 더욱더 강해졌다. 더욱이 파벌 기능이 약화된 자민당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반주류 세력조차 없어졌다. 앞으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신조의 독주'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 임기가 끝나는 2015년 9월까지의 무난할 것이며, 아베 신조가 2016년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총선거 실시)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향후 3년 가량은 '아베 신조 천하'가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아베 신조가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고, 55년 체제하의 파벌을 대신할 자민당 내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익들의 요구, 기득권의 요구를 아베 신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된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참의원 선거까지는 이익을 공유하지만, 점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적인 예측은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 우익들의 야스쿠니참배나 우경화에 대한 촉구, 규제완화를 하려는 개혁파의 움직임 등이 함께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베 신조 총리가 염원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의 당 등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전후 처음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최대의 초점은 헌법의 절차법을 다루는 96조의 개정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참 양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개헌의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그러나 개헌 세력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가 노리는 것은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하여 군대를 가짐으로써 전후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9조 개정을 주장하지만, 개헌의 목적으로는 수상 공선제나 도주제 등의 정치체제 전반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조직한 공명당은 환경권 등을 더한 ‘가헌(加憲)’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96조 개정에서는 ‘개정 내용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의 당은 96조의 발의 요건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관료제나 지방주의 개혁 등을 개헌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자민당, 일본유신회와는 다르다. 앞으로 아베 신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 정치권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을 이루기 전에 집단적인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보고서를 보고 12월 신방위대강에서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며, 내년 국가안전보장기본법에서 집단적인 해석 변경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베 신조 총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국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경제우선 정책과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경제우선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아베 신조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 당내 우익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으며, 장기집권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장밋빛 기대를 현실적인 성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이제부터 아베 정권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존재한다. 아베 신조의 정책의 걸림돌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이다. 작년 8월 민주·자민·공명 3당이 합의한

소비 증세법에 의하면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상황의 호전’이 증세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는 경기를 판단한 뒤에 가을에 증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 판단할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민주당과 ‘소비세를 지방세로’라고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증세 용인’을 주장하였다. 한편 모두의 당·공산당 등 많은 야당은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킨다’ 등의 이유로 ‘증세반대 동결’을 주장하였다. 아베 신조는 참의원 선거에서 ‘경제의 허리가 끊어져 세수가 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했지만,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미루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4~6월의 경제 성장률’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요량이다. 그러나 소비세는 소비증세의 목적인 사회 보장과 연결되어 있어 마냥 미루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은 자연적으로 매년 1조 엔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나 연금 등의 억제는 피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아베 신조는 3당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세를 3% 인상하여 8%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의 예를 보더라도 소비세의 증세는 곧바로 소비에 타격을 주어 경기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TPP 교섭의 결과도 아베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TPP에 일본이 참가하게 되면 규제로 유지되었던 일본의 경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다. 규제가 철폐되고, 개방화와 자유화를 시행하면 농민을 포함한 쇠퇴산업의 피해자들은 아베 정권에게 더 많은 분배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는 이에 응할 수 있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정권 내에서도 개혁파와 기득 유지파 간의 갈등이 형성될 것이다. 아베 신조는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된다.

결국 일본 경제와 정국 상황이 악화되면 아베 신조의 집권 기간에 야스쿠니 참배, 우경화를 촉진시키고자 했던 우파들도 적극적인 요구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베 신조를 지지했던 세력, 즉 경제에 대한 기대세력, 규제에 대한 기대세력, 그리고 우파 세력이 전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만큼 아베 신조가 꿈꾸는 장기집권의 꿈은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IV.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이번 2013년 8·15 경축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 대일정책의 대응 방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더욱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발언 수위는 역사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동시에 협력을 촉구하는 절제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우선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갈 이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신뢰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리더십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진일보한 대일정책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을 질타한 지난 3·1절 연설보다는 원칙과 협력의 메시지를 포함하면서, 양국을 넘어선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일협력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현재 한일관계의 냉각을 풀고자 하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행동은 손뼉을 마주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베 총리는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8월 15일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역대 총리가 언급해온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매스컴조차 ‘왜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베 신조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내적인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식에서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일본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정치에 몰입된 일본의 리더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아베 정권하에서 대일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매일같이 일본의 망언과 역사퇴행적인 행동이 보도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 다시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일본국민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가 아베 신조 총리의 행동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일본과 함께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 내 한국 이미지의 국면 전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8·15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력을 제의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문제로 뒷다리를 잡았다는 인상을 일본과 국제사회

에 남겼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남북한에는 신뢰 프로세스를, 동북아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기여하는 외교를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로 시작된 한일관계의 경색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풀어야 할 외교적인 난제임에 틀림없다. 대일 정책은 향후 5년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 평가와 함께 동북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의 험난한 대일관계는 양국관계를 넘어서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는 우선 ‘북핵 불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양자가 정면으로 달려드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의 양상이었는데, 항상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한국이었다. 그 결과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길이다. 자칫 신뢰 프로세스를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신뢰 프로세스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단기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군사력에 대한 투자와 선택을 대폭 늘려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에게는 한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이행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아시아 안보 불안정의 중심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중국의 ‘북한 꺼안기’가 있으며, 센카쿠(尖閣)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있다. 결국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협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이 담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중이 ‘북핵 불용’이 아닌 북핵을 인정하는 ‘핵의 비확산’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등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와 대안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 강화와 확대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제도화되고 정례화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미·중 전략포럼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를 생각하면 대일 정책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함께 현재의 과제(대북문제, 한일 경제협력,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등)를 고려하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갈등의 사이클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의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⁴⁾

그렇지만 우의 성향의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한일관계는 처음부터 인내

4)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생각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의 심화,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이전보다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발등의 불과도 같은 경제문제 때문에 당장 한국과는 갈등관계를 만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지퇴발' 투성이다. 첫째, 아베 총리가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 정부 행사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애매한 형태로 남아 있어 언제든지 불씨가 될 수 있다. 3월이 되면 '교과서 문제', '외교 청서', 그 이후 '방위백서' 등 일본이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은 산재해 있다. 한국이 이런 일본의 국수주의적 주장을 문제시하면 이제는 일본이 당당하게 반론하는 상황이라 한일관계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도 문제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어 한일 간의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일본 정치권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다. 미국마저 미·일동맹 강화를 핑계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해외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본격화하면 한국의 정서상 독도를 둘러싼 긴장과 일본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도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의 긴장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아베 정권 기간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정상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한·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아베 정권 기간에 헌법 개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전수 방위의 제약을 벗어나 재군비의 길로 들어서면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면 한·일관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졌다. 센카쿠 영토 갈등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어졌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할 만큼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에게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는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는 일본'과 '전략적인 협력 상대로서의 일본'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균형 외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은 양국 간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세계 질서의 구축, 유지라는 다자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일정책의 방향은 일본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동반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5년을 생각하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론을 생각하면 과거사 문제(특히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밀어붙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교섭을 하면서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일 경제생활권을 확대시키는 기능적인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한·일 간 장벽을 허무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차 경제협력, 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한·일관계의 문제점으로 한·일 양국의 종합적 대일·대한 전략 부재를 들 수 있다.⁵⁾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

5) 한국의 대일 전략은 즉흥적이거나, 사안 중심의 단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

해 한일 비전회의를 새롭게 설립하여 외교부, 민간 학자들이 전략 지침서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어떻게 규정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여 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필요하다. 현재 한·일 양국의 불만은 1965년 한·일조약을 둘러싼 인식의 차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은 1965년의 한·일조약이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비해, 일본은 1965년으로 과거사문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불만을 남겨둔 채 한·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이룩해온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칭 ‘한일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문제를 포함하여 한일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라는 틀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일 외교는 한일 양국에 매몰되지 말고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의 숙명적 과제는 동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일 정책에서도 이러한 전략적인 발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이나 헌법 개정을 하고자 하면 부정적인 반응부터 앞섰다. ‘일본의 안

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일관계를 주로 양자 간의 특수 관계로 한정하여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목표 및 종합적인 외교 전략의 틀에서 대일전략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일 전략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중국보다 하위전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한·일 관계 복원이 거론되기도 하여 국가 전략과 연계된 한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대일·대한 정책이 동북아,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발상은 아직 발전되고 있지 않다.

보에 대한 조바심’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많다. 이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개정을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냉철히 바라보아야만 한다. 예컨대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큰 틀에서 군비 경쟁을 축소시키면서 상생의 길을 만드는 외교적 설득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동북아의 불안을 줄이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화해와 번영의 틀 속에서 묶는 대일외교가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고바야시 요시아키(2001),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연구』, 한울아카데미.
기타오카 신이치(2009),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 문화.
다니구치 마사키(2006), 『일본의 대미무역협상』, 한울아카데미.
신도 에이이치(2005), 『다시보는 전후 일본외교』, 동아대학교 출판부.
소에야 요시히데(2006),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오름.
山本吉宣·納家政嗣·井上壽一·神谷万丈·金子將文(2012), 『日本の大戦略』, PHP研究所.
信田智人(2006), 『冷戦後の日本外交』, ミネルバ書房.
安倍晋三(2013), 『新しい國へ』, 文春新書.
柴田晃芳(2011), 『冷戦後日本の防衛政策』, 北海道大學出版會.
齋藤淳(2010), 『自民黨長期政權の政治經濟學』, 勁草書房.
猪口孝著(2012), 『ガバナンス』, 東京大學出版會.
アランシス·ローゼンブルース·アイケル·ティース(2012), 『日本政治の大轉換』, 勁草書房.
문정인·서승원(2013),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손기섭(2012), 『현대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송화섭, 김두승(2011),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 한국국방연구원.
이기완(2009),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매봉.
이면우(2010),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성향과 대외관계』, 세종연구소.
이면우(2011),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한울아카데미.
이숙중, 한상일 외 2명(2011), 『일본과 동아시아』, EAI.
진창수(2008),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논문

진창수(2013), 「바람직한 대일외교 정책 방향은?」, 정덕구 편,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나남.

기타

- 자민당 「외교, 안전보장」(http://special.jimin.jp/political_promise/bank/d_001.html).
수상관저 「아베 내각총리대신 소신표명 연설」(<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6/09/29syosin.html>).
수상관저 「제83회 국회에서의 아베 내각총리대신 시정방침 연설」(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228siseuhousin.html).
수상관저 「일본이 돌아왔다」(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0223speech.html).
외무성 「미일정상회담(개요)」(http://www.mofa.go.jp/mofaj/kaidan/s_abe2/vti_1302/us.html).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10621>, 2013년 2월 23일 검색).
『일본경제신문』 「미일 공동성명 전문」(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N23005_T20C13A2000000/).
외무성 「아베총리대신의 동남아시아 방문」(<http://ja.wikipedia.org/wiki/>).
『요미우리 신문』(<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130210-OYT1T00686.htm>, 2013년 2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한신대학교 **하중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 III. 부전결의
- IV.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 V. 역사전쟁의 본격화
- VI.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 VII. 역사전쟁의 국제화
- VIII. 맺음말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한신대학교 하종문

I. 머리말

2012년 12월 일본의 정치판에는 3년 만에 격랑이 일었다. 2009년 여름 자민당식 구태 정치를 극복하라며 민주당에게 몰표를 줬던 일본 국민은 180도 급회전하여 자민당 지지로 돌아섰다.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國へ)를 외쳤다가 1년 만에 좌절을 맞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은 ‘일본을 회복한다’(日本を, 取り戻す)를 내걸고 재차 일본호의 조타수가 되었다.

출범 직후 2기 아베 내각의 정국 운영에 관한 진단은 당분간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므로 역사문제 거론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일치감치 빗나갔다. 4월에 들어서자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각료와 국회의원들,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비난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신에서 접해야 했다. 가히 ‘아베 본색’의 도래라 불러 마땅하다.

아베 2차 내각에서는 해묵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더해 무라야마 담화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종문(河棕文)

일본근현대사 전공,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대표논문으로는 『미래를 여는 역사』(공저, 2005, 한겨레출판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공저, 2012, 휴머니스트), 「제국의 통합 기제로서의 천황제와 그 변화」(2009, 『한일관계사연구』 32집), 「일본 노동·기업의 ‘국가성’과 전시 노동력 정책-징용과 ‘근로근본법’을 중심으로」(2013, 『역사비평』 103호) 등이 있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경위와 의미, 최근의 동향까지를 아우르며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를 간략하나마 진단해 보기로 한다.

II.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일본의 역사인식,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 문제로 비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하에서 터진 1982년 역사 교과서 파동은 근린제국조항의 신설로 귀결되었고, 1986년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상은 ‘한국 병합은 합법적이며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파면되었다. 1982년과 1986년의 연이은 ‘패배’로 절치부심하던 우파 정치가들에게 1990년대는 더욱 악몽처럼 비쳤다. 1991년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교과서 기술과 망언은 자민당 집권하에서 유화적인 조치로 봉합될 수 있었지만, 전시 여성 성폭력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수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해, 진상 규명과 결과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언명했다. 다음해 8월 일본 정부는 2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시인했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는 사과와 반성의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비자민 연립정권의 수상으로 지명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의 입에서는 침략전쟁 발언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전개는 우파 정치가들에게 역사인식과 과

거사 청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앞서 나왔듯이 호소카와 수상의 침략전쟁 발언이 행해진 것은 1993년 8월 10일이었는데,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3일 자민당의 야스쿠니신사 관계 세 단체¹⁾가 총회를 열어 “도쿄재판으로 오염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한다고 하면서 ‘역사·검토위원회’를 설립했다는 데서 그 위기감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²⁾ 여기에는 이후 수상의 자리에 오르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와 모리 요시로[森喜朗]도 참가했다.

이들은 1993년 10월 15일부터 1995년 2월 16일까지 19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20차례나 ‘검토위원회’를 열었다.³⁾ 위원회의 제1회 모임에서는 교과서 기술의 ‘시정’을 위해 ‘새로운 교과서 싸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었고, ‘도쿄재판사관’ 등을 청산하고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거나 ‘학살 등의 가해 사실은 없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기 위해 학자에게 ‘지금 기타 측면에서 지원하여’ 움직이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1994년 사회당 출신으로 수상의 자리에 오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가 공약으로 ‘전후 50년 국회결의(이하, 부전결의)’의 채택을 언명하면서 이들의 불안은 재차 높아졌다. 그 해 12월 망언으로 이름을 날리던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를 회장으로 하여 ‘중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을 결성했다. 중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이론적 모체’로 하고 있었으며,

- 1) 세 단체는 ‘영령에 부응하는 의원협의회(英靈にこたえる議員協議會)’, ‘유가족의원협의회(遺家族議員協議會)’, ‘같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靖國神社に参拜する國會議員の會)’을 가리킨다.
- 2) 藤原彰·森田俊男 編(1996), 『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19~20쪽. 역사·검토위원회는 1993년 8월~1995년 2월까지 활동했다.
- 3)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俵義文(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學習の友社, 37쪽 참조.

역사·검토위원회의 ‘연구 성과’와 ‘업적’을 그대로 승계한 또 다른 분신이었다.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은 후술할 부전결의의 형해화(形骸化)라는 원래의 임무를 완수하고 난 뒤 1996년 6월 ‘밝은 일본·국회의원연맹(明るい日本・國會議員連盟, 회장은 오키노 세이스케)’으로 개편되었다.⁴⁾

III. 부전결의

패전 50주년이 가까워지면서 역사인식의 이슈는 열기를 더해갔다. 그 무대는 다름 아닌 부전결의(不戰決議)였다. 자민당과 사회당, 즉 보수정당과 혁신정당이 연합하여 생긴 일본 헌정사상 초유의 무라야마 연립 내각이 출범하면서 내건 공약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매듭지어질 것인가에 대해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이 진두지휘에 나서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부전결의의 채택은 결정되었고 문안이 다듬어졌다. 1995년 6월 7일 일본의 중의원에서 가결된 부전결의는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로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짙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본원(중의원 - 인용자)은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세계의 전몰자와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게 추도의 정성을 바친다. 또 세계의 근대사상에서의 다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에 깊이 생각이 미쳐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 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

4) ‘우향 앞으로’의 목소리는 자민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투쟁에 밀려난 자민당 의원들이 창당한 신진당(新進黨)에서도 1995년 2월 부전결의에 ‘침략’, ‘사죄’, ‘반성’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이 출범했다.

며 깊은 반성의 염(念)을 표명한다. 우리들은 과거의 전쟁에 관한 역사관의 차이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원은 일본국 헌법이 드높인 항구 평화의 이념 아래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 공생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한다.

위 부전결의의 탄생에는 누구도 흡족해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애초의 진전된 문안이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속속 변질되는 것을 보고 강한 불만이 일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자민당의 간사장 모리 요시로(森喜朗)조차 70% 정도 만족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자.

문안 작성 과정에서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둘째 줄의 ‘세계의’로 시작되는 문장이었다. 먼저 사회당의 문안은 애초에 ‘열강의 제국주의적 대립 속에 우리나라는 군국주의의 대두를 허용해 과거 한 시기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 국민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깊이 반성하며 유감의 뜻을 담아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열강이 타국에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위해 경쟁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도 그 와중에 자국의 안녕을 고려해 결국 많은 나라와 전화(戰禍)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그 참화가 많은 이에 게 고통을 준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안으로 사회당을 공박했다.

논쟁이 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국의 안녕을 고려해’라는 부분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때의 대동아공동선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그 저의와 배경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대동아 각국은 서

로 제후해서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영(米英)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그 자존자위를 온전히 하고, 다음 강령에 따라 대동아를 건설함으로써 세계평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한다”는 대목이 그러하다. 요컨대 자민당의 속내는 ‘일본만 나쁘냐’라는 식의 논조를 삽입하는 일이었다.

역사적인 부전결의는 갑론을박 끝에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되었고, 그 내용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사죄를 살짝 비켜간 어정쩡한 문구로 매워졌다. 그나마도 참의원에서는 부결되고 말았으니, 형식상으로도 국회 부전결의는 일본 정부가 지닌 역사인식의 ‘파탄’을 보여주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IV.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무라야마 담화는 전술한 부전결의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1995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전격적으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로 국내외의 우려는 파국 직전에 겨우 무마되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역사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진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안팎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명합니다.

패전으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

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⁵⁾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자민당이 권좌에 복귀한 뒤에도 역대 수상의 입에 올랐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간주되었다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가령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의 경우 1997년 9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50주년인 1995년, 내각총리대신담화라는 형태를 취하여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행위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의 심정 위에 서서 사죄를 표하면서 평화를 위해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 담화 작성에 관여한 각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이며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간의 논의 속에서도 중국 측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리펑[李鵬] 총리도 제 발언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밑줄-인용자)⁶⁾

당당한 야스쿠니 참배로 악명을 날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수상조차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했다”⁷⁾고 말했다. 패전 60주년인

5)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2013년 4월 29일 조사.

6) http://www.mofa.go.jp/mofaj/kaidan/kiroku/s_hashi/arc_97/china97/kaiken.html. 2013년 4월 29일 조사.

7)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2013년

200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진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난 대전에서 안팎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⁸⁾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지닌 공식적인 역사인식이자 ‘총괄’이었다.

그런데 1995년 8월 15일, 패전 50주년에 즈음하여 일본에서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역사인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무라야마 담화이고, 다른 하나는 전술한 역사·검토위원회의 작업이다.

역사·검토위원회는 부전결의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한편, 1995년 8월 15일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대동아전쟁’을 ‘총괄’⁹⁾하려는 의도에서 『대동아전쟁의 총괄(大東亞戰爭の總括)』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다음의 결론을 보면 자신들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전망하에 움직일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난다.¹⁰⁾

- ①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존·자위의 전쟁이며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
- ②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등의 가해는 날조된 것이며, 일본은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 ③ 최근의 교과서는 있지도 않은 침략이나 가해를 기술하고 있어 새로운

4월 29일 조사.

8) <http://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5/08/15danwa.html>, 2013년

4월 29일 조사.

9) 일본어에서 총괄이란, 흔히 각종 활동의 평가와 정리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그 점에서 『대동아전쟁의 총괄』은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유사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 정치가의 역사인식이 집약된 출범 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 歴史・検討委員会(1995), 『大東亞戰爭の總括』, 展轉社.

‘교과서 분쟁’이 필요하다.

- ④ ①과 ②와 같은 역사인식을 국민의 공통인식,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과 교과서를 연결시켜 정쟁화를 피하겠다는 자민당 보수파의 ‘총괄’에서 이후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가 이끄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출범하게 되는 배경과 필연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터다. 그런 면에서 1995년은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둘러싼 역사인식이 구축되고 충돌하는 원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역사전쟁의 본격화

1990년대 전반의 역사전쟁은 일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보수 정치가는 『대동아전쟁의 총괄』에서 드러났듯이 역사교과서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저항선 구축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새역모와 같은 ‘교육 우익’의 탄생은 화급을 다투는 과제였던 것이다. 이 질문을 바꾼다면 후지오카 노부카츠와 같은 역사수정주의자, 우익을 포함한 민간 부문과 자민당을 위시한 우파 정치가 간의 제휴는 어떻게 구상되었고 가능해졌으며, 무엇을 목표로 움직였는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진단이 참조가 될 법하다.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그다지 확고부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패전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1970년대까지 교과서 검정은 ‘국내적 납득’을 모색하는 데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새로이

‘국제적 이해’가 가세하면서 교과서 기술의 수준을 저울질하던 외중이었다. 사실 자민당의 체질과 일본 지배층의 구성상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역사인식의 상이를 시행착오를 통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채워 나가는 작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라야마 담화는 55년 체제의 붕괴라는 정치체제 변동과 역사인식의 부재라는 틈새를 파고들었기에 성사되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주된 추동력은 자민당의 ‘보수 본류’와 외무성 쪽에서 나왔다.¹¹⁾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의 초조감 내지 한계상황이다. 사실 오키노 세이스케를 비롯하여 우파 정치가들이 틈만 나면 시도했던 망언 작전은 산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도 의심스러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설자 개인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예를 들면 일본 유족회를 이끌었던 하시모토 류타로조차 수상이 되고 난 뒤 한국과 중국을 배려하여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효과가 크고 정치적 타격은 적은 민간 부문 운동과의 공조를 모색했고, 후지오카 노부카츠와 교과서 문제의 대두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이 이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11) 보수 본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뒤를 이어 경무장, 미일 안보,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중시한 자민당의 주류 파벌을 가리킨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무라야마 담화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는데,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는 표명하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과 재산·청구권 문제의 법적 해결은 완료되었으며 개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전제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服部龍二(2007), 「村山談話と外務省一戦後50周年の外交」, 田中努 편, 『日本論：グローバル化する日本』, 中央大學出版部, 79~84쪽; 도시환(2012),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7권 3호, 20쪽에서 재인용.

전후의 전쟁 해석이란 『패전국 사관』이 많다. …… 구미의 학자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움직임이 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만들어 나갈까. 돈도 들겠지만, 우리 자민당이 표면에 나서서 한다면 또 이상한 오해를 받을 테니까, 자금 기타의 측면에서 지원해주자.¹²⁾

세 번째로 1997년 8월 29일 ‘이에나가 교과서재판’^(2부에서 상술)의 제3차 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동경교육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교과서에서 731부대(생화학전과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부대)에 관한 기술을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을 명령한 문부성 검정의 ‘수정의견’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시됐다. 이미 2심에서 확정되었던 3개 항목(난징대학살, 일본군의 잔학 행위, 초망대)을 포함하면 전체 10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었지만, 문부성의 검정이 지닌 문제점을 내외에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보수 정치가들에게는 새로운 원군과 전술이 절실했던 시점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역모 등의 역사우익의 활동으로 무라야마 담화의 발표와 같이 자민당 ‘보수 본류’와 외무성이 주도했던 대 아시아 외교의 틀은 급속도로 와해되어 갔다. 파벌 정치의 폐해를 성토했던 기류 속에서 보수 본류의 외형과 내실은 유명무실해졌고, 급기야 2006년 9월 5일자 『아사히신문』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본류다’라는 간 나오토[菅直人]의 호언을 전할 지경이 되었다. 또한 2001년 1월 새역모 교과서의 검정을 놓고 외무성 출신 2명의 검정위원이 경질되었고, 이후 외무성은 교과서 검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새역

12) 곤도 데쓰오[近藤鐵雄, 전 경제기획청 장관]의 발언이다. 歴史・檢討委員會(1995), 앞의 책, 345~346쪽.

모의 논평은 사태의 본질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교과서 검정은 1961년 이후 계속해서 외무성 출신자가 검정심의회 위원에 선임되어, 사실상 검정에 '외무성 할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무성 할당'에 의해 검정에 외무성의 의향이 반영되기 쉬워 근린제국의 압력에 취약한 검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외무성 관계자가 한 사람도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외무성 굴레'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³⁾

역사전쟁의 심화에 발맞춰 무라야마 담화는 근린제국조항과 더불어 보수 우파의 세찬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VI.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2006년 9월 출범한 1기 아베 내각은 1년을 채우고 퇴진했다. 예상을 깬 단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의 염원을 진척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개혁을 위한 교두보로서 국민투표법을 성사시켰고, 애국심과 전통을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달성했다.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은 내각 구성에 앞서 간행된 출사표 격인 『아름다운 나라로』 안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항목이며, 5명의 브레인 중 한 명인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高崎]경제대학 교수가 일본교육재생기구 이사장을 맡아 민간에서 지원사격을 해왔다는 점과 연동된다.¹⁴⁾ 개악된 교육기본법을 앞세워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는

13) <http://www.tsukurukai.com>, 2002년 1월 20일 조사.

14) 아베의 브레인으로는 야기 외에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학 교수, 시마다

역사인식과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불쏘시개로 탈바꿈했으며, 그 위력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그의 태도는 기왕의 자민당 출신 전임 수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6년 10월 5일 중의원에서 아베 수상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아시아 각국에게 대단한 손해를 끼쳤으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은 “국가로서 표시한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고노 담화와 함께 “이번 내각에서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명언했다.

아베 2기 내각이 중의원 2/3 의석을 점한 채 출범한 지금, 우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무라야마 담화의 경우 일찍이 선거 운동 중에 포문을 연 바 있다. 『산케이신문』이 아베 신조의 대변인 격으로 활약했는데, 가령 2012년 5월의 인터뷰에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엇메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8월 28일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3대 담화, 즉 미야자와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아베 신조 총재의 의사를 보도했다. 각각 교과서 집필에 관련되는 근린제국조항, 일본군 ‘위안부’, 우파의 표현을 빌면 ‘사죄 외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무엇이 아베 신조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추측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하에서 벌어졌던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당시 공군 참모총장 격인 항공마료장] 사태와의 관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동아전쟁’은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학 교수, 이토 데쓰오[伊藤哲夫] 일본정책연구센터 소장,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등 5명이며, 따로 태국 대사를 지낸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를 넣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俵義文 外(2006), 『安倍晋三の本性』, 株式會社金曜日, 30~50쪽 참조.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다모가미 도시오의 논문은 정부 견해, 특히 무라야마 담화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정년퇴직으로 낙착되었다.¹⁵⁾ 1990년대까지의 망언 각료 해임 사태를 생각한다면, 제2의 다모가미 도시오를 막기 위한 조치는 화급을 다투는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인 ‘사죄 외교’라는 측면도 역시 『산케이신문』이 잘 대변해 준다. 2013년 1월 5일자 사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의 심정’을 강조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 담화는 정부의 대중, 대한 외교를 위축시키고 거듭되는 사죄와 비상식적인 배상 요구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대목이다. 굴욕적인 외교를 낳는 무라야마 담화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는 일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는 2기 내각 출범 후 일련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감지된다. 무엇보다 조각 직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확인했지만, 아베 신조 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정 의사를 피력했다. 그 결정판은 높은 지지율과 북한 문제의 증폭에 힘입은 강행 돌파, 즉 4월 말의 의회 질의였다. 우선 간단한 경과를 확인해두자.

22일 참의원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내각으로서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전후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새로운 아베 담화를 내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튿날 23일의 발언이 절정이었다. 먼저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하여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했다. 이어 마루야마 가즈야[丸山和也] 자민당 의원이 무라야마 담화의 문언

15) 동일본대지진 직전에 발간된 『세이론[正論]』 2011년 4월호에서 ‘일본 재생의 구국 내각’을 조사했을 때 다모가미는 아베에게 표를 던졌으며, 2012년 이후 실제로 아베 내각의 재등장을 목표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중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식민지배와 침략으로”라는 세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둔 채 ‘죄송합니다’라는 미봉책이며,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자, 아베 수상은 “마루야마 가즈야 의원이 질문하신 점은 애매한 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담화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26일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는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그 인식에서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과 공통 입장이다”라고 하면서도 “역사인식을 정치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결과로서 외교·정치 문제로 발전해 간다. 역사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산당에서 발간하는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역사가 운운’은 무라야마 담화 이전의 자민당 역대 내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일련의 아베 신조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의 ‘후퇴’이긴 하지만 ‘부정’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아베 신조 수상에게는 현재까지의 공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즉 무라야마 담화의 형해화, 아니 ‘흠집 내기’다. 이런 전략의 흔적은 교과서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고교 교과서 검정이 발표된 직후인 4월 10일, 자민당의 문부과학부 소속 의원과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하 ‘역사 모임’)의 합동회의가 열렸다.¹⁶⁾ 아베 신조 이하 우파 정치인은 문부과학성 관계자를 불러 호된 질타를 가했다.

아베는 직접 담당자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되었다’ 혹은 ‘끌려 나

16) <http://kyoukashokaizen.blog114.fc2.com/blog-entry-163.html>. 2013년 3월 18일 조사.

갔다'는 기술에 대해 아무런 수정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 '내가 수상이었을 때 '이른바 중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대체 언제 변경된 것인가? 왜 (정부 답변을) 무시하느냐?'는 논조였다. 담당자의 답변이 불명확했던지 아베는 '그런 답변이라면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질책을 던졌고, 다른 의원의 입에서도 '수상의 의견보다 검정관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서 우리는 2007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둘러싼 아베의 발언이 교과서 기술의 변경까지 의도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객관적인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수상의 개인적인 역사인식과 평가가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다. 전문 연구자 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앞세워 이번에는 현역 수상의 힘을 동원하여 침략전쟁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VII. 역사전쟁의 국제화

1995년 8월 15일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보수 정치와의 절충 속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관해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이런 무라야마 담화를 놓고 일본의 보수 정치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을 표출해왔다. 하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 심지어 아베 신조 현 수상까지 1기 내각 때 보여주었듯이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인식을 은폐하거나 쟁점화를 회피하는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보수파는 물론 우익까지 가세하여 무라

야마 담화에 담긴 역사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고 '기능 부전'에 빠뜨리는 것이다. 최근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상황은 착실히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가고 있으며, 아베 신조 수상의 최근 언행은 그런 의도를 노골화한 시도로 봐야 한다.

그렇지만 2013년 아베 2기 내각의 우경화 드라이브는 의외의 국면으로 흘러갔다. 가히 역사전쟁의 '국제화'라 불려도 될 법한 양상이 빚어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라야마 담화를 놓고 전투가 한창일 때 야마구치(山口)현에서는 참의원 보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4월 28일 실시된 투표에서 '원전 탈피'를 내걸었던 야당은 자민당에게 참패했다. 보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과 중국이 앞장서는 역사인식의 쟁점화가 일본 보수 정치의 전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비판적 시선이 전해지고 증폭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월 24일(한국 시각)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 '일본의 불필요한 국수주의'는 미국 내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면서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위안소 제도가 필요했다'면서 '미군은 매춘을 활용하라'고 말한 것이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아베 내각에 대해 발언을 아끼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마저 '역겹고 화가 난다'는 식의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고, 5월 9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과거사 발언으로 역대 외교관계가 불편해지면 미국의 국익도 훼손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까지 흘러나왔다.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폭된 것은 아베 신조 수상에게 사실상의 결정타였다. 급기야 5월 1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담화 전체를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승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베 신조 수상의 발언을 180도 수정한 것으로, 동 15일 아베 신조 수상이 직접 나서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차 공식화했다. 참의원에서 "과거 정권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역대 내각(의 담화를) 아베 내각도 이어받는다라는 입장”이며, 중국에 대한 ‘침략’의 정의를 놓고서도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천명했다.

자민당의 정조회장이자 우파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도 아베 수상의 선화와 궤를 같이 한다. 5월 12일 NHK 방송에 출연해서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위화감을 표현했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14일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의 승계를 결정했으므로 그에 반하는 발언은 삼가겠다”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대목까지 곁들여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베 정권이 잠시 우경화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아베 정권의 이런 후퇴는 때마침 발발한 하시모토 도루 공방전을 틈타 ‘발 빼기 전략’을 꾀한 것이라고도 판단된다. ‘위안부’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자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간사장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역사인식이 흡사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두 당의 역사인식이 같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차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 점을 모를 리 없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하시모토 도루를 두들기며 한 발 물러섬으로써 외교력 약화와 내각 지지율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¹⁷⁾ 특히 5월 17일 당의 총력을 기울인 사이타마(埼玉) 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지율 감소의 지속이 7월 참의원 선거마저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고조시켰을 터이다.

17)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자민당의 7월 참의원 선거 전략의 변화를 짚어야 한다. 최근 9조 개정에 앞서 96조의 개헌 요건을 현행 중참의원 2/3에서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유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 및 선거 후에도 일본유신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수상의 우경화 드라이브, 하시모토 도루 파동은 과거의 반복이라는 느낌이 짙지만, 미국의 ‘개입’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하시모토 도루를 거명하며 힐난하는 미 국무부의 의도는 명백히 과도한 역사전쟁이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경고를 일본 측에 말하기 위함이었다.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에게는 ‘친미 충견 아베 신조’의 재래로 비쳤다.¹⁸⁾ 그런 미국의 관전 태도는 그리 새로울 리 없지만, 이후 일본 보수층의 반응을 살펴보면 역사전쟁의 대원칙이 떠오른다. 요컨대 인류의 보편 가치가 아니라 내셔널리즘의 충돌, 즉 반일로 몰아가려는 심산이다.

5월 28일 새역모는 하시모토 도루의 발언과 고노 담화에 관한 긴급 집회를 열었다.¹⁹⁾ 새역모 전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츠는 “강제연행이었는데 아닌가는 15년 전에 이미 결판이 났으며, 위안부 문제의 최대 초점은 Sex slave이었는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2년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이 comfort women 대신 enforced sex slaves로 써야 한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산케이신문』의 논조를 서울에서 대변하는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한국의 ‘대일 강경파 지원단체’, 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가리켜 “구 위안부 구제라는 인도적 배려보다 일본 규탄이라는 반일 운동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18) 새역모의 창립 초기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가 새역모 관계자를 ‘친미 충견’이라 부르며 탈퇴한 뒤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고바야시는 5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하시모토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옳바르다고 하면서, “아베 정권도 『산케이신문』도 결국 미국의 안색을 보고 겁을 내서는 위안부 문제에서도 조금씩 자학사관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라며 원색적인 불만을 털어놓은 바 있다. https://www.gosen-doj.com/index.php?key=jozg3u3bp-736#_736. 2013년 6월 7일 조사.

19)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0601/plc13060107020004-n1.htm>, 2013년 6월 7일 조사.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은 ‘반일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퍼뜨린다. 그들의 논조를 뒤집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는 Sex slave의 증명과 확산, 그리고 반일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VIII. 맺음말

2013년 4~5월 아베 2기 내각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뒤이어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놓고 예상보다 일찍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결과는 1기 내각 때와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명의 반복이었다. 과연 아베 신조는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했을까? 아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아베 신조 수상은 5월 15일 참의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발언을 덧붙였다. “여기서(참의원에서) 논의하면 외교, 정치 문제로 발전한다. 행정부의 장으로서 역사인식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4월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시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 봐야 한다. 즉 한일(혹은 한중일) 공동역사연구의 추진 쪽을 타진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비껴가려는 셈법이다.

그 결과 무엇보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과 아베 신조 수상의 역사인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독립적이라는 아이러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동 19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미국의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와 같다고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

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술한 새역모의 집회에서 자민당 중의원 의원 니시카와 교코(西川京子)가 던진 발언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시모토 도루는 자신과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문부과학상 역임)가 4월 10일 국회에서 발언했던 데 편승하여 발설했으며, 이후 답변이 뒤죽박죽이어서 매우 불쾌하다는 평을 내놓은 것이다. 니시카와 교코의 홈페이지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²⁰⁾ 역사인식의 문제는 “국회라는 장에서 당당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치가의 단골 방식인 ‘발언하고 사과한다’는 양식을 답습”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시모토 도루의 무계획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전’으로 치러지는 역사전쟁의 주무대가 바로 국회라는 점이 요체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교과서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을 압박하여 “교과서 검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서 좋았다. 이로써 자학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나카야마 나리아키의 트위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4~5월의 역사전쟁은 무라야마 담화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 큰 분기점을 이뤄냈다. 바로 국제 공조하에서 아베 정권의 일보 후퇴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역사 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제된 분노’, ‘보편 가치에 입각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의 재음미다. 그것이

20) <http://www.nishikawa-kyoko.jp/?p=1865>. 2013년 6월 7일 조사. 니시카와는 1997년 창립 이래 줄곧 교과서 공격의 선봉에 섰던 의원 단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을 2005년부터 맡고 있으며, 나카야마는 전임 회장이었다.

21) <http://uni.2ch.net/test/read.cgi/newsplus/1365649180/>. 2013년 6월 7일 조사.

야말로 무라야마 담화 공방전을 치러낸 우리가 거머쥔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 한다.

이런 교훈은 그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책에 활용되어야 한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가 평화 헌법의 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역사전쟁은 일본의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과 보편성을 갖추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실상 아베 신조와 같은 보수 우파는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미국의 '강압'을 구실로 일본 국민의 애국심, 내셔널리즘을 간질이는 책략을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보수 정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역사인식이 선거와 국정 행위를 발판 삼아 일본 국민 전체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은 저지해야 한다.

침략전쟁 고발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무라야마 담화는 결코 승계 여부에 안주할 수 없다.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평화 헌법과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갖고 담으며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歴史・檢討委員會(1995), 『大東亞戰爭の總括』, 展轉社.
藤原彰・森田俊男 編(1996), 『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俵義文(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學習の友社.
俵義文 외(2006), 『安倍晉三の本性』, 株式會社金曜日.

논문

도시환(2012),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7권 3호.

기타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
일본 수상 관저(<http://www.kantei.go.jp>).
교과서 개선 모임(<http://kyoukashokaizen.blog114.fc2.com>).
니시카와 교코 홈페이지(<http://www.nishikawa-kyoko.jp>).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http://www.tsukurukai.co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박진우

- I. 머리말
- II. 한국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관계
- III. 한일 간 야스쿠니 문제 발생의 배경
- IV. 한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문제점
- V. 맺음말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박진우

I. 머리말

야스쿠니^[靖國]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의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대만·중국 등 근린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역사인식과 식민지출신자의 합사^[合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일본 수상이나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내외에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본의 우파들은 근린아시아에서의 참배비판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우파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고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정치의 이해관계나 ‘애국심’ 강화라는 현실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역사적 배경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는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이 패전 이후에도 일관해서 존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진우(朴晉雨)

일본근현대사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대표논문으로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2003, 제이앤시),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식민지 조선과 '식민지근대성론'에 대한 연구동향을 중심으로」(2012), 「일본 현대사에서 본 昭和 天皇의 전쟁책임-봉인, 미화, 왜곡과 망각의 역사인식」(2012) 등이 있다.

황은 신의 자손이라는 고대신화부터 근대의 황국사관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인 배경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근린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둘째로 중요한 요인은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 점령군의 불철저한 전후처리로 인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패전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신도지령(神道指令)’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일반의 종교 법인으로 바꾸고 국가의 관리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자체를 존속시키고 또한 침략전쟁에서의 전몰자를 ‘영령’으로 기리는 본래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았던 것이 그 후에 파생하는 갖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셋째로 야스쿠니신사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한 것은 근대일본의 국가시스템 근간을 이루고 있던 천황제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존속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을 위한 헌신적인 죽음을 현창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전의고양과 전쟁동원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야스쿠니신사와 천황제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며, 그 어느 것도 패전 후 폐지되지 않고 존속한 것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야스쿠니신사가 가지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야스쿠니신사가 한국과 어떤 역사적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¹⁾ 한국에서 야스쿠니 문제에 관

1) 한국의 야스쿠니 연구는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로는 박규태(2000), 「야스쿠니신사와 일본의 종교문화」, 『종교문화연구(2)』, 한신인문학연구소; 남상구(2006),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10호; 박진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5년 8월 15일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의 공식참배로 시작된 한국의 야스쿠니 비판의 대부분은 ‘반일’이 선행하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왔다. 특히 2001~2006년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A급 전범’의 문제에 주목하여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거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에 대한 틀에 박힌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야스쿠니신사의 문제를 단순하게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에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일본의 우파들 가운데는 근린국가의 비판에 대응하여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로부터 분사(分祀)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이제까지 침략전쟁을 정당화해 오던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뒤를 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등의 수상들이 외교적인 배려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현 아베 정권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야스쿠니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추도시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일본 우파들의 역사인식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

우(2007),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초혼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검토」, 『일본사상』 제12호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 야스쿠니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로 기대한 것은 한국 측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앞으로도 설령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식민지출신자의 합사 취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침략전쟁에 가담한 전몰자를 합사하고 국가(천황)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을 현창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존속하는 한 침략전쟁에서의 ‘가해자’를 ‘영령’으로 미화하는 행위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간단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수상이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하여 단순하게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한다거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틀에 박힌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인식에 의거하여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개관하고 주로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또한 그러한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한국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관계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메이지유신의 정치과정에서 등장하는 ‘정한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세 일본의 조선에 대한 대항적인 우월감이 근세 후기부터 침략의식으로 전화되어가는 측면과 그 사상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일본에서도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²⁾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근거로

하는 침략의식은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었으며, 막말(幕末)유신기의 ‘정한론’은 그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였다. 막말유신기의 존왕양이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서구열강의 위협에 대항하여 ‘황위(皇位)’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먼저 침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요시다 쇼인이 조선침략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메이지유신의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야스쿠니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사건부터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일본인 병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강화도사건에서 죽은 1명의 일본인 병사가 그 이듬해에 야스쿠니신사의 전신인 도쿄초혼사(招魂社)에 합사되었으며, 1879년 야스쿠니신사로 개칭된 이후에는 1882년 임오군란에서 사망한 12명,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 사망한 6명의 일본인이 합사되었다. 이후 내란에 의한 순직자의 합사가 주를 이루었던 야스쿠니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대외전쟁에서 순직한 전병사자(戰病死者)를 합사함으로써 그 주된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일본군들은 ‘소란’을 일으킨 ‘폭도’를 진압하다가 전몰한 ‘영령’으로 합사되었다. 예를 들면 1908년 5월 4일의 ‘한국폭도사건’에서 50명, 1910년 5월의 ‘한국

2) 그 선구적인 연구로는 矢澤康祐(1969),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について』, 『朝鮮史研究論文集』; 旗田巍(1969), 『日本人の朝鮮観』, 勁草書房; 姜徳相(1983), 『日本の朝鮮支配と民衆意識』, 『歴史學研究』; 中塚明(1990), 『近代日本の朝鮮認識』, 研文出版 등 참조.

폭도사건'에서 109명, 1911년 5월 '조선소란사건'에서 27명이 합사되었으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국폭도진압사건으로 살해된 육군의 군인군속'으로 기술되어 있다.³⁾ 대부분의 경우 야스쿠니신사라고 하면 'A급 전범'을 상기고, 이들의 침략전쟁은 흔히 1937년의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를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시대부터 대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식민지조선인의 합사문제가 유족들의 합사 취하 소송으로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1945년까지 일본 군인과 군속으로서 전사한 식민지조선인 전사자 415명이 합사되었으며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이 독립한 후에도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1995년까지 총 21,181명의 합사가 이루어졌다.⁴⁾ 이는 곧 야스쿠니에 합사된 조선인은 죽어서도 여전히 대일본제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견딜 수 없는 굴욕적인 처사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유족회'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협력으로 합사 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운동을 전개했지만, 2006년 5월 25일 일본의 사법부는 일단 야스쿠니의 '영령'이 된 이상 합사 취하는 불가능하다는 야스쿠니의 입장⁵⁾을 받아들여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와

3) 남상구(2006), 앞의 글, 153쪽.

4) 남상구(2006), 앞의 글, 169쪽.

5) 1987년 당시 야스쿠니신사의 부대표에 해당하는 이케다[池田良八] 權宮司는 분사 불가의 이유에 대하여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사후 일본인이 아니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의 군인으로서,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에서 제사지내 주기를 바라고 죽었기 때문에 유족의 신청으로 합사를 취하해서는 안 된다.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협력하고 일본인으로 전쟁에 참가한 이상 야스쿠니에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에서도 대부분의 유족은 합사에 감사하고 있다"('朝日新聞' 1987. 4. 16)고 주장했다.

같이 야스쿠니신사 측에서는 식민지출신자가 죽은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합사하고 '분사' 불가를 주장하는 한편, 일본 후생성에서는 일본 패전으로 한국이 독립국이 되었다는 '국적조항'을 이유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식민지출신자를 연금법과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모순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점에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식민지조선인을 합사하고 있는 점에서 '사자(死者)'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일본의 정치가를 비롯한 우파들의 정당화 발언, 식민지출신자의 합사 취하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항의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태도, 식민지출신자 합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등, 그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마주 대하는 진실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야스쿠니의 '영령'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들의 영혼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반론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식민주주의적인 발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6) 南相九(2005), 「전후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22집 참조.

III. 한일 간 야스쿠니 문제 발생의 배경

야스쿠니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자 동시에 현실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패전 직후에는 점령군의 지배와 ‘신도지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잠복하고 있던 야스쿠니 문제는 점령군이 돌아간 후 표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야스쿠니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법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자민당 보수 정권은 야스쿠니신사의 ‘국가호지법안’을 1969~1974년까지 다섯 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모두 폐안이 되었다. 특히 1975년에는 미키 다케오[三木 起夫] 수상이 전후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여당과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야스쿠니 문제를 둘러싼 일본 국내에서의 논쟁이 본격화되었다.⁷⁾ 이후 1978년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수상, 1980~1982년 스즈키 젠코[鈴木 善幸] 수상, 1983~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각각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당연’하다는 명분으로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각료들의 ‘8·15 참배’가 정착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은밀히 합사되고, 이듬해 4월 『아사히신문』이 이를 특종 보도하여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되풀이되는 야스쿠니 문제의 출발점은 1970년대의 정치적 문제부터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사이에도 한국에서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다. 어쩌면 해

방 직후의 분단과 내전, 그리고 전 국민적인 빈곤과 장기간의 군사독재 아래에서 야스쿠니신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한국인에게 거의 관심 밖에 있던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이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참배였다.

1975년 8월 15일 미키 다테오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이래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참배하기까지 일본의 역대 수상이 22차례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지만, 그때까지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었다. 이 점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오늘날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은 1978년 10월 17일이며, 그것을 『아사히신문』이 특종으로 보도한 것은 이듬해 4월 19일의 일이었지만, 그때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비판이 없었다. 이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 正芳] 수상이 3회, 스즈키 젠코 수상이 8회(이 가운데 8월 15일 참배는 3회),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수상이 된 1983~1985년 8월 15일까지 10회나 참배하였고, 이 가운데 8월 15일에 참배한 것은 3번이었다. 그중 1985년 8월 15일의 참배가 역대수상으로는 최초의 ‘공식참배’였으며 이때부터 한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A급 전범’의 합사 사실이 보도된 이후부터 약 6년간에 걸쳐서 일본의 수상이 21차례나 참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을까.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최대의 이유가 ‘A급 전범’ 합사에 있다고 한다면 6년간이나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이 1985년 8월 15일의 ‘공식참배’부터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아시아 관계와 얽혀 전개되는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갖가지 논의 속에서 이 문제는 의외로 등한시되어 왔다.

여기서 특히 나카소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7) 「三木參拜, 靖國問題に大きな一石」, 『朝日新聞』(1975. 8. 15, 夕刊); 「賛否渦巻く靖國の森, 首相參拜」, 『朝日新聞』(1975. 8. 16).

1984년 9월 전두환의 방일과 한일관계의 긴밀화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1984년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에 참배하였지만, 그 다음달인 9월 6일 전두환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아무런 항의나 논의도 없었다. 오히려 천황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천황의 ‘발언’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사죄’하는 형식을 취하고 전두환도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⁸⁾ 그리고 9월 8일 수뇌회담 후에 발표한 한일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선린우호, 경제협력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채 한일관계가 한층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낙관적인 전망을 양국의 국민들에게 준 것처럼 보였다.⁹⁾ 그리고 전두환이 돌아간 다음달 10월 18일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총리가 된 후 일곱 번째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였지만 이때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한국(중국도 포함하여)이 왜 1985년 8월 15일의 참배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발한 것일까. 역시 이 문제는 야스쿠니 문제가 외교현안으로 비화하게 되는 배경을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참배에 대하여 처음으로 비판이 분출한 이유를 한국의 경제적 성장 때문이라고 하

8) 전두환은 천황의 ‘발언’에 대하여 “역사적인 한일관계에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즈음에 폐하가 지난날의 양국 관계에서 불행했던 과거에 관해서 언급하신 것을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엄숙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 우리 양국 사이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이제 보다 맑고 보다 친숙한 한일 간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했다.

9)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해서의 나카소네 총리대신과 전두환 대통령의 한일공동성명’(1984. 9. 8).

지만¹⁰⁾ 충분한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최초로 ‘공식참배’를 했다는 점이다. ‘공식참배’란 수상이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것, 야스쿠니신사에 헌금을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 그리고 방명록에 ‘일본국 총리대신’이라고 명기하는 것의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를 말하며, 그것은 곧 수상이 일본국민을 대표해서 참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당시 한국의 군사독재와 민주화투쟁이라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야스쿠니 문제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보다도 반일내셔널리즘으로 이용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장기간의 군사독재정권이 일본의 전쟁책임을 비롯하여 갖가지 보상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봉인해왔으며, 또한 국민들 스스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의 ‘공식참배’를 계기로 일거에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던 것은 1980년대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두환이 집권한 1980년대는 민주화의 열기가 최고로 고조되고 있던 시기로서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공식참배’는 궁지에 몰렸던 전두환 정권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과 이를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에서 ‘반일’은 적대적인 공존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반일내셔널리즘에 대한 일본 우파들의 불만이 이른바 ‘망언’이라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것도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¹¹⁾

10)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참조.

11) 이월덕(1997),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나남.

한편 1980년대 당시 일본에서 야스쿠니문제는 내셔널리즘의 재구축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이른바 ‘전후 총결산’을 내세운 정치가이며, 일본은 바야흐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국제화’와 ‘국제공헌’을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현장에서 ‘히노마루’ 국기와 ‘기미가요’ 국가(國歌)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일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일본적 아이덴티티’를 모색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지향성을 명백히 하는 이른바 ‘더블 스탠다드’¹²⁾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이러한 일본내셔널리즘의 재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강행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야스쿠니문제가 외교현안으로서 1985년에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각국의 정치를 둘러싼 국내적인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01년부터 쟁점이 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이에 대한 반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에 따라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한층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특히 최초의 문민정권으로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일본에 대한 과격한 발언까지도 불사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을 보면 고이즈미의 참배는 단순히 국가를 위해 싸운 전몰자를 추도하는 이상으로 일본인의 애국심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냉전체제 종언 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은 정치적인

12) ‘더블 스탠다드’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전쟁 책임 문제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불문에 붙이는 식으로 대외적인 자세와 국내적인 대응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구분해서 사용하는 문제의 처리 방식을 말한다. 吉田裕(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82쪽.

리더십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는 오랜 불황의 터널에 빠졌다. 이에 더하여 학교교육의 위기, 소년 흉악범죄의 증가, 위기관리시스템의 결여 등 사회적인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미사일 문제는 이러한 막다른 길에서 일종의 돌파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와 같이 내셔널리즘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이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다시 일본의 반발과 ‘망언’을 불러일으키면서 내셔널리즘의 충돌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구도가 성립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한국에서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관심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심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야스쿠니를 둘러싼 문제발생의 경위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야스쿠니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또한 비판되어 왔는지를 한국 정부의 공식견해와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IV. 한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문제점

한국 정부나 매스컴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근거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일본 수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에 참배하는 것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본 수상이 8월 15일에 참배하는 것은 외교현안의 하나라고 보는 의견¹³⁾도

있지만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1985년 8월 15일 나카 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최초로 공식참배한 것을 계기로 외교현안으로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2001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8월 15일에 참배하려 했을 때 한국과 중국에서 맹렬하게 반발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8월 15일을 피해서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도 한국과 중국에서의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먼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수상 이외의 다른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가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은 한국의 매스컴에서도 매년 비판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은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이외의 추도시설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 수상이 매년 8월 15일에 무도관에서 거행되는 ‘전국전몰자추도식전’에 참가하거나 무명용사의 치도리가후치[千鳥ヶ淵] 묘원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나 중지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에 일본의 수상이 참배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한일관계의 개선과 미래지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국 측의 논리를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대응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13) 中藤弘彦(2006), 「靖國問題からみた韓日關係-その背景と展望」(2006. 5. 30. ‘東아시아민포럼’에서의 보고).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명언한 이래 한국과 중국에서는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갔다. 결국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외압’에 ‘굴복’하여 8월 13일에 참배하게 되는데, 당시 한국 매스컴은 거의 천편일률적인 논조로 ‘A급 전범’ 문제에 일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패전기념일을 피해 13일 오후 4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에 전격적으로 참배했다”¹⁴⁾고 하여 야스쿠니신사를 곧 ‘A급 전범’과 직결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불러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매스컴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공식견해와 거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2005년 10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배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며,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¹⁶⁾ 또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같은 해 11월 23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정확하게 반성하지 않고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에 대한 참배를 계속하는 것은 과거회귀적인 것이 아닌가”¹⁷⁾라고 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 직전인 11월 18일에 부산에서 개

14) 『동아일보』(2001. 8. 13).

15) 『한국경제신문』(2001. 8. 14).

16) 청와대 홈페이지 참조.

17)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최된 APEC에서의 한일수뇌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에 대한 도전이며 일본의 과거회귀를 우려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A급 전범’의 합사 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에 일본의 수상이 참배하는 것을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문제를 ‘A급 전범’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하면 야스쿠니신사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점을 간과해버리게 된다. 여기서는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A급 전범’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야스쿠니신사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할 경우 더 이상 일본 수상이나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야스쿠니신사의 입장에서 보면 ‘A급 전범’이 분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이 분사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다. 1999년 8월 6일 당시 노나가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의 특수법인화를 통해서 국가가 그 제사를 행하고 국민 전체가 종교와 무관하게 위령에 참가하도록 하자는 점과, ‘A급 전범’을 분사하여 외국의 수뇌가 야스쿠니신사에 헌화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점을 주장을 했으나 자민당 내부의 신중론에 밀려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다.¹⁸⁾ 그러나 노나가 히로무의 발언은 자민당이 다섯 차례 제출했다가 모두 폐안되었던 야스쿠니신사의 특수법인화 문제를 재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⁹⁾ 이러한 노나가 히로무 발언의 배후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종교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내에서의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란

을 종식시키고,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사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대외적인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14명의 ‘A급 전범’에만 주목할 경우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야스쿠니신사가 가지고 있던 ‘침략신사’ 역할의 전체상을 간과해 버리게 된다. ‘A급 전범’은 도쿄재판에서 주로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평화에 대한 죄’로 기소된 전쟁지도자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A급 전범’ 문제에만 주목한다면 강화도사건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전사한 일본병사를 ‘순직’한 ‘영령’으로 미화하는 문제나, 나아가 식민지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고 자발적 충성을 강요한 야스쿠니신사의 역할까지도 간과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 전체로 보더라도, 야스쿠니신사에는 대만 식민지화 과정에서 저항하는 원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비롯하여 중국전선과 동남아 각지에서 전사한 전몰자를 ‘영령’으로 현창하고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일본 패전 후 전시 중의 포로 학대, 양민학살 등의 교전법규 위반 혐의로 연합국에 의해 일본 국내외에서 5천여 명 이상이 기소된 B·C급 전범 재판에서 약 1천 명이 사형되었으나, 야스쿠니신사는 이들을 ‘쇼와순난자’로 합사하고 있다.²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어 온 것이다.

물론 여기서 ‘A급 전범’ 문제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곧 ‘A급 전범’ 문제의 경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A급 전범’ 가운데 한국의 식민지 지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위 책임자는 제9대 조선총독을 역임한 고

18) 『朝日新聞』(1999. 8. 11).

19) 阿滿利麿(1999), 「靖國神社の脱宗教化とは何か」, 『世界』 666호.

20) 高橋哲哉(2005), 『靖國問題』, ちくま書房, 65쪽.

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한 사람이다.²¹⁾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제외한 다른 'A급 전범'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와 무관하다 말할 수 없다. 그들은 1931년 만주사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외침략 전쟁에서의 전쟁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전쟁 주도하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지배의 수탈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다수의 조선인들이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던 사실에서 볼 때 'A급 전범'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가지는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A급 전범'에 주목한 나머지 맹목적인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야스쿠니를 비판하는 측면이 강하며, 역사적인 관계와 의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관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야스쿠니를 비판할 때 그 대상과 시기에 관해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의 김영수(金英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야스쿠니 문제는 커다란 관심사가 아니다. …… 한국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야스쿠니를 지적하는 것은 고이즈미 내각에 압력을 가하는 명분적인 측면이 강하다”²²⁾고 하여 야스쿠니 문제가 외교 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특히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전몰자들만이 아니라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모든 과정에서 전사한 전몰자들을 합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고이소 구니아키는 1942년 5월 29일부터 1944년 7월 21일까지 조선총독으로 재임했다. 도쿄재판에서는 중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50년 11월 식도암으로 사망했다.
22) 『朝日新聞』(2005. 7. 7).

셋째로 'A급 전범'에만 주목할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서의 모든 책임을 'A급 전범'에게 전가하고 가해자로서의 일본 국민과 일본 병사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전사한 전몰자들을 천황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으로 합사함으로써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스쿠니신사의 전쟁책임까지도 불문에 부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는 특히 'A급 전범' 문제에만 주목할 때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그 모든 책임을 'A급 전범'에게 전가시켜 결착을 본 패전 직후의 구도가 되풀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 쇼와(昭和)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는 패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역사의 '진실게임'과 같은 것이지만, 최근 실증적인 역사연구에 의해 쇼와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초점에서 벗어난 논의로 일관하고 있다.

쇼와천황은 패전 후 첫 참배인 1945년 11월 20일 야스쿠니신사 임시 대초혼제(大招魂祭)부터 1975년 11월 21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그러나 그 후 천황은 1989년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²⁵⁾ 그리고 1989년에 즉위한 지금의 헤이세이(平成)천황도 참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갖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최근 공개

23) 다카하시 테츠야(2008), 「천황과 야스쿠니」, 한일, 연대21 엮음, 『한일역사인식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213~227쪽 참조.
24) 쇼와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박진우(2012), 「일본현대사에서 본 쇼와천황의 전쟁책임-봉인, 미화, 왜곡과 망각의 역사인식」, 『일본역사연구』 제36집 참조.
25) 田中伸尚(2002), 『靖國の戦後史』, 岩波新書, 32쪽.

된 자료에 의하면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대하여 쇼와천황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거의 명백해졌다. 전 궁내청장관 도미다 도모히코[富田朝彦]가 남긴 이른바 1988년의 '도미다 메모'²⁶⁾와 우라베 료고[卜部亮吾] 시종일기, 오카노 히로히코[岡野弘彦] 가인(歌人)의 증언 등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²⁷⁾

그런데 2006년 7월 일본에서 쇼와천황의 야스쿠니신사 'A급 전범' 합사에 대한 '불쾌감'이 보도되자 한국 매스컴에서는 아전인수식으로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논조로 일관했다. 더구나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왕'이라는 격을 낮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천황의 '권위'에 의지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왕이 말하는 대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이어진다"²⁸⁾거나, "일본 국내에서 왕이 차지하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메모는 금후의 야스쿠니 논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이다"²⁹⁾, 또는 "우리는 이를 계기로 야스쿠니 논쟁에 중지부를 찍고 'A급 전범'의 분사가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³⁰⁾고 하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논평으로 일관했다. '도미다 메모'의 핵심은 천황이 'A급 전범'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이 전쟁책임 문제에 휘말리

싫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저지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는 이미 전쟁책임에서 거리를 두는 천황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넘어버렸다. '도미다 메모'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참배 저지를 위해 활용한 것은 특히 중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일본의 경제계였지만, 천황의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2006년 8월 15일 수상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당당하게 참배했다.

다카하시 테츠야는 쇼와천황의 '도미다 메모'를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위험한 시나리오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쇼와천황의 '불쾌감'을 이유로 'A급 전범'의 분사를 실현하여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를 추진하고 천황의 참배 부활을 실현함으로써 전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이다.³¹⁾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와 천황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부활은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그것은 곧 금후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갈 것인가, 동아시아평화를 주도하는 길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선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도 포함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문제와 오늘날의 역할을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실증적인 연구와 논리적인 비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6) 『日本經濟新聞』(2006. 7. 20).

27) 半藤一利·御厨貴·原武史(2008), 『富田メモ・卜部日記で読む人間・昭和天皇』, 朝日新聞社, 154쪽; 中村直文·NHK取材班(2007), 『靖國-知れざる占領下の攻防』, NHK出版, 256쪽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박진우(2009), 「한국에서 본 야스쿠니 문제」, 『일본 역사연구』 제30집, 103~108쪽 참조.

28) 『조선일보』(2006. 7. 21).

29) 『경향일보』(2006. 7. 21).

30) 『한국일보』(2006. 7. 21).

31) 다카하시 테츠야(2008), 앞의 글, 227쪽.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와 외교현안으로서의 문제발생 배경, 그리고 야스쿠니 비판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금후 한국에서의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적인 실증연구와 실천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운동으로서의 국제적인 연대를 병행해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인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에서 국가(천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식민지 지배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신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황민화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 동원체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종래와 같이 야스쿠니 문제를 ‘군국주의의 부활’이나 ‘전쟁미화’로 비난하거나 또는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을 마치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는 좁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반전’과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전체상 속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오늘날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 우익단체, 언론 등의 자민족중심적인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경계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편협하고 맹목적인 내셔널리즘도 극복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결코 한국 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노력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하겠지

만, 특히 과거 가해자로서 군림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는 일본이 저야할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 高橋哲哉(2005), 『靖國問題』, ちくま書房.
吉田裕(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大江志乃夫(1984), 『靖國神社』, 岩波書店.
半藤一利·御厨貴·原武史(2008), 『富田メモ・ト部日記で読む人間・昭和天皇』, 朝日新聞社.
田中伸尚(2002), 『靖國の戦後史』, 岩波新書.
中村直文·NHK取材班(2007), 『靖國-知れざる占領下の攻防』, NHK出版.
村上重良(1970), 『國家神道』, 岩波書店.
村上重良(1974), 『慰靈と招魂』, 岩波書店.
村上重良(1986), 『靖國神社』, 岩波ブックレット.
하영선 편(1997),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한일, 연대21 엮음(2008), 『한일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논문

- 남상구(2006),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10호.
박규태(2000), 「야스쿠니신사와 일본의 종교문화」, 『종교문화연구(2)』, 한신인문학연구소.
박진우(2007),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초혼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검토」, 『일본사상』 제12호.
박진우(2009), 「한국에서 본 야스쿠니 문제」, 『일본역사연구』 제30집.
阿滿利磨(1999), 「靖國神社の脱宗教化とは何か」, 『世界』 666호.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

I. 머리말

II. 교과서 분석의 제 요인

III.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추이

IV. 맺음말-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

I. 머리말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와 사회, 국민의 인식 차는 최근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1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 양측의 극명한 의견 차가 드러난 이후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말 일본에서 자민당과 아베[安倍] 정부가 집권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고노 담화의 수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파고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지도자와 외교 당국의 갈등은 일반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양국 관계에 대한 한·일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¹⁾

1)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2013년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국 관계가 좋다고 답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현주(徐賢珠)

한국근대사·근현대 한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조선말 日帝下 서울의 하부행정제도 연구』(2002), 「일제의 지방행정구획 개편의 내용과 성격-1914년 서울의 町洞개편을 중심으로」(2004, 『한국문화』33),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과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대사 관련 서술」(2011, 『역사교육논집』47) 등이 있다.

정치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상호 인식마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상호 이해와 인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국가 간 화해 과정에서 역사 서술의 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프로그램의 개혁을 통해 이웃 나라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²⁾는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같은 해 12월 30일 발표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추진했음을 서술하라고 명시하였다.³⁾ 이 집필기준에 따라 편찬된 고교 역사교과서가 올해 검정을 통과하여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마침 일본에서도 2006년 60여 년 만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새로운 중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가 2008·2009년 두 해에 걸쳐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편찬된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교과서 편찬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율은 18.2%와 17.2%로, 2010년 조사 시의 24.2%와 5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답변은 각각 78%와 71%로, 전회 조사의 64%와 27%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한국일보』(2013. 4. 6), A4면; 「日韓關係「悪い」、日本で71% …… 共同調査」, 『讀賣オンライン』(2013. 4. 5).

2) 엘리자베스 콜 엮음·김원중 옮김(2010),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아픈 과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30쪽.

3)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이 글에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편찬된 일본 중교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그 이전 서술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술 추이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 단순히 교과서 서술 내용만을 분석하기보다는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서술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교과서 분석의 제 요인

교과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식의 총체를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문자 검정, 교육적 선택, 경제성에 대한 분석과 정치적 승인을 거친 지식·기술·태도를 반영한다.⁴⁾ 사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정치적·학문적 경향을 추종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엄정성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검토할 때에는 교과서 편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의 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1990년 이후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⁵⁾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과 일본군·정부와의 관계 등에

4) 팔크 핑엘(2008), 「교육을 통한 갈등 극복과 상호이해의 촉진-국제교과서 개정과 화해의 기회」,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동북아역사재단, 203~204쪽.

5)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 성과 정리는 강정숙(2009),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17쪽; 吉見義明(2007), 「日本軍「慰安婦」研究の到達點と課題」, 『韓日間における歴史問題の解決方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일부 학자도 있지만, 위안부 제도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될 것을 강요한 성노예제이며, 일본군 스스로가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유지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일본군 병사 등 관련자의 증언과 일본군과 정부의 공문서 등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의 상당 부분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노 담화’ 등에 반영되었으며,⁶⁾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보편적인 상식’으로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과서 편찬과 검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과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대표하는 고노 담화 및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교과서 편찬은 검정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에 근거하여 편찬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실시하여 이를 통과한 교과서만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편찬과 검정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습지도요령이다. 그러나 내각의 의결을 거쳐 문부과학성 고시로 관보에 고시되는 학습지도요령은 내용이 대단히 소략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실제의 교과서 편찬과 검정 및 교사의 수업에서 참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동 해설서다.

한편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아베 총리가 1차 집권할 때인 2006년 애국심과 향토애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60여 년 만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는 2008년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09년에 개정 고시되었다. 그렇다면 이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에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신·구 학습지도요령을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신·구 모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일본사 A·B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이해시키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위안부’ 관련 서술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사실은, 이 내용이 ‘위안부’ 관련 서술을 직접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한편 구판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 국민이 커다란 전화를 입은 사실”이라고만 기술했지만, 개정판에서는 “(일본의) 각 지역에 대한 공습,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카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등”과 같이 일본의 전쟁 피해를 구체적으로 열거

に關する研究-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東北亞歴史財團委託研究 最終報告書), 14~32쪽 참조.

6)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이하 II장 2절의 서술 참조.
7)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일본군 ‘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로 규정하고, 위안소의 설치·징집·운영은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에 반하며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1998년 1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에 의한 폭력보고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전시 중에 자행된 강간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국제법정에서 채택한 헌장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이상희(2009),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유엔 인권 기구-국제 NGO 활동을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96~98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2007년 7월 미 하원은 위안부 제도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이며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사과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표 1〉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련 내용

연도	내용
1999	또한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끼쳤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커다란 戰禍를 입은 사실, 나아가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끼쳤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⁸⁾
2008	또한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일본의) 각 지역에 대한 공습,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 등 우리나라 국민이 커다란 戰禍를 입었다는 사실 등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끼쳤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⁹⁾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충실과 추가를 유도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내용도 개정 전과 후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신구 해설서 모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사 A·B의 경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착안하여'라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서술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사는 '전쟁 피해의 심대함'(세계사A) 혹은 '다수 민간인을 포함한 막대한 희생 초래'(세계사B) 등으로 서술하며 일본이 초래한 아시아인의 피해를 특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차이는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세계사의 '위안부' 기술률이 일본사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¹⁰⁾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 중 세계사는 필수인 반면 일본사는 지리와 더불어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¹¹⁾ 이러한 사실은 일본 고등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해 배울 수 있

8) 文部科學省(1999),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110쪽.

9) 文部科學省(2008),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102~103쪽.

10) 고등학교 일본사와 세계사의 '위안부' 관련 기술률에 대해서는 III장 2절 〈표 5〉 참조.

11) 일본의 고등학생은 세계사A(2단위)와 세계사B(4단위) 가운데 1과목, 일본사A(2단위), 일본사B(4단위), 지리A(2단위), 지리B(4단위) 중에서 1과목으로 합계 2과목 4단위 이

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공습, 오키나와전투, 원폭 투하 등으로 일일이 열거한 반면, 아시아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기술 여부는 편집자와 집필자의 판단 여하에 맡겨져 있으며 서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2〉 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고교 일본사·세계사편)의 관련 내용¹²⁾

과목	내용
일본사A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비롯한 공전의 戰禍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이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미증유의 참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문화와 생활을 파괴한 사실에 착안하여,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에 힘쓰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사B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비롯한 공전의 戰禍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이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미증유의 참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문화와 생활을 파괴한 사실에 착안하여,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에 힘쓰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사A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전쟁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시킨다. 또한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소냉전의 싹과 원폭사용이 전후 국제정치에 준 의미에도 착안하게 한다. 이 전쟁이 초래한 인적·물적 피해의 심대함을 언급하고, 국제연합에 집중된 평화와 인권 확립에 대한 희구를 깨닫게 한다.
세계사B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개전에 이르는 과정, 전쟁의 확대와 전장의 광역화, 핵무기가 초래한 심대한 피해 등에 착안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상회하는 전화를 깨닫게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세력과 민주주의세력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취급하지 말고, 전쟁이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성격을 시야에 넣어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2) 文部科學省(1999, 2005 일부 개정),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36·67·99·146쪽.

〈표 3〉 현행 고교 일본사·세계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련 내용¹³⁾

과목	내용
일본사A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 대한 공습, 오키나와 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비롯한 공전의 戰禍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이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미증유의 참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문화와 생활을 파괴한 사실에 착안하여,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에 힘쓰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시킨다.
일본사B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 대한 공습,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비롯한 공전의 戰禍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이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미증유의 참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문화와 생활을 파괴한 사실에 착안하여,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에 힘쓰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시킨다.
세계사A	세계전쟁과 평화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전쟁 피해의 심대함과 전쟁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시킨다. 또한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소냉전의 싹과 원폭사용이 전후 국제정치와 일본에 미친 영향, 국제연합에 집중된 평화와 인권 확립에 대한 회고를 깨닫게 한다.
세계사B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중사회의 출현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전쟁의 확대와 전장의 광역화, 핵무기가 초래한 심대한 피해 등에 착안하여 전쟁의 양상이 다수의 민간인을 포함한 막대한 희생을 초래한 사실을 이해시키고, 이 전쟁이 가지고 있었던 복잡적이고 복잡한 성격도 깨닫게 한다.

2.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1) 고노 담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위안부’ 관계 자료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고노 담화’라고 부른다.¹⁴⁾ 고노 요헤이 장관은 담화

13) 文部科學省(200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21·43·54~55·73쪽.
1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에서

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던 것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내지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던 사례가 많았고, 관헌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등 동원(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승인하고 사과하였다. 또 “역사연구·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담화는 주체와 주어를 약간 애매하게 처리하여¹⁵⁾ ‘위안부’의 동원 및 ‘위안소’ 제도의 운영주체가 민간업자로 이해될 소지를 남긴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병사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일본 법원이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¹⁶⁾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술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¹⁷⁾

이 담화의 일본어 전문을 볼 수 있다.

- 15) 吉見義明(2013), 「『河野談話』をどう考えるか-その意義と問題點」, 『慰安婦パ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16~17쪽.
16)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사건(1991년 제소)과 부산 중군위안부·여자 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1992년 제소), 재일한국인 전 중군위안부 사죄·보상 청구사건(1993년 제소) 재판에서 일본 사법부는 고노 담화와 함께 발표된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의 2의 내용 전체(설치·관리에 대한 군의 직접 관여, 군 직영, 의사에 반하여 모집한 것, 관헌의 가담 등)를 인용하며, 군과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츠보카와 히로코[坪川宏子] 저·강혜정 옮김(2011), 『일본 재판소가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63쪽.
17) 고노 담화가 중·고교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문부성 관계자

역대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대내외에 표명해왔는데, 현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정권 시절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노 담화 수정을 언급하였다.¹⁸⁾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뒤 총리 자신은 고노 담화 수정을 언급하지 않고 이 문제를 관방장관에게 맡겼는데, 12월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금년 1월 3일 『뉴욕포스트』지는 사실에서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은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라고 보도하는 등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다.¹⁹⁾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한 아베 총리는 (한 발 물러서)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에 손대지 않고 무라야마 담화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미래 지향적 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사실상 희석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²⁰⁾

의 다음 발언이 참조된다.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확대된 이유는) 1991년경부터 ‘위안부’였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사건으로 보도되고,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매스컴 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함께 1993년 8월 정부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일단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나왔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미타라이 야스시[御手洗康]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장의 147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 답변, 2000. 2. 28. 남상구(2008),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집, 321쪽에서 재인용)

18) 『朝日新聞』(2012. 9. 16).

19)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외(2013), 「まえがき」, 『「慰安婦」パ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20) 「일본 관방장관, 고노 담화 수정 언급한 적 없어」, 『연합뉴스』(2013. 5. 8) ; 이종운(2013), 「역사로 미래로」,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 7쪽.

2)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고교 교과서에 기술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기존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약화 내지 삭제시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의 각의결정이다. 이것은 2007년 츠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 관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말한다. 츠지모토 기요미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당시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991년 1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관계 자료의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청취를 실시하여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같은 달 4일의 내각관방장관담화가 나온 것이다. 또 같은 날의 조사 결과 발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현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답변서를 각의결정하였다.²¹⁾

이 각의결정에 대해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며, 특히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이라는 인식까지 표명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산케이신문』은 “군과 관현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라고 각의결정된 이 답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수서원 ‘일본사A’가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 검정의견이 붙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명백히 강제연행되었다고 이해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21) 「「慰安婦」問題への認識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2007년 3월 16일 内閣中質 166 제110호). 질문주의서(<http://www.kiyomi.gr.jp/activity/kokkai/inquiry/q/20070308-1200.html>)와 답변서(<http://www.kiyomi.gr.jp/activity/kokkai/inquiry/a/20070316-1214.html>)는 츠지모토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허용되었다”고 답변하였다.²²⁾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 시장, 그리고 『산케이신문』과 같은 우익 정치인과 언론이 이 각의결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신조와 『산케이신문』의 이러한 각의결정 이해 방식에 대해서 “고노 담화 발표 때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각의결정 내용만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³⁾ 이것은 강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즉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만을 강제로 이해하는 아베 신조 총리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강제이며, 연행 시점의 강제보다는 위안소에서 강제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각의결정은 고노 담화 발표 때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없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고노 담화 발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가 무엇이며, 그 속에 당시까지 발견된 모든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고노 담화 발표 이후에 발견된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미 도모코[紙智子] 참의원 의원은 4월 23일 법무성이 보관하고 있다가 1999년에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한 도쿄재판 관계 문서 중에 군과 관헌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강제 연행한 증거서류—중국 구이린[桂林]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22) 『産経新聞』(2013. 3. 27), 3면.

23) 吉見義明(2013), 앞의 글, 21쪽 각주 1 참조.

삼았다는 기록—가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정부는 고노 담화 발표 전 후에 이 같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주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5월 7일 그 문서가 법무성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보냈다.²⁴⁾

일본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도 2013년 6월 10일 2007년 답변서에 등장하는 ‘정부 발견 자료’가 무엇인지, 고노 담화와 함께 발표된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이하 조사결과로 약칭)에서 기술개요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가리키는지 여부, 법무성관계의 「바타비아(Batavia)임시군법회의 기록」—일본군이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되어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하여 숙박시키고 위협 등으로 매춘을 강요하였다고 명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²⁵⁾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6월 18일자 답변서에서 ‘정부 발견 자료’는 「조사결과」에 개요가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리키며, 「바타비아임시군법회의 기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²⁶⁾ 답변서를 받은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법무성의 바타비아임시군법회의 기록이 있다고 인정한 이상 제1차 아베 내각이 2007년에 각의결정한 ‘강제 연행 자료

24) 「質問第83號 日本軍慰安婦問題の強制連行を示す文書に関する質問主義書」(參議院HP), 「強制連行の證據ある—慰安婦—紙議員が主意書」, 『しんぶん赤旗』(2013. 4. 27); 「일 “위안부 연행 증거없다” 주장, 알고 보니 눈속임」, 『연합뉴스』(2013. 5. 10).

25) 「強制連行の裏付けがなかったとする2007年答辯書に関する質問主義書」(質問第102號), 2013년 6월 10일. 이 질문주의서는 아카미네 의원의 홈페이지 이하 부분에서 그 전문을 볼 수 있다. <http://jcpakamine.jugem.jp/?cid=7>

26) 「強制連行の裏付けがなかったとする2007年答辯書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辯書」(内閣衆議183第102號), 2013년 6월 18일. 이 답변서도 위의 아카미네 의원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없음'의 답변서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아베 내각은 답변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각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후, 각의결정을 내세워 고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삭제하려는 『산케이신문』 등의 움직임이 있는 한편, 각의결정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공산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III.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추이

1. 중학교 역사교과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1년에 검정을 신청하여 다음 해 이를 통과한 후 1993년에 발행된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를 보면 대부분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실태를 비교적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회피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 등이 1991년 일

27) 「答弁書の誤り認めただちに撤回を」, 『しんぶん赤旗』(2013. 6. 19).

28) 한국교육개발원(1993), 『일본 중학교 사회과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271쪽. 다만 8종의 교과서 가운데 대판서적이 “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서 강제 동원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근로정신대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中教出版의 『일본의 흐름과 세계』는 “군을 수행해야만 했었던 여성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 그(위안부의) 실체를 표현하고 있다.

〈표 4〉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내용(1996년 검정합격본)²⁹⁾

출판사	서술내용
大阪서적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서 전장에 연행하고 있습니다. …… 중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전후 보상 요구 시위를 하는 위안부 사진 게재)
교육출판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중군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 …… 전후 50년이 지난 현재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있다. 거기에는 중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 (위안부 사진 게재)
청수서원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 중에는 전지의 위안부 시설에서 일하게 된 자도 있었다.
동경서적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적으로 전장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
일본서적	또한 여성을 위안부로 중군시키고 혹독한 취급을 하였다.
일본문교출판	위안부로서 전장의 군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한 여성도 있었다.
제국서원	전쟁에도 남성은 병사로, 여성은 중군위안부 등으로 몰아내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본법원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마스크를 비롯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커졌고, 1993년 8월 고노 담화가 발표되어 위안부 문제의 사실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에 영향을 받아, 1996년에 검정을 통과하여 1997년에 발행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전부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위안부'의 의미, 피해 상황, 관련 시민운동과 소송의 목적 등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³⁰⁾ 다만 동경서적에서 '강제적으로'라고 표현하여 강제동원임을 명백히 밝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

29) 大阪서적·교육출판·청수서원·일본서적·일본문교출판·제국서원은 정재정(1998), 「論争에 휩싸인 日本의 歴史教育-日本軍 '慰安婦'에 관한 教科書 叙述를 중심으로」, 『일본학』 1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2~13쪽에서 재인용. 동경서적은 田邊裕 외(1997[1996년 검정 합격]), 『新編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63쪽.

30) 정재정(1998), 위의 글, 13쪽.

이처럼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서술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가, 일본의 지방의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국회청원, 소송 제기, 새 교과서 편찬, 지방의회의 결의, 강연, 서적 발간, 시위, 협박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³¹⁾ 이런 가운데 1998년 6월 8일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 信孝) 문부과학대신이 참의원에서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어 있어서 금후 교과서 검정과 그 전의 집필 단계, 특히 채택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대신의 국회 답변을 이어받아 문부성은 1999년 1월 교과서 회사 경영자에게 ‘더 균형 잡힌 내용으로 할 것’, ‘저자 구성도 재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동경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은 1999년 8월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서 ‘중군’과 ‘강제’를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하였고, 문부성은 12월에 신청을 허가했다.³²⁾

2000년 4월에 검정을 신청하기 위해 교과서(최종본)를 제작하고 있던 1999년 12월에는 중학교 사회과를 발행하는 교과서 회사 사장에게 ‘총리관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위안부 기술에 대해 신중히 취급해 달라”고 말했다. 이 압력을 받아 백표지본 인쇄 직전에 4개 출판사가 ‘위안부’를 삭제, 수정하는 자주

31) 정재정(1998), 앞의 글, 19쪽.

32) 俵義文(2013), 「教科書問題と右翼の動向」, 『「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169쪽. 출판사의 신청과 문부성의 허가로 교과서 내용이 정정된 것은 2001년에 발행된 1996년 검정필 동경서적의 내용이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로 ‘위안부’ 앞의 중군을 삭제하고, ‘강제적으로’라는 표현을 ‘의사에 반하여’라는 다소 완곡한 기술로 바뀐 데서 확인할 수 있다. 田邊裕 외(2001[1996년 검정 합격]), 『新編 新しい社会：歴史』, 東京書籍, 263쪽. 교육출판과 제국서원도 ‘위안부’ 앞의 중군을 삭제했다. 국사편찬위원회(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검정본) 한국 관련 내용 시대별·주제별 분석 보고서』, 252~254쪽 참조.

규제를 실행했다.³³⁾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200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8종 가운데 3종—일본서적·청수서원·제국서원—만이 일본군 ‘위안부’를 서술하였는데, 세 교과서 중 일본서적의 서술 내용이 가장 충실하였다. 즉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의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다”고 기술하고,³⁴⁾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김학순 씨의 사진도 게재함으로써,³⁵⁾ 일본군의 성적 상대로서의 ‘위안부’의 의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소송 등 관련 현재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96년 검정합격본보다 ‘위안부’ 관련 기술을 강화한 일본서적은 이후 그 기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교과서 채택제도의 변경으로 일본서적의 채택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새역모’는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사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여, 2001년 중학교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청원과 진정을 각지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운동은 청원채택저지 움직임과 맞닥뜨려 2000년 7월까지 4곳의 현(縣)의회와 20개 정도의 시정촌(市町村)의회에서 채택되는 데 그쳤지만, 2000년 8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教科書議連으로 약칭)」의 간사장대리이던 고타마 다카오(小山孝雄) 의원이 ‘새역모’의 청원 내용과 동일한 질문을 하여, 오시마 다모리(大島理森) 문부과학대신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33) 俵義文(2013), 위의 글, 169~170쪽.

34) 日本書籍(2001), 『わたしたちの中學社会 歴史的分野』, 180쪽.

35) 日本書籍(2001), 위의 책, 205쪽.

그 후 문부과학성은 2000년 9월 13일과 2001년 1월 24일에 교육위원회에 통지를 보내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실시하라”고 지도하였다. 문부성의 통지에 따라 도쿄 도, 요코하마 시, 가와사키[川崎] 시, 가와구치[川口] 시, 니가타[新潟] 시, 히로시마 시 등의 교육위원회는 학교표를 폐지하고, 기타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존 채택제도를 개설했다. 이러한 교과서 채택제도의 변경으로 일본서적의 채택 부수는 1997년 129,000권이던 것이 2002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9,000권으로 격감했다.³⁶⁾

일본서적의 채택률 극감은 다른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쳐, 2005년 김정 통과 교과서 가운데 단 2종(일본서적신사, 제국서원)만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였다. 양적인 부분의 축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술 내용의 약화도 나타났다. “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 병사를 위해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모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라는 일본서적신사의 서술은 2001년판과 달리 ‘위안부’와 ‘강제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위안부’의 의미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의 요청에 의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군의 관여를 명확하게 기술한 것으로 아쉬운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³⁷⁾

2종의 교과서에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던 ‘위안부’ 관련 서술은 2011년에 김정을 통과한 7종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이것은 학습지

36) 俵義文(2013), 앞의 글, 170~171쪽.

37) 日本書籍新社(2009),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202쪽. 일본서적은 2001년도의 채택률 격감 때문에 도산하였다. 그 후 일본서적신사로 재건하여 2005년 김정을 통과했지만 채택률 감소가 계속되어 신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2012년도 판 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도요령 개정으로 중학교 역사 수업 시수가 종전의 105시간에서 130시간으로 25시간 증가하고, 이에 따라 7종의 교과서 모두 전체 분량은 물론 근현대사의 서술 분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사실과 대조된다.³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우파세력의 시도가 거의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역사학자가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판에서는 기술했지만, 성교육을 받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³⁹⁾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삭제를 요구했던 우익세력의 압박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경과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이 등장한 것은 1993년 무렵이다.⁴⁰⁾ 1992년과 1993년에 김정에 합격한 고교 역사 교과서(일본사 A·B) 23종 가운데 명성사를 제외한 22종에 ‘위안부’가 서술되어 기술률이 96%에 이른다.⁴¹⁾

38)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른 역사 수업 시수 증가와 교과서 서술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현주(2011),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 『역사교육논집』 제47집, 역사교육학회, 314~315쪽 참조.

39) 미타니 히로시(2012), 「시미즈서원 ‘신중학교 역사’의 동아시아의 취급」, 『한일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기술』, 동북아역사재단, 36쪽.

40) 南相九(2011), 「日本の歴史教科書の日本軍「慰安婦」記述と相互理解」, 『アメリカ太平洋研究』, 11, 35쪽.

41) 俵義文(1994), 『學習資料 檢證・15年戦争と中高歴史教科書-新(93~95年度用)・舊(81~83年度用)教科書記述の比較』, 學習の友社, 139쪽.

기술 내용은 교과서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여성 가운데에는 전지(戰地)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고 각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것(山川출판사의 4개 일본사B 교과서)에서부터, 본문에서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實敎出版의 高校日本史B)까지 있다.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전쟁」란에서 다루고 있지만, 현대사의 「전후 보상」란에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 “일본군 병사에 의한 부녀 폭행도 문제가 되어 군은 위안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하거나 해서 중군위안부로 삼았다”는 서술은(第一學習社의 高等學校 日本史B) 위안소 설치의 배경 및 주체, 동원 특성(취업사기, 강제연행) 등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위안부’의 민족별 구성에 대해서는 조선인 여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중국·대만·필리핀 등지에서도 동원되었다고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東京書籍의 현대로부터의 역사, 일본서적의 詳說高校日本史B, 三省堂의 日本史B).

이후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서술은 어떤 방향으로 변했을까? 이로부터 십 년이 더 지난 2006~2007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교과서는 A, B를 합해 모두 14종인데, 이 가운데 일본사A는 7종 모두 관련 기술이 있으나, 일본사B는 7종 중 산천출판사의 고교일본사B를 제외한 6종이 ‘위안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서 기술률(93%)이 1992~1993년(96%)에 비해 미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명성사 이외의 일본사 교과서 중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출현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기술률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서술 내용의 약화다. 1995년에 위안소 설치의 배경 및 주체, 동원(취업사기, 강제연행)의 특성에 대해 서술했던 제일학습사의 일본사A는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장으로 보내졌다”라며 내용을 축소·약화시켰다.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한 사례도 두 군데서 나타난다. 산천출판사의 상설일본사B는 “여성의 경우

전지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서술을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서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집되었다”로 바꾸었다. “다수의 조선인 여성을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하여 전선에 배치하였다”고 기술했던 삼성당(三省堂)의 일본사B는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보내졌다”로 바뀌었다.

2001년 이후 ‘위안부’ 기술 역사교과서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중학교와는 달리 고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위안소’ 제도 창설 주체로서의 일본군과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서술이 약화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검정 결과 발표 직전인 2007년 3월 5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문서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16일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며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각의결의를 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2) 2012~2013년 검정통과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구학습지도요령에 의한 검정(2006~2007)과 신학습지도요령하의 검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위안부’ 기술률은 64.7%와 64.5%로 거의 차이가 없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이 ‘위안부’ 기술률에는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96년 이후의 ‘위안부’ 기술 삭제 요구가 주로 중학교 교과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교단위 채택제를 취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2013년의 검정 통과 역사교과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2012년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일본사와 세계사) 19종 가운데 ‘위안부’가 기술된 교과서는 모두 11종으로 기술률은 58%이다. 기술이 있는 교과서 11종

중 9종은 현행본과 내용이 동일하나 1종은(제국서원의 세계사B) 기술을 추가했고, 1종(실교출판의 세계사B)은 현행본에 비해 기술이 후퇴했다. 제국서원의 세계사B는 “국가 간의 배상과는 별도로 일본에 의한 징병, 노동력 징발 등의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여 1990년대에는 재판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도 그 하나다”라는 주를 신설하였지만, 현행본에서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로 서술하였던 실교출판의 세계사B는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로 내용을 약화시켰다.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없는 8종 중 실교출판의 세계사A는 현행본에서 “중군위안부가 된 여성도 방대한 수에 달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 삭제의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총 12종의 일본사 및 세계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는데, 그중 ‘위안부’가 기술된 것이 9종, 기술되지 않은 것이 3종이다.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은 3종은 현행본에도 관련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 삭제나 약화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과 올해 검정 통과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률이 57.9%와 75%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기술률이 높은 일본사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높았던 데—세계사의 비율이 낮았던 점—서 기인한 것으로, 연도별 기술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9종 가운데 1종은 이번에 새로 편찬되어 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현행본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나머지 8종 중 5종은 기존 서술 내용과 같으며, 3종은 내용이 달라졌다.

청수서원의 일본사A의 경우 현행본의 “여성 가운데에는 위안부로서 연행되어진 사람도 있었다”는 서술이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로 된 사람도 있었다”로 변화하여, 일본군의 관련 사실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군’ 위안부와 가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전후보상 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 ‘여성기금’ 설치

〈표 5〉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

검정발표 연도	과목	종수	위안부기술	기술률	비고	
2006 ~ 2007	일본사	A	7	7	100%	
		B	7	6	86%	
		소계	14	13	93%	
	세계사	A	10	6	60%	
		B	10	3	30%	
		소계	20	9	45%	
합 계		34	22	64.7%		
2012 ~ 2013	일본사A	2012	4	4	100%	
		2013	3	3	100%	
		소계	7	7	100%	
	일본사B	2012	2	1	50%	
		2013	6	5	83%	
		소계	8	6	75%	
	세계사A	2012	9	4	44%	
		2013	0	-	-	
		소계	9	4	44%	
	세계사B	2012	4	2	50%	
		2013	3	1	33%	
		소계	7	3	43%	
	합 계		31	20	64.5%	

사실과 함께 이 기금이 배포한 위로금의 수취 거부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밝혀 균형 잡힌 서술을 꾀한 점은 주목된다.

실교출판의 일본사B(고교일본사B)가 ‘전후보상을 생각한다’라는 코너의 두 번째 부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로 뽑아, 일본군의 관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현행본(2007년 검정통과, 2012년 발행)에서는 2페이지에 걸쳐 ‘높아지는 전후보상 요구’, ‘전쟁책임·전후배상의 처리’, ‘독일의 전후처리’, ‘전쟁책임·전후보상을 생각한다’ 등 4개의 부제를 붙여 서술했는

데, 이번에는 ‘높아지는 전후 보상 요구’,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 ‘중국 인 강제노동’ 등 3개의 부제 아래 1페이지로 축약해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2개 교과서가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명기한 것은 서술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수서원 교과서가 이미 2006년 검정판에서 “또한 여성 가운데에는 중군위안부로 일본군에 연행된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⁴²⁾ 했던 것을 회복한 점, 그리고 실교출판의 고교일본사B가 본문에서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 일본군의 감리하에 ……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서술해 온 사실⁴³⁾ 등은 개선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기술이 달라진 나머지 하나는 산천출판사의 일본사A 교과서다. “또 위안부로서 각지의 군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가 “또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로 바뀌었다. 조선·중국·필리핀 등 동원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자발적인 의미가 강한 ‘군을 따라 간’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점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현재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장에 설치된 위안시설에서 여성들이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우익조차 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여했으며,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사역당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천출판사의 일본사A 서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본과 서술 내용이 동일한 5종 교과서 중 “전쟁터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선인이 많았다”고 한 청수서원의 일본사B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동경서적의 세계사B는 “여성을 위안부로 전장에 보냈다”는 서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현재 인권상의 문제로서 내외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구절을 덧붙여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인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다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2012년과 2013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의 입법에 의한 해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집필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난 미미한 개선이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과 관현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아베 신조 현 정권하에서 향후 지속되리라는 예측을 어렵게 한다.

한편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내용과 분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충실한 교과서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2010년도용 교과서의 출판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군의 관여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현황을 충실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서술한 실교출판사의 일본사 B(2종, 12.1%)는 관련 기술이 없거나 “조선인 여성 등 가운데에는 중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 또는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소집되었다”고 기술한 산천출판사 교과서(3종, 67.4%) 채택율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사B도 3종 모두 기술이 없는 산천출판사(55.3%)와, 1종은 기술하지 않은 동경서적 2종(23.3%) 및 역시 관련 내용이 없는 제국서원(8.1%)이 8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⁴⁴⁾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

42) 清水書院(2006), 김정 합격본 『高等學校日本史A』 151쪽; 남상구(2008),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집, 348쪽 참조.

43) 宮原武夫 외(2008, 2007 김정 합격), 『高校日本史B』, 實教出版, 203쪽.

44) 「2010年度用 中學校・高等學校教科書の採擇データ」, 『教科書レポート2010 No.53』, 113쪽.

과서에 정확하게 기술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기술 포함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의 관련 서술 개선에 주력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집필자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위안부’ 기술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과 전쟁의 피해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서 편집자·집필진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UN과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교육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기술이 집필기준으로 명시된 고교 교과서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검정 결과 발표 후의 추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본 중학교 교과서와 동일한 삭제 및 개악 움직임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교과서 출판사 사장과 편집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다. 『아사히신문』의 5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인 28일 자민당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작업팀 소속 의원 45명이 동경서적과 실교출판, 교육출판 등 3개 사 사장과 편집자를 불러 교과서 편집 방침 등을 물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난징대학살과 옛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한 압박성 질문이 이어졌고, “위안부에 대해 옛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강한 표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고 보도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작업팀 팀장은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좁히면 교과서 서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으며, 출판사 간부들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⁴⁵⁾

교과서 출판사 사장과 편집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른바 ‘자주 규제’로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약화·삭제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편을 통해 ‘위안부’ 관련 기술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의 교육재생실행본부 산하 교과서검정제도 특별위원회는 6월 “확정된 견해가 없는 역사적 사건을 확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것과 여러 설이 있는 사항은 다수설과 소수설을 균형 있게 다룰 것” 등을 요구하는 중간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 발표된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 해설집인 종합정책집에는 연구상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취급하지 않고, 참고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학설만을 기재하지 않으며, 수치 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발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다.⁴⁶⁾ 교과서 검정 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린제국조항의 수정도 포함되었다.⁴⁷⁾

한편 ‘외교·방위’ 분야에는 ‘영토·주권·역사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의 신설’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각종 전후보상재판과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져 우리나라의 명예가 현저히 손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서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실시한다”는 설명이 붙었다.⁴⁸⁾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등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야기한 참상을 약화·희석시

45) 「일 자민당, 교과서 ‘위안부 강제성’ 수정 압박」, 『한겨레신문』(2013. 5. 31), 12면.

46) 「300 眞に教育基本法・学習指導要領に適った教科書の作成・採擇」, 『J-ファイル2013 総合政策集』, 66~67쪽.

47) 위의 책, 67쪽.

48) 「185 領土・主權・歴史問題に関する研究機關の新設」, 위의 책, 45쪽 ; 「日 자민당 공약집의 위안부 관련 내용」, 『연합뉴스』(2013. 7. 3).

키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13년 3월 22일 24명의 학자·문화인들의 호소로 ‘아베교육정책 NO 평화와 인권 교육을!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아베 교육재생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21’이 사무국 역할을 맡아 팸플릿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아이들과 학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아베 정권의 교육재생」 13,000부를 이미 보급했으며, 개헌반대, 탈원전 등 다른 사회운동과도 힘을 합쳐 풀뿌리운동을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⁴⁹⁾

IV. 맺음말-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이상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이 일본군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직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이 ‘위안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서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본사 A·B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제2차 세계대전 부분)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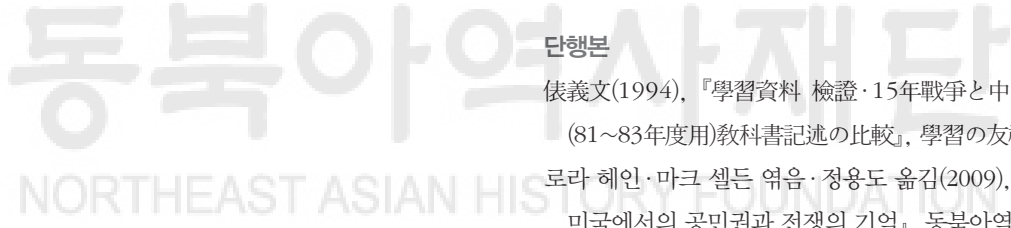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모든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는 반면, 후자는 90% 이상의 기술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교과서 편찬과 검정의 기준으로서 교과서 서술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민당은 많은 교과서가 여전히 자학사관에 입각하여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부과학대신이 각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 교육 부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위안부’ 관련 기술의 약화·희석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1990년 중반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 확대를 가져왔다면, 후자는 지금 약화·희석화를 도모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양자가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 내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은 고노 담화의 유지·확대와 제1차 아베 내각 각의결정의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과반 이상을 차지(연립여당인 공명당 포함)하게 된 자민당에 비해 위의 연구자·시민단체의 세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제가 성노예제이며, 일본군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서 고노 담화의 수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으로 ‘위안부’ 서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각의결정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9) 表義文(2013),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교육정책」,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광주대회 발표문), 78쪽.

그보다는 2012년과 2013년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한 실교출판의 일본사 교과서 채택 저지에 나선 것처럼 검정 과 채택제도 전반에 걸쳐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관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일본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기술을 뒷받침하는 고노 담화의 유지 확대와 더불어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교의 영향력 회복 혹은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문제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교과서 제도, 나아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그의 온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文部科學省(1999·2008),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文部科學省(1999, 2005 일부 개정)·200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2011년 김정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교과서: 教育出版,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외 6종.
 2012년 김정통과 일본 고교 일본사·세계사 교과서: 山川出版, 『현대일본사A』 외 18종.
 2013년 김정통과 일본 고교 일본사·세계사 교과서: 청수서원, 『고등학교 일본사A』 외 11종.

단행본

儀義文(1994), 『學習資料 檢證·15年戰爭と中高歴史教科書-新(93~95年度用)·舊(81~83年度用)教科書記述の比較』, 學習の友社.
 로라 헤인·마크 셸든 엮음·정용도 옮김(2009), 『역사검열과 역사교육-일본·독일·미국에서의 공민권과 전쟁의 기억』, 동북아역사재단.
 엘리자베스 콜 엮음·김원중 옮김(2010),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아픈 과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정진성(2004),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출판부.
 한국교육개발원(1993), 『일본 중학교 사회과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논문

강정숙(2010),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남상구(2008),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집.
 남상구(2011), 「日本の歴史教科書の日本軍「慰安婦」記述と相互理解」, 『アメリカ太』

平洋研究』11.

미타니 히로시(2012), 「시미즈서원 ‘신중학교 역사’의 동아시아의 취급」, 『한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기술』,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2011),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 『역사교육논집』 제47집, 역사교육학회.

이상희(2009),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유엔 인권기구-국제 NGO 활동을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이아현(2002),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2.
정재정(1998), 「論争에 휩싸인 日本の歴史教育-日本軍「慰安婦」에 관한 教科書 叙述을 중심으로」, 『일본학』 1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정진성(2010),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 연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제6권.

츠보카와 히로코[坪川宏子]·강혜정 옮김(2011), 「일본 재판소가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팔크 핑엘(2008), 「교육을 통한 갈등 극복과 상호 이해의 촉진-국제교과서 개정과 화해의 기회」,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동북아역사재단.

吉見義明(2007), 「日本軍「慰安婦」研究の到達點と課題」, 『韓日間における歴史問題の解決方策に関する研究-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東北亞歴史財團委託研究 最終報告書).

吉見義明(2013), 「『河野談話』をどう考えるか-その意義と問題點」, 『「慰安婦」パ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西野瑠美子(2012), 「日本軍「慰安婦」問題と教科書記述の變遷 日本軍「慰安婦」の記述削除の背景に何があったのか?」, 『SEXUALITY』 56.

林博史(2007), 「沖繩戦『集團自決』への教科書檢定」, 『歴史學研究』 第831號.

俵義文(2013), 「教科書問題と右翼の動向」, 『「慰安婦」パ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부록】

〈표 1〉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내용(1992·1993년 검정합격본)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A	山川出版	현대 일본사 개정판	여성 가운데에는 전지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1992년 검정)
	東京書籍	현대로부터의 역사	또한 다수의 여성이 정신대로 모집되었고, 조선을 비롯한 일본 점령지의 여성이 전선의 업무라는 구실로 중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주)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군위안부는 중국,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도 동원되었다.(1993년)
일본사 B	日本書籍	高校日本史B	조선 및 대만·필리핀 등에서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 일본군의 중군위안부로 중국전선 등의 지역으로 보냈다. (주)1991년 12월 전 중군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실태조사와 사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중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다.(1992년)
	東京書籍	新選日本史B	또한 중군위안부로서 전지로 보내진 조선여성도 적지 않았다.(1993년)
		日本史B 高校日本史B	또한 중군위안부로서 전지로 보내진 조선여성도 적지 않았다.(1993년) 그리고 일본군 병사를 위해서 조선인 등의 여성을 중군위안부로서 동원하였다.(1993년)
	實教出版	高校日本史B	(주)중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문제로, 일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분출하고 있다.(1993년)
		高校日本史B	한편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1990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양자는 공동으로 1991년 일본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동경지방법관소에 제소하였다.(1993년)
		日本史B	(주)일본군의 위안부로서 중국 등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 여성도 적지 않았다.(1992년)
	三省堂	詳解日本史B	또한 약 20만 명의 여성이 정신대로 모집되어, 많은 여성이 중군위안부가 되었다.(1993년)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B	三省堂	新日本史B	또한 다수의 조선인 여성을 납치하여 중군위안부로 전선에 배치하였다. (주)중군위안부에는 조선인, 일본인 외에 네덜란드인, 필리핀인 등의 여성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1993년)
	清水書院	詳解日本史B	또한 노동자와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도 실시되었다.(1993년)
	帝國書院	新考日本史B	조선인 여성 등 가운데에는 중군위안부로 될 것을 강요당했던 사람도 있었다.(1993년)
	山川出版	高校日本史B	(주)여성 중에는 전지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1993년)
		新日本史B	(주)또한 여성의 경우 전지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1993년)
		詳説日本史	(주)여성 중에는 전지의 군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1993년)
	自由書房	와이드 일본역사B	또한, 중군위안부로서 중국 등의 전선에 강제연행된 많은 여성도 있었다.(1993년)
		高等學校 新日本史B	중군위안부로서 전선에 동원된 사람도 있었다.(1992년)
	第一學習社	高等學校 日本史B	(주)일본군 병사에 의한 부녀 폭행도 문제가 되어 군은 위안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하거나 해서 중군위안부로 삼았다.(1993년)
		高等學校精選 日本史B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된 여성도 많았다.(1993년)
高等學校 新日本史B		(주)중군위안부로서 연행된 여성도 있었다.(1992년)	

〈표 2〉 2012년 검정통과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내용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A	山川出版	현대 일본사A	(주)또한 위안부로서 전지의 위안시설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여성들도 있었다.		
	實教出版	高校 日本史A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일본군도 설치와 감리에 관여한 위안소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중국인·인도네시아인·필리핀인·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을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대해서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하였다. …… 그러나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전후보상재판사진과 위안부에 대한 강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보도한 신문기사(1993년 8월 5일)] 전후보상을 생각한다. 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 …… 위안부는 전쟁 중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의 성 상대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전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출자와 국민 모금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가로서의 보상문제는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되어 개인에 대한 보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세를 불만으로 여겨 위로금 수취를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이하 생략) (역사의 군상, 전후보상문제를 둘러싼 사람들,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및 마쓰이 야요리 소개)		
			東京書籍	일본사A-現代로 부터의 歴史	일본의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필리핀인·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홍콩·싱가폴·네덜란드령 동인도부터 일본의 오키나와열도·북해도·樺太 등에까지 미쳤다.
			第一學習社	高等學校 日本史A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장으로 보내졌다.
			山川出版	詳説 日本史B	(주)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소집되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B	明成社	最新日本史	없음
세계사 A	山川出版	要説 世界史A	없음
		현대 세계사A	없음
		세계역사A	없음
	實教出版	世界史A	없음
		新版 世界史A	또한 각지의 전장에서 위안부로 된 여성도 적지 않았다.
	東京書籍	世界史A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진 많은 여성들도 있었다.
	清水書院	高等學校世界史A 最新版	없음
第一學習社	高等學校世界史A	여성이 위안부로 전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세계사 B	帝國書院	明解世界史A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중의 징용·징병, 여성이 위안 시설에 보내졌다고 하는 일 등 아시아 등의 여러 국민과 개인에게 미친 피해의 보상문제. 1990년대에 이러한 문제가 재판에도 거론되었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도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東京書籍	世界史B	없음
	實教出版	世界史B	또한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
	帝國書院	新詳世界史B	국가 간의 배상과는 별도로 일본에 의한 징병, 노동력 징발 등의 희생자 보상을 요구하여 1990년대에는 재판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山川出版	詳説世界史B	없음

〈표 3〉 2013년 검정통과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내용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A	清水書院	高等學校 日本史A 最新版	또한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로 된 사람도 있었다.(153쪽) 또한 군 위안부를 비롯한 전후보상 요구 등 우리나라의 전쟁책임 추궁하는 여러 나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198쪽) 전후보상문제 : …… 한편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전 군 위안부와 그 가족은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배상의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 일기본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고, 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군 위안부 개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 등을 배포하고 있다. '위로금'은 보상금이 아니라고 하며 수취를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다.(199쪽)
		實教出版 新日本史	또한 조선과 대만·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 등의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다.(97쪽)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많은 조선인이 위안부(97쪽)와 노동자로 오키나와로 동원되었다.(101쪽) 식민지로부터의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었다. 〔주④〕 일본 정부에 호소하는 전 위안부(사진) Topic 전후보상문제 : 전쟁 중에 위안부가 된 한국인 여성이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는 등 과거 식민지 사람들에 의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 중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157쪽)
	山川出版社	日本史A	①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 166쪽)
일본사 B	東京書籍	新選 日本史B	① …… 또한 위안부로 전장으로 보내진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도 적지 않았다.(222쪽) 개인에 대한 전후배상 :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 강제연행, 노무자, 한국·조선인과 대만인 전 일본병사 …… 등의 문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방한 시 보상을 대신한 '무언가의 조치'의 검토를 약속했다.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B	東京書籍	新選 日本史B	전후 50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1995년 무라야마 내각 때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임의단체가 발족되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명확화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에 대한 일관된 시점과 대응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요구되고 있다.(227쪽)
	山川 出版社	新日本史B	나아가 조선인 여성 등의 중에는 중군위안부로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325쪽)
		高校日本史B	관련 기술 없음
	實教出版	高校日本史B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일본군도 설치와 감리에 관여한 위안소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중국인·인도네시아인·필리핀인·네덜란드인 등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 병사의 성적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213쪽) 아시아로부터 추궁되는 전쟁책임 : 1990년대가 되자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대해서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하였다. …… 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전후보상문제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전후보상재판 원고단 동경지방재판소 입구에서 목도하는 전 중군위안부(1991년)] 위안부 강제 인정 사죄 : 위안부에 대한 강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보도한 신문기사(1993년 8월 5일)(245쪽) 전후보상을 생각한다 :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 1990년대에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안부는 전쟁 중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병사의 성 상대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전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출자와 국민 모금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가로서의 보상문제는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되어 개인에 대한 보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세를 불만으로 여겨 위로금 수취를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다.

	출판사	교과서 이름	서술내용
일본사 B	實教出版	高校日本史B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인권의식의 고양에 따라, 국제연합의 장에서는 전후보상문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255쪽)
		日本史B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로서 위안부가 되어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전선과 오키나와 등으로 연행되었다.(323쪽)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 근년, 정부와 관계기업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퍼져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상문제는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보상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 개인의 보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 어떤가, 문제는 남아있다.(323쪽)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접하기(일본국 헌법)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위안부와 강제노동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후략, 358쪽)
	清水書院	高等學校日本史B 最新版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선인이 많았다.(233쪽)
세계사 B	山川 出版社	高校世界史 新世界史B	없음
		東京書籍	新選世界史B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 I. 머리말
- II. 아베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
- III.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IV.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역사적 정의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I. 머리말

재집권 전 과거사 반성 관련 사죄를 부정하겠다는 정책을¹⁾ 공언해온 아

- 1) 도시환(2012),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20쪽.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재임 시(2006~2007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부정, 애국심 교육 강화라는 명목하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제도화하는 등 ‘과거사 반성 담화’를 국제역학관계에 따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퇴행시켰다. 또한 8월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정책과 관련해 첫째, 1982년 8월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관방장관이 “교과서 기술 시 한국·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미야자와 담화, 둘째,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셋째, 1995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전후 5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주변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결국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언급에서 그의 역사인식의 본질을 읽을 수 있다. 「아베 전 총리 ‘재집권 땀 식민지배 사죄 등 모든 담화 수정」, 『경향신문』(2012. 8. 29), 8면 참조.

도시환(都時煥)

국제법·근현대 한일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문으로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공저, 2012),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2008, 『국제법학회논총』),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조명」(2010, 『국제법학회논총』),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2010, 『국제법학회논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판결의 국제법적 평가」(2013, 『국제사법연구』) 등이 있다.

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략’의 정의조차 부정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행보였다.²⁾

2012년 12월 26일 재취임한 이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에 대한 수정 검토를³⁾ 시작으로, 2월 22일 시마네[島根] 현의 8년차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영토담당 정부 차관급 인사의 최초 파견을 비롯하여, 3월 26일 발표된 고교 검정교과서에 자국 중심 기술을 강화하는 등 역사인식의 퇴행을 그대로 노정해오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22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4월 23일 같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는 ‘침략의 정의’조차 부정하였다.

한편 4월 21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포함한 3명의 각료에 이어 4월 24일 일본 국회의원 168명은 아베 신조 총리가 수정하려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인 “아시아 제국의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주범인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된 곳이자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했다.⁴⁾

또한 4월 28일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61주년을 맞이하

2) 도시환(2013a),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 정책」, 『인권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서울지방변호사회·IIA 춘계 공동학술세미나), 2쪽.
3) 도시환(2013), 「日정부, ‘위안부’ 문제해결로 역사정의에 화답해야」, 서희외교포럼 ; 「미국, 아베 정권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에 제동」, 『한국일보』(2013. 1. 7), 15면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인터뷰, 「총리는 과거사 사죄 뒤집기·부총리는 참배…… 한일 관계 회복 찬물」, 『한국일보』(2013. 4. 23), 3면 참조.

여 자국 내 야당과 시민단체 및 오키나와[沖縄] 현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 등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脱却)을 주창하는 ‘주권회복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행사 말미에 군국주의 망령의 재현으로 비판받은 ‘천황 폐하 만세’ 삼창을 주도하였다.

더하여 5월 17일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군인들도 안장된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케빈 독(Kevin Doak) 조지타운대 교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일본 총리가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⁵⁾

그리고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아소 부총리는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회의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 민주주의 헌법의 효시인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 나치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수

5) “About the Yasukuni Shrine, let me humbly urge you to think about your own place to pay homage to the war dead, Arlington National Cemetery, in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go there, and as Japan’s prime minister, I have visited. Professor Kevin Doak of Georgetown University points out that visiting the cemetery does not mean endorsing slavery, even though Confederate soldiers are buried there. I am of a view that we can make a similar argument about Yasukuni, which enshrines the souls of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ervice of their country.”, 「Japan Is Back : A Conversation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2013. 5. 17). <http://www.foreignaffairs.com/discussions/interviews/japan-is-back> 참조.

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하게 된 수법을 배우자는 발언으로 국내외에 파문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하였다.⁶⁾

한편 7월 30일 이틀 전에 열린 동아시아컵 축구 한일전에서 일본 서포터들이 자국의 스포츠경기마다 등장시켜온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로 응원하자 한국 서포터들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다’와 이순신 장군·안중근 의사의 얼굴 현수막으로 대응한 일에 대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자국응원단의 문제점은 차치한 채 한국의 민도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였다.

더욱이 8월 15일 일본 각료 3명과 일본 국회의원 100여 명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허용·조장한 아베 신조 총리는 현장 참배 대신 대리인인 특별보좌관을 통해 당총재 명의의 공물을 봉납함으로써 ‘간접참배’를 하였다.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68주년 전국 전몰자 추도식 기념사에서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이래 지속적으로 표명되어온 ‘반성’과 ‘애도’ 그리고 ‘부전(不戰)의 맹세’도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전후 일본이 평화의 길에 매진하여 국제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건강부회만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집권 이래 8월 15일 종전기념일까지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각의 일련의 행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수정에서, 나아가 ‘침략의 정의’조차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전(戰前) 군국주의로의 부활을⁷⁾ 획책해

6) 「麻生氏講演での「ナチス例示」発言を撤回」, 『讀賣新聞』(2013. 8. 1) ;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130801-OYT1T00535.htm?from=ylist> 참조.
7) 이와 관련하여 와세다대학 이종원 교수는 필자와의 좌담에서, 전후체제의 극복을 표방하는 것은 전전(戰前)의 국가주의를 긍정하는 역사인식과 표리를 이룬다는 견해를

온 아베 총리가 부정하고자 하는 무라야마 담화의 본질로서 ‘침략의 정의’를 규명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아베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

1.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래 일본 정부는 자신의 경제적·전략적 필요를 하나의 배경으로 아시아와의 역사화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적 인식의 공식화를 추진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 통합이라는⁸⁾ 현실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역사 화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흐름을 ‘자학사관’이라는 비판을 통해 차단하면서, 오늘날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의원그룹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동의 움직임 역시 형성되어 왔다.

물론 1980년대에도 ‘근린제국조항’의 신설로 귀결된 1982년 6월의 역사교과서 파동 사건에서와 같이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제기된 항의를 외교적으로 수습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피력하였다. 「역사적 전환의 조류 속에 있는 동북아,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 8쪽.

8) 경제통합론(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이란 1961년 헝가리의 경제학자인 Bela Balassa가 제시했던 이론으로 국제경제의 통합과정을 FTA, Custom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가 12월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전쟁의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가 해야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침략전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간접화법’을 통해 ‘침략’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다.⁹⁾

또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개증언 기자회견에 이어, 1992년 1월 10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대(中央大) 교수가 일본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일본 육군성과 중국 파견부대 간 극비문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증거자료를 발굴하자 1993년 8월 4일 일본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 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¹⁰⁾

이후 1990년대에 역사인식 문제가 쟁점화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 따른 ‘전후보상’ 문제의 분출, 미소 냉전의 종결이라는 국제정치의 전환기적 시대 인식, 일본에서의 정권교체와 비자민당 정권의 탄생 등 정치·구조적인 요인에 더해, 1995년에 전후 50년을 맞이한다는 시대적 고비가 역사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직접적

인 계기가 되었다.¹¹⁾

1993년 8월 10일 비자민 연립정권을 탄생시킨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일본이 행한 전쟁 전체를 명확히 ‘침략전쟁’이라고 공식으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 국적’을 가지는 전몰자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추도 대상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근린제국의 전쟁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호소카와 정권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유족회 등 보수 우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전후보상’ 문제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관료들의 반대와 견제도 심해졌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개인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소정당을 모은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은 서서히 약화되었다.¹³⁾ 8월 23일의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¹⁴⁾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초래한 것에 다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나타내었으나,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하여 ‘침략전쟁’에서¹⁵⁾ ‘침략 행위’로 후퇴하였다.

9) 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82년 12월 22일, <http://kokkai.ndl.go.jp/>; 波多野澄雄(2011), 『國家と歴史-戰後日本の歴史問題』, 中公新書, 139쪽.

10) 「정신대, 日군경 합동모집」, 『동아일보』(1992. 1. 11), 1면; 일본 주오대학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일본현대사)가 당시 육군성과 중국에 파견돼 있던 부대와의 사이에 교환된 극비문서철 ‘陸支密大日誌’ 등의 자료 가운데서 발견한 것으로,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 등을 지시·감독·통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첩’과 ‘진중일지’ 등 당시 자료가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吉見義明 編(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吉見義明 著(1995),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도시환(2013), 앞의 글, 서희외교포럼; 도시환(200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3호 참조.

11) 이종원(2013), 「일본의 전쟁·식민지 지배 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 『식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107~108쪽.

12) 「이웃나라 戰爭희생자 애도 日수상 敗戰日 추도사」, 『동아일보』(1993. 8. 17), 2면; 波多野澄雄(2011), 『國家と歴史』, 173쪽.

13) 이종원(2013), 앞의 글, 109쪽.

14) 「일본 과거 침략행위 사과-호소카와 국회연설 반성 뜻 표명 …… ‘침략전쟁’선 후퇴」, 『한겨레신문』(1993. 8. 24), 4면.

15) 1993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의원이 한 질의에 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보수파의 인식과 논리가 집약되어 있다. 이시하라는 일본의

한편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1993년 11월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국 방문 시에 ‘식민지 지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반도 사람들이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당하고 또 위안부, 강제 연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진사(陳謝)한다”고 공식 사죄했다.¹⁶⁾

2.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의 부정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일련의 선도적 발언에 이어 이를 일본의 국가적 방침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 전후 50년의 국회결의와 무라야마 담화였다. 1994년 6월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무라야마 연립정권의 발족에 즈음하여 자민당·사회당·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의 3당은 정책 합의 문서를 교환했다. 그 중에는 “전후(戰後) 50년을 계기로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① “국제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중국 대륙의 권익을 둘러싼 분쟁이 긴 전쟁으로 발전”한 중일전쟁, ② 아시아를 놓고 같은 식민주주의로 충돌한 미국·영국·프랑스 등 열강과의 전쟁, ③ 중립 조약을 깬 소련과의 전쟁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 뒤, “어느 나라에 사죄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93년 10월 5일; 波多野澄雄(2011), 『國家と歴史』, 174~175쪽. 일본의 전쟁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 정당화하는 논리는 현재의 침략 논쟁에서도 되풀이해 등장한다. 이종원(2013), 앞의 글, 109~110쪽.

16) 「日, 식민지배 陳謝」, 『동아일보』(1993. 11. 7), 1면; 細川護熙(2010), 『內訟錄-細川護熙總理大臣日記』, 日本經濟新聞出版社, 157쪽 참조.

대처한다”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었다.¹⁷⁾

그러나 1995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일본 국회는 분규양상을 보였다. 전후 50년의 국회결의에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 그리고 이에 부정적인 자민당 사이의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 여당 프로젝트팀 좌장회(座長會)가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연립정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6월 6일에야 자민당이 양보했다. 그러나 연립여당 자민당의 유력한 집표 조직이기도 한 일본유족회 등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맹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어, 국회 결의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6월 9일에 중의원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전후 50년의 국회결의를 채택했다.

본원은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전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추도의 뜻을 바친다. 또 세계의 근대 역사상에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여,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나 타 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상이를 극복하고,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우며,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본원은 일본국 헌법이 표방하는 항구 평화의 이념하에 세계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인류 공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결의를 이에 표명한다.

일명 부전결의(不戰決議)의 제목도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라고 애매하게 붙여졌다. 또한 핵심인 역사인식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식민지 지배는 일본 뿐만 아니라”라는 문맥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이 아닌 ‘침

17) 五十嵐廣三(1997), 『官邸の螺旋階段-市民派官房長官奮闘記』(ぎょうせい), 125~126쪽.

략적 행위'라는 표현에서도 '침략'이라는 역사인식에 대한 보수파의 저항이 완강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수정안을 놓고 여야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당에서는 신진당 의원이 결의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불참자가 잇달았다. 이로 인해 중의원 502명 가운데 241명이 결석하고, 251명의 투표 가운데 230명이 찬성하면서 간신히 결의가 성립되었다. 국회결의는 만장일치가 관례여서 야당 제1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결의가 채택된 것은 오키나와반환협정 승인 이래 24년 만의 일이었다고 한다. 공산당 의원은 참석해서 반대했다. 실질적으로는 겨우 4문장으로 이루어진 국회결의였는데 역사인식을 채워 넣는 것은 그 정도로까지 어려웠던 것이다.¹⁸⁾ 일본의 역사인식의 '전진'을 의도한 국회결의였지만, 결과적으로 '후퇴'된 현실이라는 인상을 남겼다.¹⁹⁾

'무라야마 담화'는 국회결의의 실패에 따른 위기감과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내각으로서의 역사인식 표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

18) 服部龍二(2007), 『村山談話と外務省一戦後50周年の外交』, 田中努 編, 『日本論: グローバル化する日本』, 中央大學出版部, 74~75쪽.

19) 이종원(2013), 앞의 글, 111쪽.

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²⁰⁾

각의에서 결정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역대 총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계승되었고, 전후 60주년을 맞이한 '고이즈미[小泉] 담화'에서도 같은 문언이 사용되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한때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를 통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던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죄"를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무라야마 담화에 따른 표현이지만, 전후 한일 정부 간에 해방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 시점에서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명기된 공식 문서라는 의미를 가진다.²¹⁾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발언 이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한계를 가지면서도 조금씩 '전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진을 막으려는 보수파의 반동이 심화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대두로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일본의 상대적인 저하가 노정됨에 따라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서는 '우경화' 경향이 현저해졌다.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침체로 인해 불안과 불만의 증대, 사회경제적

20)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村山富市(2009), 『村山談話とは何か』, 角川文庫; 무라야마 담화의 원문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에 게시된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いわゆる村山談話) 참조.

21) 1965년 한일협정의 제 문서에는 역사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이 전혀 없다. 기본관계조약의 전문에 "양 국민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 및 주권의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라는 부분이 '역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예이다. 이종원(2013), 앞의 글, 112쪽.

격차의 확대 등 국내적인 요인도 그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 가운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는 보수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²²⁾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脱却)'을 주장해온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평화헌법체제의 변경을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헌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우선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로 집약되는 일본 정부의 반성적 역사인식의 흐름을 '자학사관'이라 비판하며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²³⁾ 재집권 과정에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고 2012년 말 총리 취임 직후부터 '역사수정주의' 적인 방침을 천명하자,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역사인식에 관한 발언을 애매하게 하고 있지만, 무라야마 담화를 사실상 수정하려는 자세는 거의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침략'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성인 것이다.²⁴⁾

3.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와 문제점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표명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식

22) 이종원(2013), 앞의 글, 112쪽.

23) 도시환, 「역사적 전환의 조류 속에 있는 동북아,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 8쪽 참조.

24) 이종원(2013), 앞의 글, 113쪽.

의 최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가 가진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당시의 외무성 기록²⁵⁾을 보게 되면, 무라야마 담화는 관저 주도가 아닌 일본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포괄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되 남아있는 전후처리 문제를 네 가지로²⁶⁾ 한정하여 '개인 보상'을²⁷⁾ 행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무성의 장기 전략에 입각하여 역대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기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⁸⁾

또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의 전쟁책임을 적극 인정하게 된 계기가 종전 50년이란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사회당 출신 총리로서 독자적인 색채를 보이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의지가 작용한 반면, 8월 9일 당시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 신임 문부상의 침략을 부인하는 망언으로 빛어진 파문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놓인 것이라고 당시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담화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한국과

25) 「情報公開法による外務省開始文書」, 2005-313.

26)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 타이완의 확정채무 문제, 재사할린 '한국인' 영주귀국 문제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조약에도 입각하여 대처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유기(遺棄) 화학무기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전후처리 문제를 네 가지 점으로 한정했다. 이 중에 타이완의 확정채무 문제란 타이완 주민에 대한 미불 급여와 군사우편저금의 지불을 의미한다. 服部龍二(2007), 앞의 글, 83~84쪽.

27)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본년 7월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정부로서도 이 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생각"이며, "과거의 대전에 관련된 배상,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이른바 중군위안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 보상을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상정되었다. 服部龍二(2007), 앞의 글, 84쪽.

28) 服部龍二(2007), 앞의 글, 79~84쪽.

중국 등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등 전쟁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외무성 종합정책국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으며, 한계와 논리적 모순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도쿄대 가모 다케이코(鴨武彦) 교수는 “과거 국책을 그려서 아시아 각국에 희생을 안겨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총리담화를 ‘과거지향적이며 미래의 행동지침이 결여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²⁹⁾

아울러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동년 10월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의원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일본 측 해석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한 질의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에 기초한 통치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로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고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³⁰⁾ 답변하였다.³¹⁾ 이와 관련하여 사카모토 요시카즈(阪本義和) 도쿄대 명예교수는 무라야마

담화가 갖고 있는 한계와 본질적 문제점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무효화’와 ‘천황에 대한 책임추궁’ 등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³²⁾

따라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이래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죄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책임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개인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채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전후처리를 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III.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

아베 총리는 4월 22~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침략의 정의’ 조차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는 침략의 정의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³³⁾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는 1952~1965년간 3차에 걸친³⁴⁾ UN총

29) 「日총리, 사과의 심정 표명」, 『동아일보』(1995. 8. 16), 1면.

30) 「第134回 國會參議院會議錄 第四號」(1995. 10. 5), 19쪽.

31)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의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2009년 8월 22일 제3회 역사NGO 세계대회 중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평가”라는 주제의 한·일 NGOs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 측 발표자였던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동 발언에 대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답변을 전언하였다.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자신의 진의와 달리 당시 일본 외무성 관료가 작성해준 답변자료를 낭독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바르샤바 게토(ghetto) 소재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함으로써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아울러 피해국 희생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역사적 화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정의에 대한 철학과 신념, 도덕적 양심에서 우러난 용기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비된다고 하겠다.

32) 「비핵공동체 전제돼야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 『한겨레신문』(2009. 9. 18), 4면.

33) 이장희(2013), 「아베 신조의 침략의 정의에 대한 망언의 국제법적 실체와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6월호, 10쪽 참조.

34) The first Special Committee on the Question of Defining Aggression was set up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8(VII) of 20 December 1952. It was composed of fifteen members. It lasted from 1953 to 1954. U.N.Doc.

회 ‘침략정의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4차에 해당하는 1967년부터 7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74년 4월 12일 침략의 정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어 1974년 12월 14일 제29차 UN총회(총회 3314호, XXIX)는 동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침략의 정의’ 결의를 총의(*consensus*)로 채택하였다.³⁵⁾ 일본 정부도 이 결의에 찬성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974년 UN총회 ‘침략의 정의’ 결의는 전문과 8개조로 구성되었다. 침략의 정의는 우선 전문에서 “침략은 위법한 무력사용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유형(*Considering also that, since aggression is the most serious and dangerous form of the illegal use of force*)”임을 지적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들의 의무(*Reaffirming the duty of States not to use armed force to deprive peoples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1조는 침략의 ‘일반적 정의’를 “어느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본 정의에 규정된 UN헌장에 위배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³⁶⁾

A/RES/688(VII), U.N. GAOR, Suppl. 20(A/2361), para.5(a)(b)(1952); U.N. Doc. A/2638(1953); The second Special committe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895(IX) of 4 December, 1954, remained in force between 1956 and 1957. This Committee consisted of nineteen members, U.N. Doc. A/3574(1956); The third one, consisting of twenty one members, was established under resolution 1181(XII) of 29 November, 1957, and continued from 1959 to 1967. U.N. Doc. A/AC.91/2(1959); U.N.Doc. A/AC.91/3 (1962); U.N. Doc. A/AC.91/5(1965).

35) Definition of Aggression, G.A. Res. 3314(XXIX), U.N. GAOR, 6th Comm., 29th Sess, 2319th plen. mtg.(1974).

36) *ibid.*, Article 1; Aggression is the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agains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other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set out in this Definition. 제1조와 관련하여, 총회의 침략의 정의가 “국가”에 의한 침략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일견 (*prima facie*) 침략행위의 증거를 구성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 행위나 그 결과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한 관련 사정에 비추어’ 어떤 무력의 선제사용이 침략이 아니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³⁷⁾

제3조는 침략에 대한 ‘열거적 정의’ 규정으로, 전쟁의 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되는 예로서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공격·점령·병합, 타국 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또는 일체의 무기의 사용, 무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에 의한 공격, 조약에 의하여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조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타국 영토에 계속해서 주둔시키는 것,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 데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그리고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하여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by or on behalf of a State*) 파견 등을 열거하고 있다.³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4조상의 안보리의 권능과, 제5조상의 개인의 침략범죄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UN헌장 체제 하에서 UN안보리에 의해 허가되거나 또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가 아닌 일체의 무력사용은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불법이므로, 국가들이 UN헌장을 위반하면서도 제5조를 통한 정당화 시도에 대해 UN총회를 중심으로 침략의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침략범죄와 관련해서는 2010년 ICC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제8조의 2(*bis*)에 규정하였다.

37) *ibid.*, Article 2; The First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harter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an act of aggression although the Security Council may,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conclude that a determination that an act of aggression has been committed would 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fact that the acts concerned or their consequences are not of sufficient gravity.

38) *ibid.*, Article 3; Any of the following acts, regardless of a declaration of war,

제4조에 의하면 이상 열거된 행위 외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침략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³⁹⁾

제5조는 침략에 관련한 세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혹은 기타 그 어떤 성격의 고려도 침략을 위한 정당화 사유로써 인용될 수 없다. 둘째,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국제책임을 야기시킨다. 셋째, 침략으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영토의 취득이나 특별한 이익도 합법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승인되어서도 안 된다.⁴⁰⁾

shall,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qualify as an act of aggression: (a) The invasion or attack by the armed forces of a State of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or any military occupation, however temporary, resulting from such invasion or attack, or any annexation by the use of force of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or part thereof, (b) Bombardment by the armed forces of a State against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or the use of any weapons by a State against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c) The blockade of the ports or coasts of a State by the armed forces of another State; (d) An attack by the armed forces of a State on the land, sea or air forces, or marine and air fleets of another State; (e) The use of armed forces of one State which ar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with the agreement of the receiving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r any extension of their presence in such territory beyond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f) The action of a State in allowing its territory, which it has placed at the disposal of another State, to be used by that other State for perpetrating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a third State; (g) The sending by or on behalf of a State of armed bands, groups, irregulars or mercenaries, which carry out acts of armed force against another State of such gravity as to amount to the acts listed above, or its substantial involvement therein.

39) *ibid.*, Article 4 ; The acts enumerated above are not exhaustive and the Security Council may determine that other acts constitute aggre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40) *ibid.*, Article 5 ; 1, No consideration of whatever nature, whether political, economic, military or otherwise, may serve as a justification for aggression.

제6조에 의하면 침략의 정의는 합법적인 무력사용의 경우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현장의 범위를 증감시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⁴¹⁾

제7조에 의하면 이 정의의 어떤 것도, 특히 제3조는 식민체제, 인종차별체제 혹은 기타 유형의 외국지배하에 있는 민족의 자결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⁴²⁾

2. A war of aggression is a crime against international peace. Aggression give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3. No territorial acquisition or special advantage resulting from aggression is or shall be recognized as lawful.

41) *ibid.*, Article 6 ; Nothing in this Definition shall be construed as in any way enlarging or diminishing the scope of the Charter, including its provisions concerning cases in which the use of force is lawful. 제6조와 관련하여, 침략이라는 용어가 UN헌장 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결의는 신법의 창설이 아닌 UN헌장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David H. Ott(1987),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Pitman, p. 314 ; 김대순(2013),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1520쪽.

42) Article 7 ; Nothing in this Definition, and in particular article 3, could in any way prejudic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reedom and independence, as derived from the Charter, of peoples forcibly deprived of that right and referred to in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articularly peoples under colonial and racist regimes or other forms of alien domination: nor the right of these peoples to struggle to that end and to seek and receive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and in conformity with the above-mentioned Declaration.

2. 2010년 ICC로마규정 ‘침략범죄’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의 정의와⁴³⁾ 관련하여 2002년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도 처음부터 제노사이드(genocide),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와 더불어 침략범죄를 ICC 관할범죄로 확정하되, 그 행사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의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미루었다가, 12년간의 오랜 작업 끝에 2010년 6월 12일 ICC 총회 재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에 합의하고, 침략범죄가 지도자범죄(leadership crime)라는 데 총의를 이루었다.⁴⁴⁾

2010년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삽입된 규정 제8조 bis로 명명된 침략범죄의 정의조항은 개인이 범하는 ‘침략범죄’와 국가가 행하는 ‘침략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이 규정의 목적상 ‘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

43) UN총회는 1994년 11월 제49차 UN총회 제6위원회에 제출된 ILC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초안을 기초로 하여, 1998년 7월 17일 로마외교전권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채택한 이래 2002년 7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0년 6월 12일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와 함께 이 범죄에 대해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설정과 범죄구성요소도 함께 채택하였다. RC/Res.6(2010), The Crime of Aggression, Annex II(Amendments to the Elements of Crimes), Article 8 bis (Crime of Aggression).

44) 1996년 ILC가 마련했으나 그리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법전 초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은 제16조에서 “지도자 혹은 조직자로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침략의 기획, 준비, 개시 또는 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개인은 침략범죄의 책임을 진다”(An individual who, as leader or organizer, activity particular in or order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ggression committed by a State shall be responsibility for a crime of aggression)라고 규정함으로써, 침략범죄의 주체가 ‘지도자 혹은 조직자’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침략행위는 그 성질, 중대성 및 규모에 의하며 UN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침략행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UN헌장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의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어느 행위든지 선전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1974년 12월 14일의 UN총회 결의 3314(XXIX)에 따라 침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이하 생략)⁴⁵⁾

따라서 규정의 목적상 개인의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데는 ‘침략행위’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데, 제8조의 bis 제2항은 “한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UN헌장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7개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침략행위에 대한 이 정의는 1974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침략의 정의 제1조와 제3조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⁴⁶⁾ 환언하

45)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8 bis ; 1.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crime of aggression” mean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execution, by a person in a person effectively to exercise control over or to direct the political or military action of state, or an act of aggression which, by its character, gravity and scale,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ct of aggression” means the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agains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other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y of the following acts, regardless of a declaration of war, shall,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4 (XXIX) of 14 December 1974, qualify as an act of aggression, UN Doc. A51/332 : <http://www.un.org/law/ilc/texts/dcodefra.html>.

46) 최태현(2010),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서울국제법연구』.

면 2010년 ICC로마규정 ‘침략범죄의 정의’가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침략의 정의’가 갖는 국제법적 의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 역시 동참하여 1974년 UN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침략의 정의’를 국제법규범과 국제공동체가 수용한 지 이미 오래이며, 2010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를 기초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을 채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전후 평화공동체로서 공유해온 국제법규범인 ‘침략의 정의’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부정은 첫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표로 출범한 전후 UN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둘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셋째,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우경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저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규범과 국제공동체가 수용한 1974년 UN ‘침략의 정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문에 민족자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들의 의무와 더불어 제7조에서 거듭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정의의 어떠한 규정도, 특히 제3조는 식민체제, 인종차별체제 혹은 기타 유형의 외국지배하에 있는 민족의 자결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

122~123쪽 ; 김대순(2013), 앞의 책, 1624~1626쪽 참조.
47) 이장희(2013), 앞의 글, 11쪽 참조.

다는 국제법규범에 주목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문제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IV.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역사적 정의

1. 아베의 ‘식민지책임’에 대한 인식

지난 7월 말 1923년 관동대학살 90주기를 맞아 현장조사를 위해 도쿄 출장을 가면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⁴⁸⁾ 아베 신조 총리는 5월 17일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미국인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변하였다. 그것은 전범자와 전사자를 동일시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몰가치적 몰역사성은 차치하더라도,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미화하기 위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우경화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그토록 집착하는 그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러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과 맥락을 그대로 같이 하는 내용의 자료를 야스쿠니신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야스쿠니신사 내 전쟁기념관인 유슈칸(遊就館)에 게시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독립’이라는 전시판의 설명이었다.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는 세계,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으며 많은

48) 「역사부정의 극치 보여준 아베의 야스쿠니 인식」, 『한겨레신문』(2013. 5. 21), 35면.

신각자들이 독립, 근대화의 모범으로서 일본을 찾아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아시아 민족에게 독립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현실로 된 것은 대동아전쟁 서전(緒戰)의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권력 타도 후였다. 일본군의 점령하에서 한 번 타올랐던 불꽃은 일본이 패했어도 꺼지지 않았고, 독립전쟁 등을 거쳐 민족국가가 잇달아 탄생했다.⁴⁹⁾

일본이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통해 식민지 권력을 타도함으로써 아시아 민족에게 독립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는 곧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일제 군국주의 논리이자, 아베 신조 총리가 참배하고자 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권력 타도로 아시아 민족에게 독립의 길을 현실로 열었다는 태평양전쟁이란 것은 바로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강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를 비롯하여 억압·수탈과 착취의 역사로 남은 일제식민지배 기간이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화가 아닌 식민지책임에 대한 역사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2. ‘식민지책임’ 문제의 제기와 연혁

아베 신조 총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외

49) 「第2次世界大戦後の各國獨立」, 『靖國神社 遊就館 圖録』, 2011, 107쪽.

50) 이와 관련하여 ‘침략전쟁’에 비해서 ‘식민지배’의 문제성에 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침략’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하에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의 과제와도 관련해서 정치와 사회를 끌어들이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종원(2013), 앞의 글, 115쪽.

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개인배상의 배제와, 10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된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결국 ‘일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곧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서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환언하면 ‘무라야마 담화’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임은 분명하나, ‘식민지책임’이라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는 이미 형해화(形骸化)를 의도했음이 더욱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적 역사인식의 공식화를 ‘자학사관’이라 비판해온 의원그룹의 핵심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른 아닌 것이다.

일본의 입장이 이러한에도 2009년 당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2월 3일 부산고등법원과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2000년 이래 한국에서 제기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1995년 이래 일본 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⁵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정

의 구현에 뜻을 함께 한 한일 양국 학자들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수년간에 걸친 공동연구와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2009년 6월 22일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무효·불법성’을 규명하였다. 이는 2010년 5월 10일 214명으로 시작하여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 1,139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⁵²⁾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근거로 한 일제강점과 그에 따른 불법적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 주도하에 한국의 당사국 지위를 배제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2015년 체결 50년을 앞둔 1965년 한일협정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때문에 오늘날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불법적인 ‘식민지’ 책임과 관련하여 한일 역사 갈등의 제반 문제를 노정시키는 진원지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현안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것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야 한일 양국 지식인 1,139명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 공동성명이 천명될 수 있

었던 맥락에서 볼 때,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체결하고자 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든 재검토를 요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한일 역사 갈등의 맹아(萌芽)를 배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2010년 한일지식인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은 남겨진 현안이자 역사적 후속과제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사에 대한 재조명 측면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가지 중대한 모멘텀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외교교섭이나 중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⁵³⁾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⁵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그 효력을 승인한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⁵⁵⁾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51) 도시환(2013b),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 28쪽.

52) 이와 관련하여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담화는, 일부 진일보라는 평가와 달리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한일병합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갈등의 핵심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외면하였다. See-hwan Doh(2010),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p. 1. 결국 일본은 지금까지도 1910년 한국강제병합에 대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다. 도시환(2010a),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356~357쪽.

53) 도시환(2011b),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재검토」,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85쪽.

5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1. 08. 30, 2006헌마788, 공보 제179호, 1285).

5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3.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검토

여기에서는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식민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일조약체제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한일지식인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 판결 체제, 그리고 남겨진 역사적 후속과제로서 2015년 한일협정 50년 체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⁵⁶⁾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관련하여 시제법, 즉 그 당시의 국제법에 입각하여 조약체결이 적법이라는 전제하에 유효부당론⁵⁷⁾ 주장해온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운노 후쿠쥬(海野福壽) 교수는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군대위안부·강제연행 등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이 범한 수많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만 하며, 구식민국·중주국은 깊은 반성에 근거한 사죄와 배상을 행해야 한다”고⁵⁸⁾ 언급하고 있다.

56) 도시환(2012), 앞의 글, 19~38쪽 참조.

57)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유효·무효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철학적 명제로서 국제법상의 적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세가지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196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의 ‘합법론’, 둘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의 ‘유효부당론’, 셋째,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선언의 ‘불법론’으로 대립되고 있다. 도시환(2010a), 앞의 글, 356~357쪽.

58) 海野福壽(1999), 「韓國併合の歴史認識-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世界』 제666호, 261~262쪽; 李泰鎮(2001),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152~153쪽.

그러나 운노 후쿠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⁵⁹⁾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의 경우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면서도 조약체결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하며, 그러한 전제에서 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⁶⁰⁾

그러한 운노 후쿠쥬 교수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서양을 대표하는, 특히 그 당시 일본의 국제법 관련 저술에서도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는 조약은 무효임을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⁶¹⁾ 따라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조약체결 강제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법적 합법성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나, 1910년 당시 국제법의 기준에서도 ‘한일병합조약’은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명백하다.

59) 海野福壽(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240~246쪽.

60) 和田春樹 교수는 海野福壽 교수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병합조약 체결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를 부정하고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는 견해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和田春樹(2010), 「韓國併合100年と日本人」, 『思想』 제1029호, 岩波書店, 249쪽.

61) J. C. Bluntschli(1872),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Nördlingen : C. H. Beck'schen Buchhandlung), p. 240 ; Theodore D. Woolsey(1874),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p. 184 ; L. Oppenheim(1905),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 Peace*, London, New York and Bombay : Longmans, Green, and Co., pp. 528~533 ; William Edward Hall(1890), Pearce Higgins ed.,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3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pp. 327~328 ; 秋山雅之助(1893), 『國際公法』, 有斐閣書房, 139~140쪽; 倉知鐵吉(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193~194쪽; 有賀長雄(1901),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419쪽; 立作太郎(1913), 『平時國際公法下』, 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180쪽; 박배근(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한국병합 관련 ‘조약’ 유효론 평가를 위한 일고」,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52쪽 참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 강박에 의한 조약 체결, 조약 정보상 황제의 서명 날인 및 조약에 대한 비준서의 흠결 등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일본이 주장하는 시제법에 입각할 경우에도 병합 당시의 조약 법 역시 조약 체결 형식과 절차상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는 조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본질적으로 ‘절대무효’인 조약에 대한 제3국의 승인은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한다. 넷째,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상 구조약의 실효시기는 1910년 불법적인 강제병합조약 체결시점이다. 다섯째, 일제강점기를 통한 ‘식민주의 범죄’는⁶²⁾ 인도와 평화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2)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

1951년 9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의 청산을 위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상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구축을 위한 조약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⁶³⁾

- 62) 이와 관련하여 무샤코지 긴히데[武者小路公秀] 교수는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반인종차별세계총회에서 제시된 ‘식민주의 범죄’(The Crime of colonialism)라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武者小路公秀(2001), 「日韓 「併合」의不法性と歴史的教訓」,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41쪽. 상세한 내용은 도시환(2010a), 앞의 글, 362~363쪽 ; See-hwan Doh(2009), 「1910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p. 7 참조.
- 63) 도시환(2011), 「샌프란시스코조약상의 영토규정과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함의」,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 모색』(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52회 학술시민포

럼, 2011. 11. 24), 65면 ; 吉田裕(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70쪽.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알타회담으로부터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전후 냉전체제의 고착화와 병행해 진행된 점과 그 배경으로서 미국의 대아시아 냉전전략의 존재라는 전제에서 한·일·중·일 간 영토분쟁의 숨은 당사자로 미국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강상중(2012), 「전후 민주주의 벗어던지는 일본,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2012. 9. 20), 29면.

64) 그러한 전제에서 대일강화조약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패전국에게 관대한 평화조약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근관(200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연구」,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369쪽.

65) 일본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이래 1952년 8월 IBRD, 1955년 9월 GATT, 1956년 UN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본주의 세계로의 신속한 진입 및 세계체제 속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해 갈 수 있었다. 홍인숙(1995),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통권 30호(봄호), 26쪽.

66) 일본은 미국과 1951년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한 동 조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게 되자 전후 재건에 매진하게 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태훈(2000),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13~24쪽.

67) 정재정(2006), 「한일국교정상화조약, 무엇이 문제인가」, 『한일관계 2천년 ; 근현대』, 경인문화사, 240쪽.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⁶⁸⁾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주도하에 ‘식민지’ 피해국인 한국을 전후배상 조약의 당사국에서조차 배제 시킴으로써⁶⁹⁾ 역설적으로 ‘식민지책임’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⁷⁰⁾

따라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체약국임에도⁷¹⁾ 제14조의 배상 청구권에서는 배제된 채 제4조의 보상청구권 적용대상이 되어 이를 전제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청구권은 보상적 청구권에 국한되었다는 논리 역시 조약의 제3자적 효력상⁷²⁾ 성립되지 않으며,⁷³⁾ 한일 양 주권국가가 ‘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양자협정 체결시 결정할 문제였으나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배경으로 이를 회피하였다.⁷⁴⁾

68) 小林英夫(1995), 「日本の東南アジア賠償」, 『季刊 戦争責任研究』, 10號,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10~14쪽.
 69)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는 金民樹(2000), 『對日講和條約と韓國參加問題』, 修士學位論文, 東京大學大学院綜合文化研究科 참조.
 70) 太田修(2008), 「財産請求權問題の再考-脱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笹川紀勝·李泰鎮 編, 『國際共同研究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696~717쪽.
 7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5조 : 본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나라들이나 이전에 제23조에 명명된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나라를 말한다. 다만 각 경우 관련된 나라가 본 조약에 서명하여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조약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본의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35조 :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73) 정인섭(1994),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공논총』 제25집 상권, 514~515쪽.
 74) 이종원(2013), 앞의 글, 115쪽.

3)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

1965년 한일협정은 베트남 전쟁의 격화로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미국의 의도, 전후 급격히 성장한 독점자본의 진출을 갈망한 일본의 요구, 그리고 불안정한 정권기반을 경제성장으로 만회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제협력방식으로 귀결되었다.⁷⁵⁾ 따라서 한일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로부터 유래하는 제반 문제를 청산, 처리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국교수립을 모색하는 내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배상의 측면이 배제된 채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조약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⁷⁶⁾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범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의 적용만을 받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일본에 대하여 배상적 청구를 할 자격을 얻지 못하였으며, 단지 순수한 채권채무적 관계의 청구권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다.⁷⁷⁾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양자 간에는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부존재하며, 무상 3억불은 권리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75) 이와 관련하여 김창록(2005),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성격」,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2008), 『한일교섭-청구권 문제연구』, 선인 등 기존 연구의 경우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한일협정 조문에 나타난 청구권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구권협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거나 민간인 보상 문제를 다룸으로써 일본의 전후처리 방식인 청구권협상이 어떻게 경제논리 속에서 처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이현진(2008),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73~94쪽.
 76) See-hwan Doh(2011), 「1910 Annexation and Remaining Task」, 『Korea Times』 (2011. 8. 31), p. 5.
 77) 정일영(1965), 「한일회담의 계쟁점」, 『한일회담 백서』, 대한민국 정부, 244~254쪽.

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혹은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해석함으로써,⁷⁸⁾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한반도 지배에 관한 언급은 없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에서 규정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분리·독립’에 관한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혀,⁷⁹⁾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책임이 그대로 남겨져 미해결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가장 논란이 많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개인청구권과 관련하여 2000년 일본 정부를 피고로 미국에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비하여 전환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에서부터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의해서 소멸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⁸⁰⁾ 그러한 전제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에 대하여 한국 국민이 가지는 ‘재산·권리 및 이익’에 한하여 일본의 국내적 입법조치인 법률 제144호의 제정을 통하여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78) 穀田正躬 外 2編(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時の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62쪽.

79) 穀田正躬 外 2編, 앞의 책, 61~62쪽.

80) 1965년 11월 5일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의원이 질의한 청구권협정과 일본국민의 권리소멸 여부의 문제에 대해, 시이나 에스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은 외교적 보호권의 소멸만을 의미할 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日本衆議院(1965),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第10號」(1965. 11. 5), 17쪽 이하, 시이나 에스사부로 외무대신의 답변; 日本參議院(1991), 「豫算委員會會議錄第3號」(1991. 8. 27), 10쪽,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 日本衆議院(1994),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1994. 3. 25), 8쪽,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외무대신관방심의관의 답변 참조.

그리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바⁸¹⁾ 있는 1965년 당시 한일협정 체결 전후로 작성된 (1) 1965년 4월 6일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2) 5월 28일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 (3) 9월 1일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 등 3건의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에서도 자국 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식민지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문제를⁸²⁾ 전혀 해결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상 개인청구권과 관련하여 일본 국회 특별위원회의 의사록을 비롯하여, 외무성 기밀문건에서도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⁸³⁾

81) 「일 외무성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연합뉴스』(2010. 3. 14).

82)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I) 2항의 경우,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8개 항목의 청구권 내용 역시 일본국의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민·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용석(1965), 『한일회담14년』, 삼화출판사, 58~75쪽; 이동원(1992),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253~273쪽.

83) 한일청구권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일본이 전쟁기간 중 대표적 반인권 침해범죄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과 그에 대한 국제형사책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1968년 11월 26일 UN총회가 채택한 ‘전시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의 시효부작용에 관한 협약’ 참조.

4)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과 '식민지책임' 판결

(1) 2010년 한일지식인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

2010년 5월 10일 214명으로 시작하여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 1,139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이 나왔다.⁸⁴⁾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은 조약의 전문(前文)·본문도 거짓이고,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상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⁸⁵⁾ 불의부당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더하여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상 구조약 실효조항(already null and void)과 관련하여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한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불법·무효라는 한국 측의 해석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반인도범죄'와 '식민지범죄'에 관하여 국제법 학계의 다양한 노력을 수용하여 일본도 침략과 병합,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대에 부응해야 함을 제창하였다.⁸⁶⁾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은 2011년 헌법재판소와 2012년 대법원이 역사적·

국제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는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⁷⁾

(2)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권인으로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⁸⁸⁾ 피해자들의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⁸⁹⁾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규정상 피청구인인 우리 정부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지행된 조직적·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

84) 한일지식인 공동성명문을 수록한 도서가 광복절에 한일 동시 출간되었다. 도시환 외 (2013),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동북아역사재단)와, 일본어판 都時煥 編著, 笹川紀勝·邊英浩 監修(2013), 『國際共同研究, 韓國強制併合100年歴史と課題』, 明石書店 참조.

85) 2011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 및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한일지식인 한국병합조약 원천무효선언 1주년 서울회의」에서 나카스카 아키라[中塚明] 일본 나라여대 명예교수는 ‘虛構の極みとしての『韓國併合條約』’라는 발제를 통해 한일 양국간 동의하에 미사여구로 구성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허구의 극치임을 비판하였다.

86)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87) 필자가 2000년부터 12년간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을 수행해온 최봉태 변호사와 나눈 대담에서 보면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라는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과 같은 역사적 정의를 향한 학문적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답변하고 있다. 「식민지배 합법화 일본판결 효력 우리 헌법상 승인 불가」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 역사의 정의 향한 물꼬 터, 『동북아역사재단 뉴스레터』(2012년 7월호), 6~9쪽.

88) 도시환(2008), 앞의 글 참조.

89) 현재 2011. 8. 30, 2006헌마788, 현재 결정문 요지 참조.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⁹⁰⁾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 미해결 분쟁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이다.

(3) 2012년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1995년부터 히로시마지방법재판소와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한편 2000년부터 한국에서도 제소하였으나, 2009년 부산고법과⁹¹⁾ 서울고법의⁹²⁾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각각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어서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과 7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일제 강제징용피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일제강점기에 따른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⁹³⁾ 이를 합법으로 본 일본 판결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⁹⁴⁾ 상충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90) 도시환(2013a), 앞의 글, 2~22쪽 참조.

91)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92)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93) 이와 관련해서는 See-hwan Doh(2010),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2010. 8. 12) : 「Japan's history distortion hampers bilateral ties」, 『Korea Times』(2010. 8. 24) 참조.

9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서는 우리 헌법상의 핵심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없으며,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일본 정부에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1910년 강제병합을 통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규범적 정의의 정립일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 사고에서 인권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이정표를 제시한 한국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⁹⁵⁾

V. 맺음말

재집권시 과거사 반성 관련 사죄에 대한 부정을 공언해온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 이후 8·15 종전기념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수정에서, 나아가 ‘침략의 정의

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95)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도시환(2013b), 앞의 글 참조.

조차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한 전전(戰前)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향한 궤적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먼저 그러한 전제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의 정의’에 대한 부정은 이미 예고된 행보이자 계산된 발언으로 파악된다. 실패로 끝난 제1기 집권시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脫却)’이라는 그의 슬로건은 이미 전후 체제의 근간인 평화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제1기 집권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전전 군국주의의 토대인 국가주의의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비롯하여 ‘침략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그의 정치구도상 기본요소로서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 역시 동참하여 1974년 UN 총회가 총의로 결의한 ‘침략의 정의’를 국제공동체가 국제법규범으로 수용한 지 이미 오래이며, 2010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도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를 기초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을 채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전후 평화공동체로서 공유해온 국제법규범인 ‘침략의 정의’에 대한 아베 총리의 부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표로 출범한 전후 UN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우경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저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공동체가 수용한 국제법규범으로서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전문과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제3조를 포함하여 어떠한 규정도 식민체제, 인종

차별체제 혹은 기타 유형의 외국지배하에 있는 민족의 자결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주목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문제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포린어페어스』의 인터뷰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와 야스쿠니신사가 동일한 것이라고 강변한 아베 신조 총리의 견강부회에 주목하게 된다. 전사자와 전범자를 동일시하는 몰가치적 몰역사성에 더하여 군국주의의 부활과 우경화를 상징하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그의 집요한 역사인식은 결국 침략의 부정에서 나아가 식민지배의 미화로 귀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 내 전쟁기념관인 유슈칸에 게시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독립’이라는 전시판의 설명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통해 식민지권력을 타도함으로써 아시아 민족에게 독립의 길이 열렸다는 주장으로, 이는 곧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일제 군국주의의 논리이자 아베 신조 총리가 참배하고자 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은 한국으로서는 일제의 강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를 비롯하여 억압과 수탈과 착취의 역사로 남은 ‘불법식민지배’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미화가 아닌 ‘식민지책임’에 대한 역사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역사인식의 최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포괄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등의 개인 배상을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동년 10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적법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식민지책임’

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한편 1951년 대일강화조약은 냉전질서하에서 전후 배상이 아닌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배상을 비롯하여 ‘식민지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을 동 조약의 당사국에서조차 배제시켰다. 이 조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해온 전후 체제의 극복이라는 논리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더욱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식민지책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과 관련하여 1965년 당시 일본 국회의 ‘일본과 대한민국간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의사록과 외무성 기밀문건에서도 일본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와 사법부, 2009년 한국의 고등법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제강제징용피해배상소송에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정의구현에 뜻을 함께 한 한일 양국 학자들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공동연구와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09년 6월 22일 한일 양국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무효·불법성’을 규명한 이래, 2010년 5월 10일 214명으로 시작하여 7월 28일 1,139명의 한일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은 이후 ‘한일청구권협정’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가지 판결의 중대

한 모멘텀이 되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외교교섭이나 중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그 효력을 승인한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하여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UN주최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식민지배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제라고 선언한 이래, 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30일 이탈리아-리비아 간 우호조약, 2013년 6월 7일 영국-케냐 간 사과와 배상, 2013년 9월 12일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 사과 및 배상 등이 실현되고 있는 점에 아베 총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무라이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전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꾼다는 비판을 받는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을 맞아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전 독일 대통령이 표명한 “과거에 눈감는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멀게 된다. 비인간성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감염 위험에 놓이기도 쉽다”는 독일인의 자기 몰입에 대한 경구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⁹⁶⁾

그렇다면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아베 신조

96) 도시환(2012), 「일, 위안부 문제해결로 인권존중을」, 『서울신문』(2012. 11. 12), 30면.

총리는 ‘침략의 정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국의 침략전쟁에 귀결되는 모든 책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 없이 현재의 과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성찰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략자로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기반으로 일제식민지배의 희생자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사죄와 배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⁹⁷⁾

그것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일제 강제징용 제도가 심판받아야 할 불법식민지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이자 식민주의 범죄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관의 차원에서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의 단절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지식인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명한 공동성명은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 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오늘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도모함으로써,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는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함께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97) 高橋哲哉(2005), 『戰爭責任論』, 講談社, 197~198쪽.

•참고문헌

단행본

김대순(2013),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도시환 외(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외(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외(2013),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2008), 『한일교섭-청구권 문제연구』, 선인.
 원용석(1965), 『한일회담14년』, 삼화출판사.
 이동원(1992),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高橋哲哉(2005), 『戰爭責任論』, 講談社.
 穀田正躬 外 2編(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時の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吉見義明 著(1995),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吉見義明 編(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都時煥 編著, 笹川紀勝·邊英浩 監修(2013), 『國際共同研究, 韓國強制併合100年歴史と課題』, 明石書店.
 立作太郎(1913), 『平時國際公法下』, 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細川護熙(2010), 『内訟録-細川護熙總理大臣日記』, 日本經濟新聞出版社.
 五十嵐廣三(1997), 『官邸の螺旋階段-市民派官房長官奮闘記』, ぎょうせい.
 有賀長雄(1901),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倉知鐵吉(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村山富市(2009), 『村山談話とは何か』, 角川文庫.
 秋山雅之助(1893), 『國際公法』, 有斐閣書房.
 波多野澄雄(2011), 『國家と歴史-戰後日本の歴史問題』, 中公新書.
 Bluntschli, J. C.(1872),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Nördling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David H. Ott(1987),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Pitman.

Hall, William Edward(1890),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3th ed., Higgins, Alexander Pearce ed., Oxford : Clarendon Press.
 Oppenheim, L.(1905), International Law : A Treatise, Vol, I Peace, London, New York and Bombay : Longmans, Green, and Co.
 Woolsey, Theodore D.(1874),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논문

도시환(200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 논총』 제53권 제3호.
 도시환(2010a),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도시환(2010b),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도시환(2011a),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도시환(2011b),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재검토」,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도시환(2012),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도시환(2013a),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 정책」, 『인권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서울지방변호사회/ILA 춘계 공동학술회의.
 도시환(2013b),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박배근(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한국병합 관련 ‘조약’ 유무효론 평가를 위한 일고」,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이종원(2013), 「일본의 전쟁·식민지 지배 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 『식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이현진(2008),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

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정인섭(1994),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5집 상권.
 정일영(1965), 「한일회담의 계쟁점」, 『한일회담 백서』, 대한민국 정부.
 최태현(2010),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武者小路公秀(2009), 「日韓「併合」の不法性と歴史的教訓」, 『日本の韓国併合效力に對する國際法的再照明』, 東北アジア歴史財團國際學術會議資料集.
 服部龍二(2007), 「村山談話と外務省-戦後50周年の外交」, 田中努 編, 『日本論：グローバル化する日本』, 中央大學出版部.

기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日本衆議院(1965),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第10號」.
 日本參議院(1991), 「豫算委員會會議錄第3號」.
 日本衆議院(1994), 「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日本參議院(1995), 「第134回國會參議院會議錄 第4號」.
 U.N.Doc. A/RES/688(VII), U.N. GAOR, Suppl. 20(A/2361), para.5(a)(b)(1952).
 U.N. Doc. A/2638(1953).
 U.N. Doc. A/3574(1956).
 U.N. Doc. A/AC.91/2(1959).
 U.N.Doc. A/AC.91/3(1962).
 U.N. Doc. A/AC.91/5(1965).
 Definition of Aggression, G.A. Res. 3314(XXIX), U.N. GAOR, 6th Comm., 29th Sess, 2319th plen. mtg.(1974).
 도시환(2012), 「日, 위안부 문제 해결로 인권 존중을」, 『서울신문』 2012. 11. 12.

도시환(2013), 「日정부, '위안부' 문제해결로 역사정의에 화답해야」, 서희외교포럼, 2013. 1. 2.

도시환(2013), 「日,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화답해야」, 『동아일보』 2013. 3. 19.

이장희(2013), 「아베 신조의 침략의 정의에 대한 망언의 국제법적 실체와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6월호.

「식민지배 합법화 일본판결 효력 우리 헌법상 승인 불가」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 역사의 정의 향한 물꼬 터, 『동북아역사재단 뉴스레터』 2012년 7월호.

「미국, 아베 정권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에 제동」, 『한국일보』 2013. 1. 7.

「비핵공동체' 전제돼야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 『한겨레신문』 2009. 9. 18.

「아베 전 총리 '재집권 땀 식민지배 사죄 등 모든 담화 수정」, 『경향신문』 2012. 8. 29.

「역사부정의 극치 보여준 아베의 야스쿠니 인식」, 『한겨레신문』 2013. 5. 21.

「역사적 전환의 조류 속에 있는 동북아,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

「이웃나라 戰爭(전쟁)희생자 애도 日(일)수상 敗戰日(패전일) 추도사」, 『동아일보』 1993. 8. 17.

「日, 식민지배 陳謝」, 『동아일보』 1993. 11. 7.

「일본 과거 침략행위 사과-호소카와 국회연설 반성 뜻 표명...'침략전쟁'선 후퇴」, 『한겨레신문』 1993. 8. 24.

「日총리, 사과의 심정 표명」, 『동아일보』 1995. 8. 16.

「정신대, 일군경 합동모집」, 『동아일보』 1992. 1. 11.

「총리는 과거사 사죄 뒤집기·부총리는 참배...한일관계 회복 찬물」, 『한국일보』 2013. 4. 23.

「麻生氏, 講演での「ナチス例示」發言を撤回」, 『讀賣新聞』 2013. 8. 1.

「第2次世界大戰後の各國獨立」, 『靖國神社 遊就館 圖録』, 2011.

Doh, See-hwan(2009), 「1910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2009. 7. 10.

Doh, See-hwan(2010),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2010. 8. 12.

Doh, See-hwan(2011), 「1910 Annexation and Remaining Task」, 『Korea

Times』 2011. 8. 31.

Doh, See-hwan(2013), 「Genuine sense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Korea Times』 2013. 5. 29.

「Japan's history distortion hampers bilateral ties」, 『Korea Times』 2010. 8. 24.

「Japan Is Back : A Conversation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 2013. 5. 17.

<http://www.foreignaffairs.com/discussions/interviews/japan-is-back>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130801-OYT1T00535.htm?from=ylist>

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82년 12월 22일, <http://kokkai.ndl.go.jp>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 I. 현행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 II.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의 변천과 입장 대립
- III. 자민당의 제도적 기획
- IV.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문제점
- V.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3년 1월 5일자 주간지 『Economist』는 아베 정권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국수주의적(dangerously nationalistic)’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2차 아베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는 2007년 총리직을 사임한 이후 일본회의의 일원으로서 우익교과서의 출판과 채택 그리고 확산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는 이쿠호샤(育鵬社) 출범에 중계인 역할을 하였으며,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에서 분리되어 나온 일본교육재생기구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익 교과서 채택률 향상에 앞장서왔다. 자민당의 정책 공약과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는 이 같은 아베 신조 개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확립이 핵심정책과제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논란은 미일동맹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세 번의 아미티지-나이 리포트를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 해역에서의

* 이 글은 『국방연구』 56권 4호(2013. 12. 31)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운도(崔雲道)

국제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문으로는 “Conditions for Peaceful Resolution in Territorial Disputes of Northeast Asia” (2009,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日本の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地域認識-アジアに対する認識の變化を中心に」(2012, 『鏡の中の自己認識』), 「미국의 귀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키텍처 : 동아시아 지역주의 협력의 G2화?」(2012, 『동아연구』 62호) 등이 있다.

어선충돌 사건, 2012년 노다(野田) 내각의 센카쿠 제도 국유화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무력 분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통해 미일안보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과 자신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반대 급부로 센카쿠 제도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이며 허용된다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정의와 함께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향후 허용될 집단적 자위권은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지난 60여 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아베 신조가 동원할 수 있는 합법화 방법과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위 논의에 기초하여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 현행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별된다. 평화헌법 도입 이후 일본의 방위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자위권 자체의 유무와 성격과 관련된 논의가 주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수립된 후 미일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논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받아들

여지고 있는 개념 정의를 살펴보겠다.

개별적 자위권이란 “국가에 대한 긴급부정(緊迫不正)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는 권리(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 내각법제국장의 발언, 「제145회 국회참의원 일미방위협력지침에 관한 특별 위원회 회의록」 4호, 1999. 5. 11)”로 정의된다.¹⁾ 이 자위권에 대한 권리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리고 자위권 발동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948년 제71회 국회에서 요시쿠니 이치로(吉國一朗) 내각법제국장의 답변 내용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요건들이란 ①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긴급부정의 공격이 있을 것(위법성), ② 그 공격을 배제하는 데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필요성), ③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무를 것(균형성)을 말한다.

이에 비해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도와서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²⁾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정부답변으로 인정되는 것이 1981년 이나바 세이이치(稲葉誠一)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 내용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집단적 자위권, 즉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접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저자 강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집

1) 鈴木尊紘(2011), 「憲法第9條と集團的自衛權：國會答弁から集團的自衛權解析に變遷を見る」, 『政治議會課憲法室 レファレンス』(2011年 11月號), 5쪽.
2) 筒井若水(1998), 『國際法辭典』, 有斐閣.

단적 자위권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헌법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제94회 국회중의원 이나바 세이이치 의원 제출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내각중의원질의94제32호], 1981. 5. 29).

여기서 보유하지만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는 현재의 해석이 확립되었다.

II.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의 변천과 입장 대립

1. 헌법해석의 변천과정

실제상황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 적용과 합법성 판단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전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본의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과 자위대 역할이 변해왔으며, 그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의 대상과 헌법 해석이 변했기 때문이다.³⁾ 뿐만 아니라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파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현재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개념 수립과 이해는 국제환경이 안정되었던 데탕트시기에 이루어졌다.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위권 논의는 개념상

3)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최대 특징인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해서는 Michael J. Green, and Mike M. Mochizuki(1998),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Prospects for Incremental Chang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참조.

4)鈴木尊紘(2011), 앞의 글.

1945년 6월 발표된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것이며, 특히 일본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최소한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과 1951년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논의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의 공동행사설이라고 하는 초보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 즉 '많은 나라들이 국제법상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들 많은 나라들이 자위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거기에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외교성조약국장의 1951년 국회답변)'는 입장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만약 동맹국 미국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할 경우 일본은 경찰예비대로 하여금 한국의 전선을 지키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회질문이 있었다. 당시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국장은 "일본은 독립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은 가지고 있으나 헌법이 군비의 보유와 교전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⁶⁾

1950년대 후반 안보조약 개정기의 특징은 해외출병을 집단적 자위권의 대표적 활동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과,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자위대 파견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이 '일체 금지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는

5)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에는 ① 개별적 자위권의 공동행사설, ② 개별적 자위권의 합리적 확대설, ③ 타국방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 1980년대 이후 일본은 ②의 해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鈴木尊紘(2011), 앞의 글.

6)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특별소해 부대는 GHQ의 지령에 따라 한반도의 동서 해역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1950년 10~12월에 걸쳐 1,200여 명이 파견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는 패전국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이 활동은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과는 상관이 없다. 당시 일본의 소해부대 파견에 대해서는鈴木英隆(2005),『朝鮮海域に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 その光と影-戦史研究年報(8)』, 防衛省, 26~46쪽 참조.

점이다. 다시 말해 해외파병이 집단적 자위권의 전형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헌법9조가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었다. 이에 대해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다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해외파병만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지의 제공이나 경제원조 등의 제공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일체 금지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의 내각법제국 장관 하야시 슈조[林修三] 또한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⁷⁾

1960~1970년대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미일안보동맹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을 확인한 이후로, 요시다 독트린이 제도화되는 시기였다.⁸⁾ 이 기간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발언이나 견해들은 없었으며, 오히려 1972년 결산위원회 자료에는 위에 소개한 1981년의 개념 정의와 유사한 견해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들어서야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구별하는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이 정착되고 있었다. 즉 정부의 헌법 해석이 합리적 확대설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냉전기로 접어들면서 미일안보협력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81년을 전후하여 집단적 자위권 개념이 정착되었다. 1978년에는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극동유사(極東有事)라는 상황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제기되었던 몇 가지 예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논의 방식을 살펴보자.

7) 鈴木尊紘(2011), 앞의 글, 38쪽.

8) 요시다 독트린이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 1% 규정 등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Kenneth Pyle(1998), *The Japanese Question : Power and Purpose in a New Era*, Washington : AEI Press : Kenneth Pyle(2007), *Japan Rising :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 Public Affairs Books 참조.

(1) 해상운송로 방위와 관련하여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의 요청에 의해 미군의 함대가 구원하러 오던 중 그 구원활동이 방해될 경우,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공해상에서든 영해상에서든 무력 공격을 받은 일본을 구원하는 활동인 만큼 미 함대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2) P3C 대잠초계기, 레이더 등으로 얻은 자위대의 정보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교환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위대가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정보교환활동이나 경계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반적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은 실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아키야마 오사무[秋山暎] 내각법제국 제1부장의 발언, 1997. 6. 4).

(3)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 및 극동유사에서의 편의제공은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다. 평시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극동유사의 경우 미군 기지의 경비 부담이 미군의 전투행위에 대한 비용과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한 실력 행사를 동반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제공에 불과한 만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는 다양한 활동(미군에 대한 정보 제공, 주일미군경비부담 및 극동유사시의 편의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개별적 자위권을 확대해석하는 반면 '실력 행사'를 동반하는 행위를 집단적 자위권의 필수 구성요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안보문제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 주었는데, 이때도 결국 실력 행사의 형태와 한계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1991년 걸프전 이후에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문제로, 1994년 이후의 북한 핵개발 문제는 미국의 개입(engagement)전략에 따른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 문제로, 그리고 2001년의 9·11 동시다발테러는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초래했다. PKO 참가 문제는 초기에는 PKO 활동을 위한 자위대 파견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당 여부가 주된 논의였으나, 결국에는 파견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주변사태에 대한 미일협력과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참가 및 후방지역 지원의 문제는 다국적군의 주력이 되는 국가 또는 후방지원 대상국의 무력사용과의 일체화 여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1980년대의 논의가 주로 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활동들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여부가 논의의 핵심 과제였다면, 1990년 이후의 논의는 자위대가 수행하는 작전이 무력사용을 동반하는가의 여부에 집중되었다.

2. 2007년 안보법제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법제간담회')를 설치하여 자위대가 수행해야 할 네 가지 유형의 임무 상황과 그에 대한 자위대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2008년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이후 제출된 보고서(이하 '안보법제보고서')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법적 제약과 문제해결의 선택지 그리고 최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개별 케이스에 대한 분석들 중 집단적 자위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1) 공해상에서의 공동훈련 상황에서 자위대 함대가 미군의 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행동하고 있을 때 미군의 함대가 공격을 받는다면 자위대 함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해상에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 함대와 항공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군을 호위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혹은 가깝게 있는 미군함정이 공격을 받아 자위대 함정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이는 자위대법 95조에서 규정하는 무기 등의 보호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미군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넓은 해양에서 그와 같은 초근거리 훈련은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다.

(2) 미국을 향하고 있을지 모를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합법적인가? 미사일 공격, 대량살상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거기다 복수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단순·명쾌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신속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역지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을 향하여 동시에 날아올 경우 일본을 향한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향한 미사일의 요격은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므로 요격이 불가능할 경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탄도미사일이 향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위대법 82조의 2에 기초하여 일단 경찰권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일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안전보장회의, 각의결정, 국회승인 등을 거쳐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은 탄도미사일이 지나가는 대기권 밖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이원적 체계와 시간적 지체는 MD체계 자체를 무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과 (4)의 유형은 국제적 평화 활동과 PKO 활동 등 해외파병과 관련되어 있다. 해외파병은 PKO 활동이든 다국적군이든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집단안전보장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논란이 되는 사항은 ‘무기의 사용’ 문제와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이다.⁹⁾ 그러나 국제평화 활동 과정에서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벗어나는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위대원이나 자위대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Type A)을 위한 무기의 사용 이외의 경우, 즉 타국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우(Type A)와 평화활동을 방해하는 상대에 대한 무기의 사용(Type B)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 문제는 PKO 활동이나 다국적군 이외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PKO 활동에서 자위대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타국 부대에 대한 보급, 수송, 의료 등 그 자체로는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활동들을 담당해왔으나, 지원받는 타국들의 무력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3)과 같은 무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것을 일본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에 적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극동유사의 경우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전투작전행동에 사용(미일안보조약 6조)한다면 일본의 기지제공 자체가 미군의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로 해석되어 위헌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나가소네의 ‘불침항모론’ 이후 자위대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헌법해석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인

9) ‘무기의 사용’ 문제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문제, 그리고 ‘국가에 준하는 조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김준섭(2008),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76집, 330~334쪽 참조.

정하지 않았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개별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왔다. 이러한 합리화 노력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내(국회논의)용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한다. 한편 행사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행사하는 일본의 자세는 외국으로부터 좋게 평가 되기는커녕 거꾸로 교활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고,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¹⁰⁾는 지적은 타당하다.

3.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찬반 대립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념상 ①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 그 행사한도를 언급하지 않은 의견과 ②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사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③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삼분되어 있다.¹¹⁾ 그러나 찬성과 내에서도 행사의 한도 설정 여부를 놓고 그 현실성으로 인해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대파 내에서도 한도 설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구분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찬성과 반대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일본 내 찬반양론은 1981년 이래 내각법제국의 헌법해석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을 주장하는 아베 총리는 그의 저서 『아름다운 일본(美しい日本へ)』에서 “권리가 있어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재산에 권리는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금

10) 西川吉光(2008), 「集團的自衛權解析の再考と日本國憲法」, 『國際地域學研究』 11號, 67쪽.

11) 衆議院憲法調査會(2005), 「衆議院憲法調査會報告書」, 308쪽.

치산자'의 규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¹²⁾

그런가 하면, 아베 신조에게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는 “유엔헌장 51조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를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유엔헌장의 획기성”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국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에 대한 부정은 1972년 이후, 특히 1981년 이후 정부 해석에 의해 정착된 것이지, 헌법과 유엔헌장의 제정에 의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기시 노부스케가 ‘헌법상 모든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상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주장한다.¹³⁾

아베 신조 총리의 ‘금치산자’ 논리에 대해 2004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있었던 아키야마 오사무(秋山暎) 내각법제국장관은 “국제법상 어떤 권리가 있어도 헌법이나 다른 국내법에 의해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법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4년 참의원 헌법조사회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사다 마사히코(淺田正彦) 교토대학 교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 권리를 보유할 능력과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학에서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세중립국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주권 국가로서 동맹을 맺는 것은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

되는 것이지만, 영세중립국은 스스로 타국과 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것이며 영세중립이라는 의무를 자기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⁴⁾

한편 토요시타 나라히코(豊下楠彦)는 사세 마사모리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법해석은 법을 만든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엔헌장의 획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별도로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의 작성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1944년 8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교외에 있는 Dumbarton Oaks에 모인 미·영·중·소 4개국 대표는 이른바 Dumbarton Oaks 제안이라는 것을 내놓는다. 즉, ‘무력행동의 일반적 금지’ 외에 지역적 약속이나 지역적 기구에 의한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보리 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부여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자 다음 달인 3월 멕시코시티 교외의 차팔테펙에서 열린 미주회의(북미, 중·남미 모두 참가)에서 미주대륙의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모든 가맹국들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여 군사력의 행사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해 유엔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Dumbarton 제안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다음 달인 4월 유엔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연합국의 대표들이 모인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미주국가들은 차팔테펙 결의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고, 여기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안보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위권의 발동을 가능하게 하자는 유엔헌장 51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12) 安倍晋三(2006), 『美しい日本へ』, 文藝春秋社, 132쪽.

13) 佐瀬昌盛(2001), 『集團的自衛權』, PHP新書; 佐瀬昌盛(2012), 『集團的自衛權: 新たな論争のために』, 一藝社, 14~21쪽.

14) 豊下楠彦(2007), 『集團的自衛權とは何か』, 岩波新書, 11쪽.

1945년 5월에는 5대국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유엔헌장 51조의 골격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가 규정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5년의 로카르노 조약과 1928년의 부전조약을 통해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과 개별 국가의 전쟁 권리에 대한 논의를 거친 바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사항, 즉 안보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미국에 의해 기각되었다. 개별적 자위권은 이미 인정된 상태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란 임의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의미하고, 이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엔의 목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팔테팩 결의를 수용하기로 한 이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을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개별적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침략’이라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무력공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을 보다 좁고 명확한 상황으로 제한하려고 하였다.¹⁵⁾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조건인 ‘무력공격’의 상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력공격을 침략과 구별함으로써 침략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만약 침략을 ‘공공연한 공격’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 모두를 포함한다면 무력공격은 ‘침략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¹⁶⁾ 그에 따라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의 판결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①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것, ② 무력공격을 받은 피해국이 그러한 사실을 선언할 것, ③ 피해국이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것.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그 한계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자위권의 권리행사를 규정하기보다는 동 권리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¹⁷⁾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공격’의 개념이 국제정세와 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니카라과 판결에 의하면 ‘무력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간접침략이나 단순 침입,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 시점에서 상정할 수 있는 실제상황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공격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적기지 공격론, 중국의 민간어선이나 민간을 빙자한 해감선의 센카쿠 열도 상륙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주한일본인들의 구출 작전 등은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유엔헌장 51조가 제정될 당시의 일반적 병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병기, 즉 미사일이나 우주병기 등의 공격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지, 선제공격은 허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¹⁸⁾ 또한 해상운송로의 보호와 같이 역외에서의 법 집행활동으로서의 무기 사용이 ‘무력행사’에 적용될 것인지, 무력행사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행사가 반복되었을 경우 혹은 저수준(저강도)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무력행사’의 범주에 들 것인지도 문제가 된

15) 니카라과 사건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정에서 나온 무력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Zia Modabber(1988), “Collective Self-Defense : Nicaragua v. United State”, 10 Loy. L.A. Int'l&Comp. L. Rev. 449, p. 461 참조. <http://digitalcommons.lmu.edu/ilr/vol10/iss2/5>

16) 豊下楯彦(2007), 앞의 책, 23쪽.

17) 유형석(2006),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배경에 관한 소고」, 『法學研究』 22집, 439쪽.

18) 이러한 국제법적 이유로 부시 정권에서는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국가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¹⁹⁾ 이는 중·일 영토갈등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해 침입과 상륙 행위, 해상운송로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테러와 해적 행위 등이 새롭게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III. 자민당의 제도적 기획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는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베 내각에서는 세 가지 방식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석개헌과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성립 그리고 헌법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²⁰⁾ 이들 세 가지 방식을 추진하는 방식에서의 전략적 제안은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에 잘 나타나 있다. 자민당은 2012년 4월에 발표한 헌법개정

안에서 헌법개정의 발의요건을 중참의원의 2/3에서 과반수로 완화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 판단에 참가할 기회를 얻기 쉽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의 초점으로 삼았다. 여기서 『요미우리신문』은 96조를 개정하고 다시 9조를 개정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일본에게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총리가 바뀌게 되면 헌법 해석은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해석개헌을 보장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¹⁾

1. 해석개헌을 통한 방법

2007년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발표된 안보법제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헌법 해석의 변경에 의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해석의 변경은 필요하고, 거기다 변경은 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安保法制懇談會, 2008, 26)”²²⁾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헌법 해석이란 사실상 내각 소속의 한 기관인 내각법제국의 견해를

19) 村瀬信也(2006), 「自衛權の新展開」, 『國際問題』, 1~4쪽; 植木俊哉(2006), 「低水準底強度敵對行爲と自衛權」, 『國際問題』, 5~32쪽. 지강도 적대행위란 순시선들에 의한 무력충돌이나 센카쿠 섬들에 대한 상륙행위들을 가정하고 있다.

20)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자민당 정치인 아마사키 타구[山崎拓]는 집단적 자위권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헌법개정, ② 집단적 자위권을 전제로 한 법률의 제정, ③ 국회결의, ④ 내각 결정에 의한 해석개헌. 안전보장 기본법의 개정은 두 번째 방법인 법률의 제정에 해당한다. 山崎拓(2002), 「このまま自衛隊に「超法規的行動」をさせるのか」, 田原總一郎 編, 『日本よ日本よ』, 小學館, 77~96쪽. 그러나 국회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결의가 가능하거나 국회의 정책실현 의지가 있다면 안전보장기본법과 같은 법적 조치에 의한 방법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결의는 기술적 가능성에 의한 선택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일본 방위연구소의 내부보고서인 「憲法に係る政府解釋の變更に関する研究」(2011년 기초연구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의 협의 결과인 국회결의에 기초하여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국회결의는 법률 제정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다. 櫻井宏之(2013), 「集團的自衛權問題は改憲なしに解決可能」, 國際問題フォーラム, http://www.jfir.or.jp/cgi/m-bbs/contribution_history.php?form%5Bno%5D=2779(검색일 : 2013. 9. 15) 참조.

21) 『讀賣新聞』(2013. 5. 2).

22)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會(2008),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會」報告書』.

말한다. 내각법제국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그 견해를 표명한다. 첫째는 내각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각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이나 내각이 제정하는 법령 등의 합헌 여부 심사를 통한 방법이다. 둘째는 국회 위원회에서 내각법제국장관이 헌법 해석에 관한 답변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이다. 어느 경우이든 내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내각법제국의 해석이 갖는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에서는 헌법·내각법에도 내각법제국의 해석 권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내각법제국의 견해 혹은 법제국장관의 답변이 국회와 내각 모두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마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반영한 1981년의 정부답변서를 따르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내각법제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조차 거의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²³⁾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내각법제국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2003년 츠노 오사무(津野 興修) 전 내각법제국장관이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한 소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이란 어디까지나 정부 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 내각법제국의 의견이 매우 최종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법제국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내각이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 내각 입장에서 법제국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일 만할 때, 정부의 의견으로서 법제국의 의

23) <http://www.magazine9.jp/rikken/130123/>

견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각법제국의 해석과 의견이 법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관습적·정치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누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나서서 내각법제국의 기존 헌법 해석에 대한 변경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천명하고 있다면 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내각이 내각법제국의 기존 해석을 채택하지 않으려 할 경우 내각법제국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제국은 내각부에 속하는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만큼 내각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각이 ‘각의결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정부 해석으로 채택하려 한다면 만장일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장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이전의 해석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반대한 장관은 장관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총리가 정책의 실현이나 문제의 대응을 피하기 위해 담당국무대신이나 행정기관에 내리는 지시²⁴⁾인 ‘내각총리대신지시’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각의결정’이나 ‘내각총리대신지시’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간단한 대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8월 8일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법제국 장관에 고마츠 이치로(小松 一朗) 주프랑스대사를 임명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지지해 온 인물로서, 안보법제보고서를 작성한 ‘안보법제간담회’에 외무성 국제법국장 자격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이 인사 조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단행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해당한다.²⁵⁾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마츠 이

24) ‘小學館’의 정의. <http://www.kotobank.co.jp>

25) 『毎日新聞』(2013. 8. 8). <http://mainichi.jp/select/news/20130808k0000e0101880>

지로 장관은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는 내각이 결정하며 내각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해 …… 헌법 해석의 변경은 아베 내각이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내각법제국이 해석의 변경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아베 내각은 ‘각의결정’방식 혹은 ‘내각총리대신지시’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정부 해석과 현실 사이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가? 헌법 9조에 대한 내각법제국의 해석은 1980년대 이래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견은 모두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에는 위배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운용에 의해 자위대의 무기사용과 후방 지원 과정에서 타국의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제한함으로써 합리화해왔다.²⁷⁾ 이 경우 사실상 헌법의 실질적 의미를 훼손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석개헌이란 헌법 조문은 그냥 둔 채, 그 해석을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00c.html

26) 이번에 결정된 전임 내각법제국 장관 야마모토 츠네유키[山本庸幸]는 8월 20일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하면서 “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종래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개정이 적절하다. …… 이는 국민과 국가가 판단할 몫”이라고 언급했다(『讀賣新聞』 2013. 8. 21).

27)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UN의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해상자위대의 보급함과 호위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2001~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그 근거가 된 법률은 한시법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및 테러대책 해상저지 활동에 대한 보급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신테러조치법)이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명분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26일 만에 끝난 이후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복구 및 부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가 성립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을 한시 입법으로 제정된 뒤 그에 따라 2003년 12월 자위대 병력을 파병하였다. 자위대 병력은 그로부터 5년여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지에서 인도적 지원 및 수송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입법조치를 통한 방법

입법조치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성립을 통한 방법을 의미한다. 자민당은 2012년 7월 그 법안의 개요를 발표한다. 그런데 자민당은 법안을 내각제출이 아닌 의원제안으로 할 것을 명백히 해 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내각제출 법안이라면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의 내각법제국 입장을 보면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이다.²⁸⁾ 지난 8월 8일의 고마츠 신임내각법제국 장관의 임명에 의해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내각법제국 내부에는 해석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원제안의 경우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상정 과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법제국에서 심사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 자신이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법제국에 의한 심사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내각법제국과 같은 제동력을 가질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²⁹⁾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개요를 통해 법안의 성격을 살펴보자.³⁰⁾ 우선 5조

28) 井上正信(2013), 「憲法9條の立法壞憲=國家安全保障基本法案」, <http://www.jicl.jp/hitokoto/backnumber/20130225.html>. 그는 현재 일본변호사연합회헌법위원회부위원장이다.

29) 麻生多聞(2013), 「安部内閣による憲法9條解釋變更の試みをめぐる憲法學的考察」, 연구회보고서.

30) 自民黨(2012), 「國家安全保障基本法案(概要)」(2012. 7. 4).

http://www.jimin.jp/policy/policy_topics/117613.html(검색일 : 2013. 8. 11)

에서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40여 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 속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사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고 해당성청과 관련 위원회가 정책결정의 권한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국가는 관련 계획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³¹⁾ 기본법 제1호가 바로 교육기본법이다. 교육분야에서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교육분야의 법체계 기본을 정한 것으로, 준헌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며 다른 교육관련 법들의 상위법에 해당한다.³²⁾

국가안전보장기본법 또한 이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추측케 하는 것이 바로 5조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이 도입될 법제상의 조치로써 개요 내에서 몇 개의 예시를 하고 있는데, 집단자위사태법,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 국제평화협력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뿐 아니라 기존의 법률들도 상위법 하에서 재편될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은 교육기본법과 달리 현행 (평화)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 지위를 위치 짓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들을 성립시키거나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여 법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데 따른 법체계이므로—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하극상’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본법의 입법조치를 택한 정치적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31) 夏島泰裕(2006), 「自民黨文教族は妥協していない」, 『世界』 7月號, 119~125쪽.

32) 그와 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을 2006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1기의 아베 신조 내각이었다.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된 10조에서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들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며 그 조건으로 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만한 관계성이 있을 것, ② 피해국으로부터의 지원 요청, ③ 자위권 행사에서 해당 무력공격과의 균형성을 갖출 것을 들고 있다.

개요의 11조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안전보장조치에 참가할 경우 유의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엔의 해당 조치 목적이 일본의 방위, 외교, 경제 정책 등과 합치할 것과 실시 주체와의 충분한 조정, 파견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등을 거쳐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의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할 것을 적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부속 내용으로 “본 조의 하위법으로서 국제평화협력법안(이른바 일반법)을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2010년 5월 자민당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된 항구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PKO 활동이 무력행사 및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한시법의 문제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문제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국제협력에 대한 원활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지배하던 중의원에서 폐안이 되었으나 동 법안이 현행의 PKO법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3. 명문개헌의 방법

2012년 4월 자민당이 제출한 헌법개정초안은 9조가 포함되어 있는 2장의

제목이 ‘전쟁의 포기’에서 ‘안전보장’이라는 중립적인 형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내용에서 9조의 도입부에 전쟁의 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2항에서 ‘전 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위권이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안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³³⁾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결의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제안과 그 승인을 위한 수속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중·참의원 각각의 “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그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서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승인에는 별도의 국민투표법 또는 국회가 정한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日本國憲法第96條第1項).” 그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 5월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중·참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함으로써 ‘분점국회’(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여당과 야당으로 서로 다른 현상)가 되었으며, 민주당의 반대로 헌법심사회가 실질적인 출범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발표된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은 기존의 개정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원 총의원수의 2/3의 찬성’을 ‘각원 총의원수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은 2012년 12월 중의원에서의 승리 이후 2013년 7월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

33)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일본 정치권의 노력과 과정은 이토 나리히코 저·강동완 역 (2005),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행복한 책읽기 참조.

보함으로써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의원 선거결과 개헌을 지지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은 참의원 242석의 3분의 2(162석)에 19석 모자라는 143석을 확보했다. 이들 3당은 중의원에서 이미 3분의 2(320석)를 넘는 366석(중의원 의장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타 정당들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양원 각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안 발의요건 충족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참의원 선거 전인 2013년 6월 21일 『산케이 신문』의 국회의원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원의 84.3%(중의원 91.6%, 참의원 67.6%)로 중·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었다. 어떤 항목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군대와 자위대 보유’가 71.9%로 가장 많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해석 변경으로(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가 32.2%, ‘헌법 조문을 개정해서 용인해야 한다’가 32.0%로 ‘용인파’가 60%를 넘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조심스럽다. 2013년 8월 24~25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 해석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좋다’는 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개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은 24.1%였으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은 20%에 그쳤다. 『아사히 신문』의 2013년 8월 25일 여론조사에서는 해석개헌에 대해 찬성 27%, 반대 59%였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 직후인 2013년 7월 27~28일에 실시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 찬성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96조의 개정을 통해 국회발의 조건을 1/2로 낮추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여론이 일차적인 걸림돌인 것이다.

IV.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해석개헌이든, 입법조치든, 개헌이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의 궁극적 목적은 위의 개별 사안들의 현실적 해결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의 역사관과 국가주의적 사고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미일관계 제1주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을 통한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원활한 미일방위협력이나 효율적 방위체제 구축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 타협안이다.

최근 자민당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 움직임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신조가 추구하는 정책 성향과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적 영토·영해정책과 중국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역할 확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도 속에서 한·미·일의 안보협조와 협력은 약화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안보 자산이다. 2012년부터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아시아 국가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안보 협력관계의 근본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10여 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아미티지-나이 리포트를 통해 일본의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³⁴⁾ 아시아로 회귀

34)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12), "The U.S.-Japan Alliance :

(Pivot to Asia)한 미국에게 최근의 재정난은 그 필요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³⁵⁾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약속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적대국으로 행동할 때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에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만큼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즉 일본의 대중국 강경대응이 미국으로 하여금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다.³⁶⁾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베가 개헌을 시도할 경우, 헌법이라는 큰 틀 속에 집단적 자위권을 끼워 넣기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개정의 대상에는 천황의 지위, 국기·국가의 규정, 자위권의 명기 등과 같은 정치적인 과제 이외에도 가족의 존중, 환경보전의 책임, 재정 건전성의 확보 등과 같은 기능적인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하에서 제정된 교육기본법 개정 과정과 유사하다.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전후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의무교육 사항이나 생애교육과 같은 행정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념적 색채를 흐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국민투표 방식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투표법에는 국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07), "The U.S.-Japan Alliance :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A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00),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A special report fo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35) Kurt M. Campbell, Nirav Patel, Vikram J. Singh(2008), *The Power of Balance : America in Asi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Hillary R. Clinton(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Nov.).

36) Patrick M. Cronin et. al(2013), *The Emerging Asia Power Web : The Rise of Intra Asian Bilateral Tie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회의 발의에 의해 투표방식을 일괄투표로 할 것인지 개별투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괄투표방식을 채택한다면 환경권에는 찬성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경우 두 분야 모두 찬성 혹은 반대 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자민당의 국민투표법 초안에는 개별투표방식이 아니라 일괄투표방식을 정하고 있었다. 연립상대인 공명당의 반대로 일괄투표방식을 포기하였으나 여전히 국회발의에 의해 일괄투표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반 국민의 비중이 41% 정도에 불과하다면 국회발의에서는 일괄투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국민들 중 9조의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집단적 자위권의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더욱 낮은 2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자민당이 개헌을 시도한다면 집단적 자위권 허용 안을 포괄적인 개헌안에 끼워 넣기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셋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 온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를 넘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지난 60년간의 일본 안보정책은 평화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헌법의 구속 속에서 몸부림 쳐온 셈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 온 ‘평화국가 일본’은 일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헌법 때문에 하지 못한 수동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적어도 이는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능동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하지 못한다’는 수동적 평화주의에 불과함을 의미한다.³⁷⁾ 탈냉전 시기, 결

37) 豊下楯彦(2007), 앞의 책.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 아베 총리 자신은 ‘적극적 평화주

프전 때의 수모를 겪은 후 일본 국내에서 진행된 안보관련 논의를 지켜 본 Katzenstein과 Berger는 전후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일본 방위정책의 원인을 반군사주의 문화에서 찾았다.³⁸⁾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해석의 변화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 반군사주의 문화는 찾아볼 수 없다.

V. 맺음말

우리는 현재 일본 정부가 택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 해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 이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 도입 경위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해석에 이르게 된 정치적 이유,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념상 현재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필요최소한도의 대응, 실력 행사 여부, 무기의 사용, 무력 사용과의 일체화 등이 그것이다. 51조의 도입 경위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헌법해석이 전후 일본

의’라 부른다.

38) Thomas U. Berger(1999), “Alliance Politics and Japan’s Postwar Culture of Antimilitarism,” in Michael J. Green and Patrick M. Cronin ed., *The U.S.-Japan Alliance :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ook ; Peter Katzenstein(1996),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의 변천과정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제3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평화적 생존권’ 논의의 생성과정은 최경옥(2008), 「일본국헌법 제9조와 평화적 생존권의 등장과 문제점」, 『공법학연구』 9권 3호, 149~175쪽 참조.

의 평화주의 속에서 정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 신조의 의도는 평화주의의 폐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과 우주병기 등을 고려하면 51조 제정 당시의 자위권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문제는 헌법 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평화주의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를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논리를 설명하였다. 첫째, 해석개헌의 방법으로 내각법제국의 헌법 해석과 의견, 각의결정, 내각총리대신지시의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둘째, 입법조치를 통한 방법으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의원제안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비우호적인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거치는 것보다는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국회의 발의가 보다 안전한 방법임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문개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96조, 즉 의원 2/3라는 헌법개정 발의 조건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가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2013년 여름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부친인 아베 신타로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그리고 그 곳 후원회 연설에서 개헌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의 2+2 안보대화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역할 확대는 미일동맹이 작동하는 한,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헛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는 단순한 안보상의 실리만으로는 기늩하기 어려운 인식의 문제와 무정부주의적인 국제정치의 속성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안보 이익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수주의적인 성향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는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하다. 이미 법제국의 저항과 공명당의 신중,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는 헌법해석 변경의 세 개의 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⁹⁾ 일본에게는 우리의 우려를 최대한 전달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만약 국제정치가 국제법과 질서가 소용이 없는 상황에 빠져든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사태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국력신장 밖에는 없을 것이다.

39) 『讀賣新聞』(2013. 9. 18).

• 참고문헌

단행본

- 鈴木英隆(2005), 『朝鮮海域に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 : その光と影—戦史研究年報 (8)』, 防衛省.
- 安倍晋三(2006), 『美しい日本へ』, 文藝春秋社.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會(2008),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會」報告書』.
- 佐瀬昌盛(2001), 『集團的自衛權』, PHP新書.
- 佐瀬昌盛(2012), 『集團的自衛權 : 新たな論争のために』, 一藝社.
- 筒井若水(1998), 『國際法辭典』, 有斐閣.
- 豊下樞彦(2007), 『集團的自衛權とは何か』, 岩波新書.
- Cronin, Patrick M. et. al.(2013), *The Emerging Asia Power Web : The Rise of Intra Asian Bilateral Tie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Green, Michael J. and Mike M. Mochizuki(1998),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 Prospects for Incremental Change*,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Katzenstein, Peter(1996),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Kurt M. Campbell, Nirav Patel, Vikram J. Singh(2008), *The Power of Balance : America in Asi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Pyle, Kenneth(1998), *The Japanese Question : Power and Purpose in a New Era*, Washington : AEI Press.
- Pyle, Kenneth(2007), *Japan Rising :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 Public Affairs Books.

논문

- 김준섭(2008),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76집.
- 유형석(2006),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배경에 관한 소고」, 『法學研究』 22집.

- 이토 나리히코 저·강동완 역(2005),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행복한 책읽기.
- 최경옥(2008), 「일본국헌법 제9조와 평화적 생존권의 등장과 문제점」, 『공법학연구』 9권 3호.
- 鈴木尊紘(2011), 「憲法第9條と集團的自衛權 : 國會答弁から集團的自衛權解析に變遷を見る」, 政治議會課憲法室 レファレンス(11月號).
- 麻生多聞(2013), 「安部内閣による憲法9條解釋變更の試みをめぐる憲法學的考察」 연구회보고서.
- 山崎拓(2002), 「このまま自衛隊に「超法規的行動」をさせるのか」, 田原總一郎 編, 『日本よ日本よ』, 小學館.
- 西川吉光(2008), 「集團的自衛權解析の再考と日本國憲法」, 『國際地域學研究』 11號.
- 植木俊哉(2006), 「低水準底強度敵對行爲と自衛權」, 『國際問題』 11號.
- 衆議院憲法調査會(2005), 「衆議院憲法調査會報告書」.
- 村瀬信也(2006), 「自衛權の新展開」, 『國際問題』 11號.
- 夏島泰裕(2006), 「自民黨文教族は妥協していない」, 『世界』 7月號.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00),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A special report fo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07), “The U.S.-Japan Alliance :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A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2012), “The U.S.-Japan Alliance :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Berger, Thomas U.(1999), “Alliance Politics and Japan’s Postwar Culture of Antimilitarism,” in Michael J. Green and Patrick M. Cronin ed., *The U.S.-Japan Alliance :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ook.

기타

自民黨(2012), 「國家安全保障基本法案(概要)」(2012. 7. 4). https://www.jimin.jp/policy/policy_topics/117613.html

井上正信(2013), 「憲法9條の立法壞憲=國家安全保障基本法案」. <http://www.jicl.jp/hitokoto/backnumber/20130225.html>

『毎日新聞(2013. 8. 8)』, <http://mainichi.jp/select/news/20130808k0000e010188000c.html>

Modabber, Zia(1988), “Collective Self-Defense : Nicaragua v. United State,” 10 Loy. L.A. Int'l&Comp. L. Rev. 449. <http://digitalcommons.lmu.edu/ilr/vol10/iss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몇 가지 시론을 곁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 I. 머리말
II.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필요성
III. '화해'의 정의
IV. 한일 양국 역사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 :
'왜구'와 '조선총독부' 용어의 검토
V. 몇 가지 역사갈등 해소,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방안
VI. 맺음말 - 결론에 대신하여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몇 가지 시론을 곁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I. 머리말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교과서문제, 역사 인식 관련 발언,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일각에서의 우경화 동향과 역사인식의 퇴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베 정권의 일부 각료와 다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집단 참배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일련의 민족주의 정서 자극 및 역사 퇴행적 동향과 제책동[諸策動],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내각 수반과 고위 관료, 국회의원, 다수 우익인사들의 언행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 구미지역의 정치인들과 언론 등도 일본에 대해 깊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게 하고 있다.

2013년 10월 17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하였고, 18일에는 일본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등 159명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세윤(張世胤)

한국근대사·근현대 한중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공저, 2000, 역사비평사),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2005, 명지사), 『개화기와 대한제국』(공저, 2012, 눈빛출판사),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공저, 2012, Peter Lang), 『韓日強制併合 100年—歴史と課題』(공저, 2013, 明石書店) 등이 있다.

달하는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였다. 추계제사 참여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 날 참배한 일본 의원들은 ‘다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치인들이 더욱 늘어나며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올해 가을 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임기중 이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지난 12월 26일 현직 일본 총리로는 7년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큰 파란을 일으켰다.¹⁾ 이러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한국과 중국 등 이웃은 물론, 미국 등 구미권 국가들의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몰지각한 일본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태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일, 중일 사이에는 전에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일 양국의 역사갈등 해소와 ‘역사화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가 먼저 ‘역사화해’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가해자 혹은 먼저 뺨을 때린 사람에게 피해자, 혹은 뺨을 얻어맞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도(동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정말 안타깝고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학계, 국민) 사이에는 오랫동안 인식의 차이와 그를 둘러싼

1) 2013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는 「한국인 가슴에 못을 박다-아베, 야스쿠니신사 전격 참배」라고 1면에 대서특필하였고, 같은 날짜 중앙일보 역시 「아베의 도발 ... 한·일관계 벼랑에 서다」라고 보도하였다.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다.²⁾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한일 두 나라는 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소론에서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역사화해’의 모색 필요성과 그 방안을 간단히 논해보고자 한다.

II.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필요성

한일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직 소원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문화적으로는 매우 긴밀한 협력과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에 양국 국민의 왕래는 5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독도 및 역사문제 등의 영향, 특히 일본 엔저(円低)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격감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조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본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정치·군사·안보 분야 등에서도 향후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여하튼 한일 양국 국민들은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불안정하고 불화(不和)한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한 ‘선린(善隣)’으로 거듭나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탁상공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양국의 과거사문제 해결의 모색은 필요하며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5월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야기[宮城] 현 히가시마츠시마[東松島]에 있는

2) 한일 간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에 대해서는 정재정(2007),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화해와 상생의 역사인식을 향하여」, 『사학연구』 88호 참조.

항공자위대를 방문해 ‘73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쓰인 곡예비행단 연습기의 조종석에 앉아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한 바 있다. 이 사진을 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기에 찍힌 ‘731’이라는 숫자는 과거 생체실험으로 크게 악명을 떨쳤던 일본 관동군 산하 세균 부대의 부대번호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 하얼빈 시 외곽에 있는 구 731부대 관련 유적과 전시관을 몇 차례 가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 없다. 현재 731부대에서 사람이 아닌 ‘마루타(丸太, 통나무)’로 분류돼 생체실험 등으로 희생된 중국·몽골·소련(현 러시아)·한국·구미(歐美) 사람은 대략 3,000여 명, 많게는 8,000여 명으로 파악된다.³⁾ 그런데 신원이 파악된 한국인은 10여 명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한국인은 6명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 중국에서 공개한 731부대 관련 자료에서 한국인 4명의 신원이 파악돼 우리의 이목을 끌었다.⁴⁾ 1939년 6월 하얼빈의 향방(香坊) 부근에서 25명의 한인·중국인 항일운동가들이 체포돼 독극물 주사 주입으로 피살됐다는 기록도 있다.⁵⁾

731부대 전시관에는 참혹한 생체실험을 저지른 일본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또 당시 실험에 관여했던 일본군 병사가 과거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의 글도 전시돼 있다. 그중에는 당시 731부대에서 제작한 생화학무기를 일본군이 항공기로 중국 등지에 살포하는 장면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까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731부대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일본군의 동학군과 의병 학살, 1919년 3·1운동 탄압, 1920년 중국 연변지역에서 일

3) 金成民(2008), 『日本軍細菌戰』, 黑龍江人民出版社, 574쪽.

4) 『조선일보』(2005. 8. 3).

5) 韓曉·辛培林(1991), 『日軍七三一部隊罪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207쪽.

어킨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피살, 1930년대 중국 동북지방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수많은 한국인 피살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중국 역시 1894~1895년의 청일전쟁과 1931년의 만주사변(9·18사변), 1937년 일본의 중일전쟁 도발과 남경대학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많은 한·중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참혹한 생활을 했으며 남성도 강제징용돼 전쟁터로 끌려갔다.

과거 침략전쟁의 처참한 피해를 입은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아베 신조 총리의 행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의 피해국은 근현대 시기 일제의 침략과 만행 관련 자료의 공동 조사와 연구, 활용 등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와 망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 채록, 일본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피해조사 등의 공동연구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⁶⁾

2013년 7월 27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아 순방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불협화음을 겪었으므로 이제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이 말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7월 29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겸 재무상은 과거 독일 나치정권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리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일자 결국 자신의 발언을

6) 장세운, 「아베총리,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가」, 『세계일보』(2013. 5. 25).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같은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열렸던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한국 응원단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특히 “만약 이것이 일본 내에서 있었다면 다른 서포터가 말리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⁷⁾ 그러나 그는 일본 응원단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옥일승천기를 내걸고 휘두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듯 일본 각료의 신중치 못한 언동과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을 더욱 고립시키며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하게 연구·교류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⁸⁾

필자는 2013년 7월 말 일본 도쿄의 주요 박물관·기념관, 야스쿠니신사, 관동대지진 희생자기념비 등을 둘러보았다. 도쿄국립박물관이나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등은 유물과 설명문 등으로 한일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시,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의 한국이나 아시아 관련 전시 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립시설인 쇼와관(昭和館)이나 쇼케이관(承繼館, 전상병자사료관) 등은 일본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국립기관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확산하

7) 『아사히신문』(2013. 7. 30).

8) 장세운, 「일본 각료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보며」, 『세계일보』(2013. 8. 2).

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주요 시설의 한국 등 아시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3년 10월 18일 일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다수의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날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오전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기테라 마사토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 등 아시아국가 인민들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이라며 류 부부장이 기테라 대사에게 ‘강력한 불만과 비난’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⁹⁾

화 대변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침략과 식민통치 역사를 엄격하게 반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중국 등 아시아 피해 국가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다”며 “(이는) 중일 관계 정치 기초의 중대한 원칙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내각 성원들이 공연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본은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실제행동을 취할 것을 엄숙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며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본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기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

9) 『경향신문』(2013. 10. 19).

다”고 덧붙였다.¹⁰⁾ 중국 역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실제로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광무황제(고종)의 칙령 제 41호로 독도(당시 명칭은 석도)를 울릉군 행정구역에 편입하였다. 이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에서 독도를 이른바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보다 4년 4개월이나 빠른 행정조치다.¹¹⁾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단체는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은 2천여 명에 달하는 김좌진·홍범도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중국 연변의 청산리 일대에서 5천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 정규군을 매복 공격하여 격파한 ‘청산리전투’를 수행했던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날이 한국인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3년 10월 9일 한글날부터 11일까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를 탐방하였다.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타며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고, 배멀미와 구토 등으로 힘든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울릉도·독도를 찾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잠깐 머물다 돌아와야 하는 독도에 간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이웃국가의 고통과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경솔한 행동, 독도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국인들의 독도사랑과 애국심, 내셔널리즘은 더욱 고양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

10) 「中, 日 각료·의원 야스쿠니 참배 성토 …… 日대사 초치」, 『연합뉴스』(2013. 10. 18).
11) 한일관계사학회(2008), 『독도는 한국땅이다』, 8쪽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2006), *Dokdo*, p. 26.

그런 점에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는 일본 정치인들의 ‘통 큰 결단’이 아니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0월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제기한 질문의 답변에서 지난 4월의 침략의 정의에 대한 부정과 무라야마(村山)담화의 수정을 밝혔던 것과 달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²⁾ 하지만 그의 본심이 과연 그와 같을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소 언동이 증명하고 있다.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와 정부, 일본 국민이 가해자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러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화해가 이룩되며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을 것으로 믿는다.

III. ‘화해’의 정의

우리 국어사전은 ‘화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다툼을 그치고 서로 이해하는 것
- ② 소송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하는 계약¹³⁾

12) 『마이치니신문』(2013. 10. 19).
1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075쪽.

- ① 다툼을 멈추고 서로의 나쁜 감정을 풀어 없앴
- ② 법률에서,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일을 이르는 말. 계약으로 효력이 생긴¹⁴⁾

물론 법률적 차원에서의 개념규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해’는 양자 간에 서로 대등하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분쟁이나 다툼을 멈추고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 간의 ‘역사화해’는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의 선제적인(?) 양보나 타협,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과연 일본 정부나 상당수 일본 우익계 인사들은 이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화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먼저 일본 측에 역사갈등의 해소나 ‘역사화해’를 운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해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려 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소 위로가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일본사회가 비교적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사회가 모두 ‘우익’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일본에 대해 ‘화해’와 역사갈등의 해소를 제기하고 그들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포용심을 갖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는 일본인들이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최근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문제인가? 첫째,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헌법에 명기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

14) 유목상 감수(2009), 『교학 한국어사전』, 교학사, 2312쪽.

에 저촉된다. 야스쿠니신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개 종교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야스쿠니는 일본 고유의 ‘신도’를 숭상하는 종교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이 신사에는 잘 알려진대로 전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처벌된 14명이 합사되어 있다.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엄청난 전쟁피해를 준 핵심적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주로 이들 14명이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러나 B·C급 전범, 그리고 1875년 운요호 사건 등 근대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일본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합사되어 있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어 문제라는 점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곳에는 전쟁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희생자 2만 1천여 명이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단 합사되어 ‘전쟁의 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신사 당국은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철회 요구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오만한 행동에 대하여 한국 외교부 당국은 10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기초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짙막한 논평을 발표하였다.¹⁶⁾ 한편 중국 외교부 당국 역시 18일에 즉시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였다.

15) 『靖國神社』(2013), 안내 팸플릿; 靖國神社(2011), 『遊就館圖錄』 참조.

16)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보도자료」(제13-719호)(2013년 10월 21일 검색).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태는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양 국민들의 화해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이웃국가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한일 양국 역사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 - ‘왜구’와 ‘조선총독부’ 용어의 검토

1. 왜구에 대한 정의

먼저 한국에서 발간된 역사사전과 국어사전의 용례를 찾아보자.

- 고려 중기 이후 이조(李朝) 초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을 무대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해치고 또 약탈하던 일본의 해적¹⁷⁾
- (옛날에) 일본의 해적(『연세 한국어사전』, 1357쪽)
- 지난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안을 노략질하는 일본인 해적을 이르던 말(『교학 한국어사전』, 1526쪽)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구’는 왜인(옛 시기 일본인을 가리키는 별칭)들로 이루어진 해적 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저명한 대표 사전의 용례를 찾아보기로 한다.

원의(原意)는 왜인(倭人)에 의한 약탈행위. 중국대륙·조선반도의 문자사료

17) 이흥직 편(1987), 『증보 새 국사사전』, 교학사, 852쪽.

가운데 옛부터 쓰여진 용어. 가장 중대한 왜구의 활동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초에 걸친 것으로 구성원은 대마(對馬)·일기(壹岐)·북부 구주(九州)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화척(禾尺)·재인(才人)으로 불리는 조선반도의 천민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근년에는 제주도민도 주목되게 되었다. 또 하나는 16세기 초부터 중반에 걸친 것으로 구성원은 (중국) 절강성(浙江省)·복건성(福建省)의 부호층에 의해 조직된 무장 상인단이 중핵(中核)이 되고, 북부 구주(九州)를 중심으로 하는 서일본 각지의 사람들이 무장세력으로서 참가하고 있다.¹⁸⁾

조선반도·중국대륙·남방 제지역(諸地域)의 연안이나 내륙에서 행동한 구적(寇賊) 집단에 대하여 조선인·중국인이 부른 호칭. 14~15세기의 왜구 : 이 시기 왜구의 구성원에는 ① 일본인만의 경우 ② 일본인과 고려인·조선인과의 연합 ③ 고려·조선인만의 경우가 고찰된다.¹⁹⁾

이처럼 일본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왜구가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혹은 고려인)과 중국인 등이 포함된 혼합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학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을까? 다행히 지난 1·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왜구’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²⁰⁾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 학계가 임나일본학설이나 왜구에 대해 한국 학계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18) 永原慶二 監修(1999), 『岩波 日本史辭典』, 岩波書店, 1214쪽.

19) 田中健夫·石井正敏 編(2009), 『對外關係史辭典』, 吉川弘文館, 832쪽.

20) 상세한 내용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1권)』(2005)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1권)』(2010) 참조.

2.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 사전(관찬)의 사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판 일본외교사사전』은 조선총독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통치 35년간을 4시기로 나누어 보면, 제1기는 헌병제에 의한 치안유지와 산업의 기초적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제2기는 3·1운동에 직면하여 관제를 개혁하여 헌병제를 경찰제로 바꾸고 '문화정치'·'내선융화(內鮮融和)'를 표방하며,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제3기는 만주국 건국부터 일중전쟁(日中戰爭) 발발 전의 시기에 해당하며 농산어촌(農山漁村) 진흥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근대산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제4기는 일중전쟁부터 태평양전쟁에 접어들어 조선에 물심양면으로 대륙병참 기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 '내선일체'·'황민화(皇民化)'의 슬로건 아래 전쟁협력을 강하게 구하고, 1945년에 이르러 일본 본토 결전의 일환으로서 의 결전체제가 요청되었다. 일본통치를 일관하여 민족독립을 시인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하였으나, 민족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다.²¹⁾(밑줄은 필자)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총독부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게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켰던가? 그리고 '전쟁협력을 구하고, 결전체제를 요청'했던가?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위의 내용은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 또는 '식민지통치 미화론'에 입각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서술을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진지하게 그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21)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1992), 『新版 日本外交史辭典』, 山川出版社, 604쪽.

V. 몇 가지 역사갈등 해소,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방안

1.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 및 쟁점 분야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등장하고 우경화 경향이 가속화함에 따라 한일 간의 역사현안과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해졌다. 한일 양국 관련 역사현안 내용파악 및 분석을 통해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양국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체계적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이른바 '신공황후 삼한정벌론')
- ② 전통적 '조선(인)' 인식의 문제-일본의 변속국(혹은 조공국)?
- ③ 왜구와 임진왜란
- ④ 독도 및 동해 표기 문제
- ⑤ 일본군 '위안부' 문제
- ⑥ 일본 교과서 문제
- ⑦ 조선인(한인) 강제동원 문제
- ⑧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 문제-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 1905년 을사5조약 및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 문제 등을 포함
- ⑨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무단 합사 문제
- ⑩ 관동 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2013년 9월 1일은 90주기)

- ⑪ 사할린 동포 문제
- ⑫ 제일 조선인(한인) 차별문제
- ⑬ 1965년 한일조약시 한일청구권 개인청구권 문제 등

이들 쟁점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교육, 일본 측과의 공동연구, 인식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2. 몇 가지 검토 방안

이웃나라와는 기본적으로 잘 지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25일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 행위 부정 등 ‘망언’에 대한 대응은 즉흥적인 단발성 대응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폴란드와 같은 사례의 역사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나 공조 체제의 모색, 협력관계 형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초중고 교육이 대학입시 제도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고, 그러한 구조하에서 역사교육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최근 고교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싫증을 내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 필자가 검토해본 방안 몇 가지를 나열해 보고자 한다.

- ① 동북아 역사화해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 실현
 - 관련 자료의 체계적 조사, 수집과 정리, 건실한 연구와 성과 산출, 보

급·홍보

- 국내외 유관기관, 학계·교육계·언론, 시민과 학생, 시민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사화해’ 연구 및 교류 체계 확립

- ②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 노력 강화
 - 한국 학계의 연구심화 및 연구성과 국제 확산·홍보
 - 주요 쟁점 관련 저명 국제저널 게재 및 단행본 발간·보급
- ③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구미 저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일본 학계와의 교류 확대, 일본 관료 및 우익인사 압박
 - 일본 학계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성과 일본·한국 동시 발간
 -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등과의 학문적 소통·협력 강화
- ④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 연대세력 구축 및 협조 확보
 - 한일 역사관련 시민단체(NGO, NPO),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및 연대 강화
 - 한일 양국 시민·학생 교류 및 연대 강화 :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등에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유효하다는 논리도 필요
 - 국내외 언론매체 통한 일본 우익세력 비판과 압박
 - ‘한중일 3국 협력포럼’ 등 일정 수준의 협의기구 구상, 실현
- ⑤ 현실은 요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연구 및 기반 조성
 - 동아시아사 연구 등 미래지향적, 상생적 학문 체계 구축
 -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모색 및 국제 역사교육 교류와 협력
 - 한일,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 개발·보급²²⁾
- ⑥ 우수 도서, 교양서, 홍보소책자 발간 및 번역 발간, 외국어도서 현지 발

간·보급²³⁾

- 한국의 주요 저작 외국어 번역 해외 출간, 보급 확산
- 우리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자료, 교양서의 개발 및 보급

- ⑦ 우호적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국제 학술행사 개최
 -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의 체계화·정례화
- ⑧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및 교과서 개정동향 파악
 - 일본 역사·사회(공민)·지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및 개정(개약) 내용 파악, 필요시 시정 요청(요구)
- ⑨ 일본 정부의 동향 파악과 대응
 -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교과서 수정내용 파악 및 우익교과서 채택 동향 파악
 -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 한국 관련 내용 파악과 대응
- ⑩ 역사교육 강화와 국제적 공감대 형성방안 및 국제공조 지속 추진

- 한일 양국의 교과서 집필자 회의 등 모색 추진
- 우리(한일 양국) 국민·학생·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 동아시아사, 역사교육의 질적 심화 및 강화

- ⑪ 역사교육 교류·협력 강화 및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 주요 신문·잡지·방송, 기타 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 기고·출연·발신 등 지속 추진
 -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
- ⑫ 지속적 자료 수집과 연구, 한일관계 전문 연구인력 양성
- ⑬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공동연구 추진,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식민지통치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공동연구 추진, 성과물 발간
 - 학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한국인의 대응(독립운동 등)을 분명히 밝히는 연구작업 긴요
 - 북한 포함 한중일 3국 등과 역사인식 공유 프로젝트 도모²⁴⁾

22) 동북아 공동역사교재 발간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현, 「동북아 공동역사교재 발간의 필요성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4년 1월호(통권 86호) 참조.

23) 동북아역사재단 홍보용 소책자 발간·보급의 사례 : 영문 핸드북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문소책자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2007년에 발간·배포하였다. 영문 핸드북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의 발간은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제 사회에 알려 공감대를 넓히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사죄와 보상, 그리고 후속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전 미 하원의 결의안 통과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임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 하원 결의안의 상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구미권의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홍보 소책자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본다.

3.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검토

현재의 냉각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1·2기의 활동을 간략히 개관하고 3기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4) 이상의 여러 가지 방안은 동북아역사재단(2012), 『동북아역사재단 6년의 활동과 지향-갈등을 넘어 화해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제1·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의 성과와 한계

①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

- 양국 역사학자가 해방 후 처음으로 정부 공식기구를 통해 한일 역사 쟁점사항 공동해결을 위한 노력 전개
-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 역사인식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 토론, 상당한 성과 거둠
- 양국 최종 보고서의 발간(2005. 6. 10) 및 인터넷 공개(2005. 6. 1)
 - 향후 역사교과서 집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제시

②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한계

- 한일 역사쟁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논의 전개
- 교과서 관련 공동연구 시동
 - 교과서위원회가 신설되어 정부 차원에서 양국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찬제도 등 교과서 관련 공동연구 처음 수행
- 한일관계사 연구기반 확대에 기여
 - 양국 간 쟁점사항에 관한 협력연구에 66명의 역사학자가 참여하여 소주제 연구 등 자체연구 추진, 향후 한일 관계사 연구기반 구축
- 양국 학자 간 상당한 의견차 존재, 연구성과 교육 반영 미흡, 3기 구성 전망 불투명 등 한계도 드러냄²⁵⁾

나. 제1~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룬 주제

-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02. 5~2005. 5)에서 다룬 주제

① 제1분과(고대사) : 4·5·6세기의 한일관계

② 제2분과(중근세사) : 위사(僞使)·임진왜란(壬辰倭亂)·통신사(通信使)

③ 제3분과(근현대사)

- 한일간의 제 조약
-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 청일전쟁-러일전쟁기의 한일관계
- 조선주둔 일본군의 실태(1876~1945)
-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과 한민족의 대응
- 식민지기, 문화와 사회의 변용(變容)
- 전시체제기 국가총동원 체제와 그 실상
- 식민지 ‘개발론(開發論)’과 ‘수탈론(收奪論)’
- 한일회담과 한일조약
- 1945년 이후 조일관계
- 1945년 이후 한일 간 경제관계의 전개
- 근현대 한일 간의 상호인식
- 근현대 한일관계 연구사²⁶⁾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07. 6~2009. 12)에서 다룬 주제

① 제1분과(고대사)

-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25) 김정현(2010), 「중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와 한국사 서술의 문제점」, 『동북아 역사 문예』 36호, 동북아역사재단.

26)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05),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의 「전체보고서 목차」 참조.

•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재편과 한일관계

② 제2분과(중근세사)

-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海域)세계와 한일관계-왜구(倭寇) 구성문제 포함
-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국제관계와 원인문제 포함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통신사와 왜관의 의미 포함

③ 제3분과(근현대사)-10개 주제

-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주권과 독립/권력과 국민
- 일제식민지시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근대화/전시체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경제/외교/대중문화
- 여성과 사람의 이동(가칭)-사람의 이동의 한일 상호비교
 -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 상호비교

④ 교과서위원회

- 교과서의 근대·근대성 1, 2
-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역사교과서문제의 사적 전개
-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전쟁
-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법질서와 국가
-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민족·민족운동²⁷⁾

27)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10),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의 「전체보고서 목차」 참조.

다.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

① 한일 역사 교과서 연구·협력 관련 지속적 지원 필요

- 공통된 역사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연속적·지속적 연구 필요.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는 70년 이상(1935년 시작, 2008년 공동 역사교과서 간행), 독일·폴란드는 30년 이상(1972년 시작, 2011년 공동역사교과서 간행)의 오랜 역사 대화 경험을 갖고 있음.

② 국가 차원의 한일 역사교과서 공동연구 기구 운영 통해 한일관계 악화 방지 필요-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해소가 시급한 상황

③ 교과서 기술과의 연계성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연구성과의 교육 연계 필요 : 초·중·고(대학)별 공동교재 혹은 공동부교재 발간, 활용 필요

④ 향후 전망 및 실현 방안

-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 제안 필요
- 대정부 건의 및 협력 요청 필요 : 최근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새로운 계기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추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시 한국 측에서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또는 가칭 '동북아 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안, 동북아 역사 현안 해결 과정의 돌파구 마련 필요²⁸⁾

28) '동북아(한·중·일, 또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필요성

- ① 한·중·일 사이의 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 중 하나가 과거 역사에 대한 각국의 주관적 해석과 왜곡이므로 역사갈등 사안 등을 포괄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②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동

4.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문제점과 일본 NGO의 활동사례

2013년 7월 말 필자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야스쿠니신사 및 부속건물인 유슈칸(遊就館) 등을 둘러보았으며, 일본 학자와 시민단체 관련인사들을 면담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재일한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고, WAM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반면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인들의 합사 철폐 요구에도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어 문제인데, 유슈칸의 설명문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재일민단이 후원하고 강덕상 시가현립대학(滋賀縣立大學) 명예교수가 주도하여 세운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10여 년의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 2005년 11월 개관하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100여 년의 역사가 넘는 재일한인 관련 자료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전시·연구·보존하고 있었다. 사라져가는 재일한인 자료의 수집·전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곳에는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관련 자료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와세다대학 근처에 있는 WAM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2005년 8월 개관한 순수 민간단체로 많은 여성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회비와 자발적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우익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관련 전시와 세미나·심포지움 개최, 조사 출판, 자료 수집과 열람, 여러 연대행동 등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케다 에리코(池田惠理子)

아시아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국의 역사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위원회' 설치 필요.

③ 아직은 요원하지만,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공동체 추진의 첫 기초단계로, 개별 국가의 역사를 넘어선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역사 모색 절실.

관장과의 대담을 통해 현재 일본 위안부 관련 NGO운동의 현황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 단체와 긴밀한 연계, 협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⁹⁾

또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와 그 부속 군사박물관인 유슈칸, 그리고 치도리가후치(千鳥が淵) 전몰자묘원(墓苑), 쇼와관과 쇼케이관을 방문하였다. 오전 일찍 찾아간 야스쿠니신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단체 관람객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대로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고, 일본의 전쟁에 동원된 2만 1천여 명의 한국인도 합사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한국인 유족들의 한국인 합사 철폐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군사박물관 유슈칸의 전시내용은 큰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슈칸의 출구 부분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각국 독립' 부분 전시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일로(日露)전쟁의 승리는, 세계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독립의 꿈을 주고, 많은 선각자가 독립, 근대화의 모범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다. ……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현실로 된 것은 대동아전쟁 서전(緒戰)의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권력 타도 후였다. 일본군 점령하에서 한 번 타오른 불꽃은 일본이 패해도 꺼진 것이 아니라, 독립전쟁 등을 거쳐 민족국가가 차차 탄생했다.³⁰⁾

29) 장세운(2013), 「뜨거웠던 도시만큼 뜨거웠던 역사현장 탐방」,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통권 82호), 18쪽.

30) 『遊就館圖録』(2011), 107쪽. 유슈칸의 한국관련 전시내용은 장세운(2008), 「일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한국관련 전시내용의 검토」, 『한국근현대사 연구』 4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조.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강점한 뒤 온갖 억압과 수탈, 동원을 자행한 실상은 외면하고 역사적 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자아도취적이며 왜곡된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중심부에 있는 쇼와관이나 쇼케이관 등의 박물관 역시 태평양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일본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대표적 역사관련 국립기관이 오도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주요 전시관과 박물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7월 29일에 관동대지진(일본에서는 '관동대진재'라고 함) 때 학살된 한인들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추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선생을 만났다.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대에서 일어났던 관동대지진으로 희생된 일본인들을 위령하는 시설인 도쿄도 위령당에서 만났는데, 그곳에 '조선인' 추도비도 세워졌기 때문이다.

니시자키 선생은 자택 옆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성금을 모아 추도비를 건립하고 직접 관리하며, 관동대지진시 희생된 조선인들을 조사·연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법인 봉선화 : 관동대진재(震災)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추도회를 주도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다. 이 일에 투신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학생 때 재일동포를 친구로 알게 되면서 재일한인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네 바로 앞 하천변에 학살된 한인들이 묻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살된 한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³¹⁾

근래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며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일본에는 양심적인 시민이나 시민단체, 학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와는 별개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언론, 교육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맺음말-결론에 대신하여

이빨 드러내는 재일(在日) 공격

- 3월의 오후 도쿄 한류의 거리인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회(재특회)'의 거리 행진이 열림. 행진자들은 '재일 한국인들을 대포동에 묶어서 한국에 발사합시다' 등 격렬한 구호를 외침
- 2006년 말에 결성돼 1만 2천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는 재특회의 시위에 '재특회는 돌아가라'를 외치는 일단도 있음. 한류의 거리 신오쿠보에서 2월 말 이후 반복되고 있는 광경
- 나무누시(가명)는 몇 년 전 재특회에 가입했다가 최근 '결별선언'을 함. 아베 정권 탄생 이후 재특회의 구호가 더욱 격렬해지면서 '죽여라, 바퀴벌레'라고 말하는 시위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
- 고민 끝에 결별을 선언하자 '너는 재일(在日) 인정자, 죽어라'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무서움을 느꼈다고 증언³²⁾

위의 기사는 이른바 '재일특권(在日特權)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회(약칭 자이토쿠카이, 在特會)'에 참가했다가 이 단체의 광기어린 행동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탈퇴한 한 회원의 고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1) 장세운(2013), 앞의 글, 19쪽.

32) 『아사히신문』(2013. 4. 28), 39면, 시리즈 이시바시 도쿄발(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자료).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말 역사인식의 격차를 극복하고 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악화되고 험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한국 국민과 학계, 교육계, 언론 등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일본 정부와 일본 일각의 극우세력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역사화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각계, 일본 국민들의 상대방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일부 정치지도자들, 나아가 일본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학계 및 교육계의 충실한 연구와 성과의 국제적 확산, 내실있는 역사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역사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 등의 여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칭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³⁾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근래 일본 일각에서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 시민, 시민단체도 존재한다. 때문에 일부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은 물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양심적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

색관계를 해소하고 추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사 화해를 위해 가칭 ‘동북아(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또는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의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공동 역사교과서’의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이웃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경솔한 행동, 독도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국인들의 독도사랑과 애국심, 반일감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는 궁극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양심적 결단’이 아니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2010년 7월 발표된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의 취지를 상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2013년 10월 19일 일본 지바(千葉) 현에서 열린 ‘한류 10주년 대상(大賞)’ 시상식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한류’ 열풍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행사였다.³⁴⁾ 따라서 경제·문화교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유의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과거사, 특히 근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소중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이 당장에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며, 양국의 역사를 차분히 올바른 내용으로 제대로, 충분히 가르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33) 재일학자 尹健次 교수는 한일역사 공동연구나 일본 정부 비판 등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신철(2007),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 선인, 121~136쪽 참조.

34) 『국민일보』(2013. 10. 29) ; 『조선닷컴』(2013. 10. 21).

【참고자료】

최근 일본 수뇌부의 언동에 대한 몇몇 외국 언론의
비판적(혹은 옹호) 논조¹⁾

1. 4월 26일자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

■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발언 …… 미국, 우려의 뜻 전달

일미 외교소식통은 25일, 역사인식을 둘러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발언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동아시아 정세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교 연락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벤트렐 미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적인 항의’가 아니라면서 “중국과 한국처럼 다른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각국 사이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지역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앞으로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혀 한중을 자극하지 않도록 아베 정권 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오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외교·정치 문제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역사가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 당국자가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역사문제

1) 이하 해외 언론 기사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자료를 이용하였다.

와 관련한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침략’의 정의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과 더불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각료들이 참배에 나선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일제강점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 각료는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 일본 『교도통신』, 4. 26, 인터넷판, 12 : 10, 워싱턴발

■ 일본 중의원의장, 아베 신조 야스쿠니 발언 옹호 “나도 공물 봉납”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의장은 25일, 자민당 니카이(二階)파 총회에서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비판에 반론했던 아베 신조 총리를 옹호했다. 총리가 국회에서, 중국은 A급 전범을 합사할 때 항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한 답변이다. 사실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수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야스쿠니신사에 ‘마사카키(真榊)’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표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에 관해 언급하며 “한중 양국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고노 씨도 중의원 의장 당시 봉납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 일본 『교도통신』, 4. 26, 인터넷판, 10 : 25, 일본발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야스쿠니 문제, 외교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답변에 중국,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씨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에 대해 “담화는 그때의 총리가 발표하고 있다. 아베 내각으로서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담화를 절목인(전후) 70주년에는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의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역사인식 문제는 전문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내가 정치가로서 신과 같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침략의)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거듭해 나타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26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외카바야시 겐타(若林健太) 외무정무관이 23일에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집단참배에 참가했던 것에 대해 “사인(私人)으로서,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참배했다”고 말했다.

외카바야시 겐타 씨는 23일자의 블로그에서 “나는 당선 이후 이 의원연맹의 요청에 의해 봄, 가을의 예대제에 맞춘 참배를 빠뜨렸던 적이 없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에 경의와 감사를 잊으면 일본을 되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일본 『아사히신문』, 4. 26, 석간, 2면 2단, 일본發

2. 일본 ‘우경화’에 대한 논평과 분석

■ 아베 신조의 역사 직시 능력 부재

- 아베 신조 총리는 빈사상태 경제를 개혁하고, 당내 강력한 이익단체 반대에 불구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회) 참여를 결정. 또한 일면 타당한 국방비 지출 의향도 신중하게 제기하는 등 우경화 충동을 잘 억눌러 왔지만, 이번 주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발언으로 이 모든 것을 위협에 처하게 하려 하는 듯.
- 한국과 중국 정부가 격분하고 있고, 이는 이해할 만한 반응. 역사는 늘 재해석 되어왔지만, 엄연히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 일본은 한반도, 만주와 중국, 말레이반도를 침공했고 침략을 저지른 것은 역사적 사실.
- 독일은 수십 년 전에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유럽에서 위상을 높고히 했지만, 일본의 일부 세력에게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왜일까?
- 한국과, 특히 중국의 경우 더욱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때때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주에 저지른 자기파괴적 수정주의 사관의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음.
-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 부재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적 태도를 감안할 때 타당한 목표로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일본 군사력 현대화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 평화헌법이 미국 등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질문 제기는 타당한 것.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향수를 품고 있다면,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회의적 시각

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개혁 추진 능력은 물론, 의구심을 가진 이웃국가들을 안도시킬 능력도 곤두박질칠 것임.

- Shinzo Abe's inability to face history /
美 Washington Post, 4. 27, 사설

■누군가에게 침략은 ……

- 누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나 하는 문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냐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그러나 유독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아베 총리만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적 상대주의의 시도는 진주만 공습과,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희생자를 낸 ‘바탄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 중국에서 자행된 난징(南京)대학살 생존자들에게는 금시초문의 주장으로 들릴 것. 대부분의 세계는 일본의 전시 만행을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기 때문
- 또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이 일본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동맹이지만, 아베의 수치스런 발언은 일본에게 더 이상 친구가 없도록 만들 것임.

- One man's invasion is …… /
美 Wall Street Journal, 4. 27, 사설

■아베 신조 총리는 위험한 초점 분산 유혹 거부해야

-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후 4달이 되기까지 마찰의 소지가 있는 역사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것을 피하고 야스쿠니 참배도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면서 이같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음.
- 아베 내각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발을 초래. 심지어 동맹 미국도 아베 총리가 이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임.
- 아베 신조 총리는 불쾌한 면이 없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전물자를 추모하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님. 문제는 야스쿠니에서의 추모가 잘못됐다는 것임. 아베 신조 총리는 우파라는 점을 적극 이용해, 논란의 소지가 덜한 세속적인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
- 그러나 무엇보다 아베 신조 총리는 현재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상황. 경제 회복을 위해 대담한 아베노믹스(Abenomics) 실험을 추진 중. 그러나 이 실험은 매우 위험하며, 엔저(円低)를 용인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의 선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사회 공감을 잃는다면 이같은 실험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아울러 아베 총리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도 추진해야 할 것. 역사 수정주의 시도는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험한 것일 수도.

- Shinzo Abe must resist dangerous distraction /
英 Financial Times, 4. 29, 사설

■ 정직하지 못한 아베 신조

- 일본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응수. 아베 신조 총리는 수정주의 사관을 가르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듯함.
- 당연히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했는지,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는지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침략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의와는 다를 것.
- 또한 난징학살에 대해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중국, ‘바탄 죽음의 행진’을 기억하는 필리핀에게도 (침략의 정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생각과 다를 것.
- 이같은 역사를 둘러싼 소동은 일본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 그 타이밍은 특히 적절치 않음.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은 분명 적절치 않은 것임.
-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는 대북공조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점에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조성하는 것.
-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신조의 발언은 우익세력에게는 잘 먹히겠지만, 다른 일본인들은 훨씬 우려하는 상황.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개정에서 지지를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높이는 것.
- 이는 또한 아시아가 워싱턴에 주고 있는 골칫거리를 더 악화시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북한이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워싱턴에게 도움이 되는 것. 따라서 아베 총리의 잘못된 역사관은 심

각한 리스크를 제기하는 것임.

- Dishonest Abe /

美 Wall Street Journal, 4. 27, Joseph Sternberg 논평

■ 아베 신조 우경화에 우려하는 일본 주변국들

- 개혁주의자 아베 신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동주의자 아베 신조가 될 것인가? 집권 4개월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신뢰’를 안겨줌으로써 어두운 극우주의 전력을 잊게 만들었음. 그러나 지난 주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고, 침략의 정의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발언으로 극우주의 우려를 다시 불거지게 함.
- 아베 신조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한과 중국 등 일본에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의 분노를 자극. 한국은 외교장관 방일을 취소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 일본 침략행위의 부정이라고 비판.
- 아베 신조 총리는 또한 헌법개정을 위해 먼저 헌법개정 절차 간소화를 모색. 이후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려 함.

- Le nationalisme de Shinzo Abe inquiète les voisins de Japon /

佛 Le Figaro, 4. 27, 6면, Régis Arnaud 분석, 도쿄발

■ 한일, 마주보고 신뢰를 구축하라

- 지난해 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시지프스 신화의 예를 들면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조언.

허무한 신화를 끝내기 위해 한일은 신뢰의 재구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은 방 일을 직전에 취소. 한일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이었던 만큼 지극히 안타까운 일임. 한국 측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만큼, 아소 부총리의 참배는 전략성이나 외교감각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에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음. 박근혜 대통령 부친은 국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킨 바 있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때문에 ‘매국노’라고 평가되기도 해, 박 대통령은 대일 외교를 신중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함.
- 하지만 박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관계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신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시키는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서로 마주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해왔음을 주목함.

- 日 『아사히신문』, 4. 28, 사설

- 미 고위 인사는 타이밍이 적절치 못한 것을 지적. 아소 다로 부총리가 방미, 귀국 직후 참배한 것에 특히 우려를 표명

- 日 『닛케이신문』, 4. 29, 2면 2단, 워싱턴발

■ 국수주의 총동 자제하지 않는 日 총리

- 취임 4달 만에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성향, 그리고 주변국들과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음.
- 도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이오 준(飯尾潤) 부학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권력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국수주의 성향이 더 깊어졌다”며 “지지율이 높아진 지금, 자신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
- 오바마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비공개적으로 일본 외교관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함. 워싱턴은 특히 북핵 저지 등 역내 외교·안보 이니셔티브에서 협력이 필수적인 두 주요 동맹국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Japanese PM gives rein to nationalistic impulse /

英 Financial Times, 4. 29, 4면, Jonathan Soble, 도쿄발

3. 일본 ‘우경화’에 대한 논조의 간단한 종합

■ 美, 야스쿠니 문제 재연에 곤혹, 대북연계 우려

-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및 한국의 관계가 뼈격거리는 현상에 미 정부 곤혹감이 확산. 미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긴장이 높아지는 북한 정세 등을 고려해 동북아 주요국간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

■ 아베 신조 총리, ‘한·중은 냉정하게’

- 아베 신조 총리는 28일 낮 야스쿠니 참배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한중은 중요한 이웃나라로, 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관계개선에 의욕. 동시에 “문제나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계개선

과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

- 日 『닛케이신문』 4. 29, 2면 1단, 도쿄발

■ 아베 신조 총리, 주권회복의 날 ‘천황폐하 만세’ 삼창, 참가자들도 당황

- 28일 주권회복의 날 기념식장 단상에서 아베 총리 등 3권 수장은 “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 이에 참가자들 가운데 당황하는 모습도 목격됨.
- 행사가 끝나고 천황부부가 자리를 뜨는 도중에 만세삼창이 벌어졌으며, 천황은 단상에 순간 멈춰서기도. 오키나와 현민 감정을 고려해 불참한 나카이마^[仲井眞] 오키나와 지사 대신 참가한 다카라 구라요시^[高良倉吉] 부 지사는 만세삼창을 하지 않았으며, 곤혹스러움을 표출

- 日 『교도통신』, 4. 28, 도쿄발

■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추가 참배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행정개혁상이 28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 이로써 아베 내각에서 참배한 각료는 4명으로 늘어났음.

- 日 『닛케이신문』, 4. 29, 2면 2단, 도쿄발

4. 2013년 9~10월 일부 외신의 반응

■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

취임 7개월이 지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별로 노력한 것이 없다. 한일관계는 전임 대통령 임기 종반 몇 달 동안 양국 사이에 격

화된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 갈등 이후 아직도 냉각상태에 있다.

그와 같은 망설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이 먼저 관계개선을 향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떼어 놓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이 8월 30일~9월 1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국민 가운데 58%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반대는 35%, 불확실은 7%였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설문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예컨대 식민주의 시대 잘못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사죄 등 전제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든 연령층의^(의견) 공유집단 대다수는 여야 양대 정당 소속 공유집단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한일 정상회담에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정상회담 제의가 국내 정치권에서 역풍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작년 서명을 앞두고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한일 정보협정 반대 의견은 32%, 불확실 의견은 7%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설문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의 정당화 요인으로 언급함으로써 응답자들에게 선입견을 주지도 않았다. 또 해당 협정에 대한 모든 지지집단 중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로 인해 연령별 또는 이념별로 서로 상처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의 열쇠는 GSOMIA가 한국에 유익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재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해석’(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할 준비가 돼 있

는 것 같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작년도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제의 협정이 적절한 국민 담론을 거치지 않은 채 서명될 예정이었다는 인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태도가 협정 반대여론을 주도하였으며, 무엇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인으로 두드러졌다. 즉 협정이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반대 의견은 미미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GSOMIA와 어쩌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향해 접근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관계의 해빙이다. 한국이 일본과 대북정보 공유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는 그 같은 협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문제는 최근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들을 교착 내지는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박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통령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원칙에 입각한 한일관계 긴밀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 역시 박 대통령 정책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 프로세스’를 얼마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A Path Forward in Korea-Japan Relations /

美 Wall Street Journal, KRT블로그, 9. 6, Karl Friedhoff 오피니언

* 논평을 기고한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 산하 여론정보센터 센터장 겸 미국 맨스필드재단 ‘한미관계 벡서스 스칼라’임.

■ 日 법원 ‘험한 발언’ 불법 판시

일본의 한 법원은 반한운동단체에 대해 학교 밖 집회에서 반한 ‘중오연설

(hate speech)’을 통해 수업을 방해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겁을 준 죄로 1200만 엔(12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이정표적인 법원 판결은 집회에서 사용된 명백한 모욕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사상 최초로 인정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권리에서 중요 발언을 배제하지는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은 논평했다.

교토지방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서 하시즈메 히토시 판사는 반한단체 자이토쿠카이[在特會] 회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해당 초등학교 주변 집회에서 외치거나 현수막에 인쇄한 증오적인 언사는 불법이며,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겁을 먹게 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해당 단체가 웹사이트에 올린 인종주의적 집회 현장 동영상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문제의 집회가 일본도 서명한 UN인종차별 추방협약에 규정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날 법원 판결은 또 그 단체가 교토 남부 친북 조선인 초급학교 주변에서 추가 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고 요코다 나오키 법원 대변인은 밝혔다.

수십 만 한인들은 일본 내 최대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는 1910~1945년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중 일본으로 징용된 강제노동자들의 후손들이다.

그와 같은 험한 집회는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올 들어 확대되면서 도쿄와 한국교민사회가 있는 기타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도쿄 주요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거리 시위에서 그 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한국인들을 ‘바퀴벌레’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인들을 죽여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들을 바다로 쓸어버리자”고 위협했다.

회원 1만여 명을 거느린 자이토쿠카이는 그들이 단지 해당 학교가 인근 시

립공원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들은 또 재일본 한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특권'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그들에 대한 비방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2010년 6월 이 단체를 걸어 제소했으며, 반한 운동가 8명이 2009년 12월에서 2010년 3월 사이 세 차례 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혐한발언 집회에서 체포된 바 있다. 반한운동가들은 한국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일부 어린 학생들이 복통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이 같은 시위와 관련해 내려진 판결은 업무방해와 공공기물 파손행위로 체포된 8명 중 4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인종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 Japanese court : Anti-Korea 'hate speech' illegal /
美 AP, 10. 7, Mari Yamaguchi, 도쿄발

■ 한일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는가

일본과 중국, 한국의 정상회담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다. 특히 한일은 함께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호 이해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역사 문제를 둘러싼 도량이 깊다고는 해도 냉각된 관계를 방치한 채로 두어도 되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상호 방문보다 허들이 낮은 국제회의의 장소를 이용하여 아베 신조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첫 회담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지난 달 러시아에서 열린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한일 수뇌가 함께 출석하는 국제회의는 당분간 예정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양국에서 신경권이 발족한 지 1년이 지나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비정상인 사태도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브루나이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하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뇌 레벨을 포함해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담에 부정적인 것은 한국 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말, 미국의 헤이글(Hagel)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는 일본 때문에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침략이라고 하는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이번 봄의 아베 신조 총리 발언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각료에 의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도 모르지는 않지만, 수뇌 사이에 본심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뢰는 쌓아 올릴 수 없다. 역사 문제를 포함해 양 수뇌가 본심을 털어놓고 거기서부터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양 수뇌가 만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채로는 서로의 국민감정에도 부정의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나 북한의 핵문제는 한일에 공통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다. 경제적인 연계는 깊은데 한일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은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한일은 2015년에 국교 정상화 50년의 고비를 맞이한다.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양 수뇌는 미래에의 관계 구축에도 시선을 향해 주길 바란다.

- 日 『닛케이신문』, 10. 12, 2면 사설, 일본발

• 참고문헌

단행본

- 金成民(2008), 『日本軍細菌戰』, 黑龍江人民出版社.
- 김영호 외(2013), 『한일 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식산업사.
- 都時煥·張世胤 外(2013), 『韓日強制併合 100年-歷史と課題』, 明石書店.
- 동북아역사재단(2012), 『동북아역사재단 6년의 활동과 지향-갈등을 넘어 화해로』.
- 동북아역사재단·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0), 『한일·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 결과 평가 및 방향모색』.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출판사.
- 永原慶二 監修(1999), 『岩波 日本史辭典』, 岩波書店.
-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1992), 『新版 日本外交史辭典』, 山川出版.
- 이신철(2007),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 선인.
- 田中健夫·石井正敏 編(2009), 『對外關係史辭典』, 吉川弘文館.
- 靖國神社(2011), 『遊就館圖錄』.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2006), 『(2006년 제2차)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워크숍 자료집』(2006. 8. 22~23).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2009),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전망』.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05),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2010),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
- 韓曉·辛培林(1991), 『日軍七三一部隊罪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 Un-suk Han·Takahiro Kondo·Biao Yang·Falk Pingel eds.(2012),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 Berlin·New York·Oxford, Peter Lang.

논문

- 김정현(2014), 「동북아 공동역사교재 발간의 필요성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4년 1월호(통권 86호).
- 장세운(2008), 「일본 야스쿠니신사 유수칸의 한국관련 전시내용의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4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정재정(2007),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화해와 상생의 역사인식을 향하여」, 『사학연구』 88호, 한국사학회.

기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3년 9월호.
-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자료.

• 찾아보기

<ㄱ>

가모 다케이코[鴨武彦] 158

가미 도모코[紙智子] 114

간 나오토[菅直人] 170

간도참변 237

간접참배 148

강덕상 256

강제동원 117

강제연행 122

개별적 자위권 198, 199

개인청구권 178, 179

경신참변 237

경제통합론(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149

경제협력 177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110, 145, 150, 263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14, 30, 63, 106, 110, 131, 145, 146, 155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69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25, 57, 79, 270

고이즈미[小泉] 담화 155

관동대지진 237, 258

관동대진재 258

관동대학살 167

광무황제(고종) 240

교과서 문제 42

교과서검정제도 특별위원회 129

교육기본법 104, 145, 184

국가신도(神道) 13

국가안전보장기본법 217

총 「국가에 의한 폭력보고서」 106

국가주의 184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38

국제공동체 166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69

국제법규범 166

국제법적 합법성 173

국제인권법의 이정표 183

국제책임 162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 162

국제형사재판소(ICC) 184

군국주의의 부활 167

군사적 성노예 106

극동유사 202, 203

근린제국조항 63

금지산자 207

기미가요[君が代] 24, 88

기본권 침해 181

기시 총리 20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264

<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22, 79, 149

나카스카 아키라[中塚明] 180

난징[南京]대학살 129, 237, 266

내각법제국 207

냉전체제 174

노나가 히로무[野中廣務] 92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258

<ㄷ>

다카라 구라요시[高良倉吉] 272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95

다케시마[竹島]의 날 146

다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234

대동아전쟁 168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 182

대한민국 헌법 18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182

도미다 메모 96

도쿄국립박물관 238

도쿄초혼사(招魂社) 81

독립축하금 178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41

동북아(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17, 255, 261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 261

동아시아공동체 249

동아시아평화공동체 188

Dumbarton Oaks 209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256

<ㄹ>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106

러일전쟁기 253

로카르노 조약 210

류진민[劉振民] 239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187

<ㄴ>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118

만주사변(9·18사변) 237

명문개헌 219

무기 사용 204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23, 145, 263

무라야마[村山] 담화 11, 23, 51, 145, 152, 154, 241	부산적기론(釜山赤旗論) 31	시제법 174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21 130
무력사용과의 일체화 204	부전결의(不戰決議) 54, 153	식민주의 범죄(The Crime of colonialism) 174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115
무사코지 긴히데[武者小路公秀] 174	부전조약 210	식민지 근대화론 247	ICC로마규정 164
문부과학성 107, 113	북핵 불용 40	식민지 지배 129	안보법제간담회 204
미쓰비시중공업 169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 158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 169	안보법제보고서 204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22, 145	〈人〉	식민지범죄 180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 218
미야자와 담화 145	사단법인 봉선화 258	식민지책임 169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 12, 147
미일안전보장조약 175	사세 마사모리 209	식민체제 163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241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84	사카모토 요시카즈[阪本義和] 158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239	야스쿠니[靖國]신사 13, 24, 51, 146, 233
미타라이 야스시[御手洗康] 112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172	신도지령(神道指令) 78	A급 전범 239, 243
민족자결권 160	사할린 동포 248	신뢰 프로세스 40	already null and void 180
	새역모 59회단	신일본체질 169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104
〈ㅂ〉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47, 170	〈ㅇ〉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 153
바이마르 헌법 147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제 174	아미티지-나이 리포트 197, 222	역사인식 145
「바타비아(Batavia)임시군법회의 기록」 115	성노예제 106, 131	아베 교육재생정책 반대 운동 130	역사적 사실 183
바탄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 266, 268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188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130	역사적 정의 170
박근혜 대통령 276	손해배상청구권 171	아베 신조[安倍晋三] 25, 51, 79, 145, 197, 233, 262	역사적 책임 106
반인도범죄 180	쇼와[昭和]천황 95	아베교육정책 NO 평화와 인권 교육을! 네트워크 130	역사적인 판결 183
반인도적 불법행위 171, 187	쇼와관[昭和館] 238, 257	아베노믹스(Abenomics) 34, 267	열거적 정의 161
반일내셔널리즘 13	쇼케이관[承繼館] 238, 257	아산정책연구원 273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119
방위백서 42	수권법(授權法) 147	아소 다로[麻生太郎] 28, 79, 146, 237	오키나와[沖縄] 현 147
법규범적 정의 183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35, 112, 264	「아시아·태평양전쟁」 122	오키나와전투 109
벤티렐 262	스즈키 겐코[鈴木善幸] 84	아시아평화국민기금 157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85
보상적 청구권 176	시마네[島根] 현 240		와카바야시 겐타[若林健太] 264
보편적인 상식 106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 157		왜구 244, 245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148, 238		외교 청서 42

외교교섭 171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263	사이토쿠카이[在特會] 259, 275	중재 171
외교보호권 178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178	자주 규제 129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116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 계획의 187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90	자학사관 149, 169	지도자범죄(leadership crime) 164
외무성 종합정책국 158	이이오 준[飯尾潤] 271	작위의무 위반 171	진사(陳謝) 152
요시다 독트린 202	이케다 에리코[池田惠理子] 256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회(재특회) 259	진정한 역사화해 188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81	이탈리아-리비아 간 우호조약 187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188	진정한 평화 188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150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158	전권위임장 174	집단적 자위권 16, 198, 199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158	인권중심 사고 183	전몰자묘원(墓苑) 257	〈天〉
우경화 52, 167	인도에 반하는 죄 106	전상병자사료관 238	참의원 선거 27
운노 후쿠쥬[海野福壽] 172	인종주의 187	전화(戰禍) 108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 172
운요호사건 243	인종차별 187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脫却) 147, 156, 184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174
UN총회 결의 159	인종차별체제 163	「전후 보상」 122	1965년 한일협정 169
원폭 피해자 171	일반적 정의 160	전후 체제의 극복 186	천황 272
위사(僞使) 253	일본과 대한민국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186	전후민주주의 72	청일전쟁 253
‘위안부’의 동원 111	일본군 ‘위안부’ 14, 63, 103, 131, 169, 237	정보공개 청구 157	취업사기 122
‘위안소’ 제도 111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169	정한론 80	츠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113
유슈칸[遊就館] 167, 238, 256, 257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 원 모임」 119	제2차 세계대전 108	치도리가후치[千鳥ヶ淵] 90, 257
유엔인권위원회 106	일제 강제징용 169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73	치킨 게임 40
UN총회결의 15, 159	임나일본부설 247	제3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17, 251	731부대 236
유효부당론 172	임진왜란(壬辰倭亂) 247, 253	조선총독부 244, 246	침략 행위 151
육지밀대일지(陸支密大日誌) 150	입법조치 217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76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 166
2기 아베 내각 51	〈天〉	조약체결 강제행위 173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164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272	자위권 198	중군위안부 122	침략범죄의 정의 166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115		주권회복의 날 147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 14, 148, 159, 183, 184
이명박 대통령 11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04	침략적 행위 153

침략전쟁 129, 151, 153

<ㅋ>

칼 프리드호프 274

케빈 독(Kevin Doak) 147

<ㅌ>

태평양전쟁 168

토요시타 나라히코 209

통신사(通信使) 253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
fort Women” 250

<ㅍ>

평화주의 224

평화헌법 72, 265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147

플뿌리운동 130

<ㅎ>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128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10, 113

『학습지도요령』 14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107

한·일조약 44, 248

한류 261

‘한류 10주년 대상(大賞)’ 시상식 261

한일강제병합 15, 22, 169, 170

한일병합조약 168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 180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52

한일역사(교재) 공동연구위원회 17

한일조약체제 172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180

한일청구권협정 171

한일협정 170

한일협정체제 177

한일회담 175

한중일 3국 협력포럼 249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 249

해석개헌 213

헌법소원 181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181

헌법해석 200

헤이글(Hegel) 국방장관 277

헤이세이[平成]천황 95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23, 148

화춘잉[華春瑩] 23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35, 265, 277

황국사관 78

후지오카 노부카즈[藤岡信勝] 59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79, 84

히가시마츠시마[東松島] 235

히노마루[日の丸] 24, 88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0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지은이 도시환·박진우·서현주·장세윤·진창수·최운도·하종문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20-8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4000787)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